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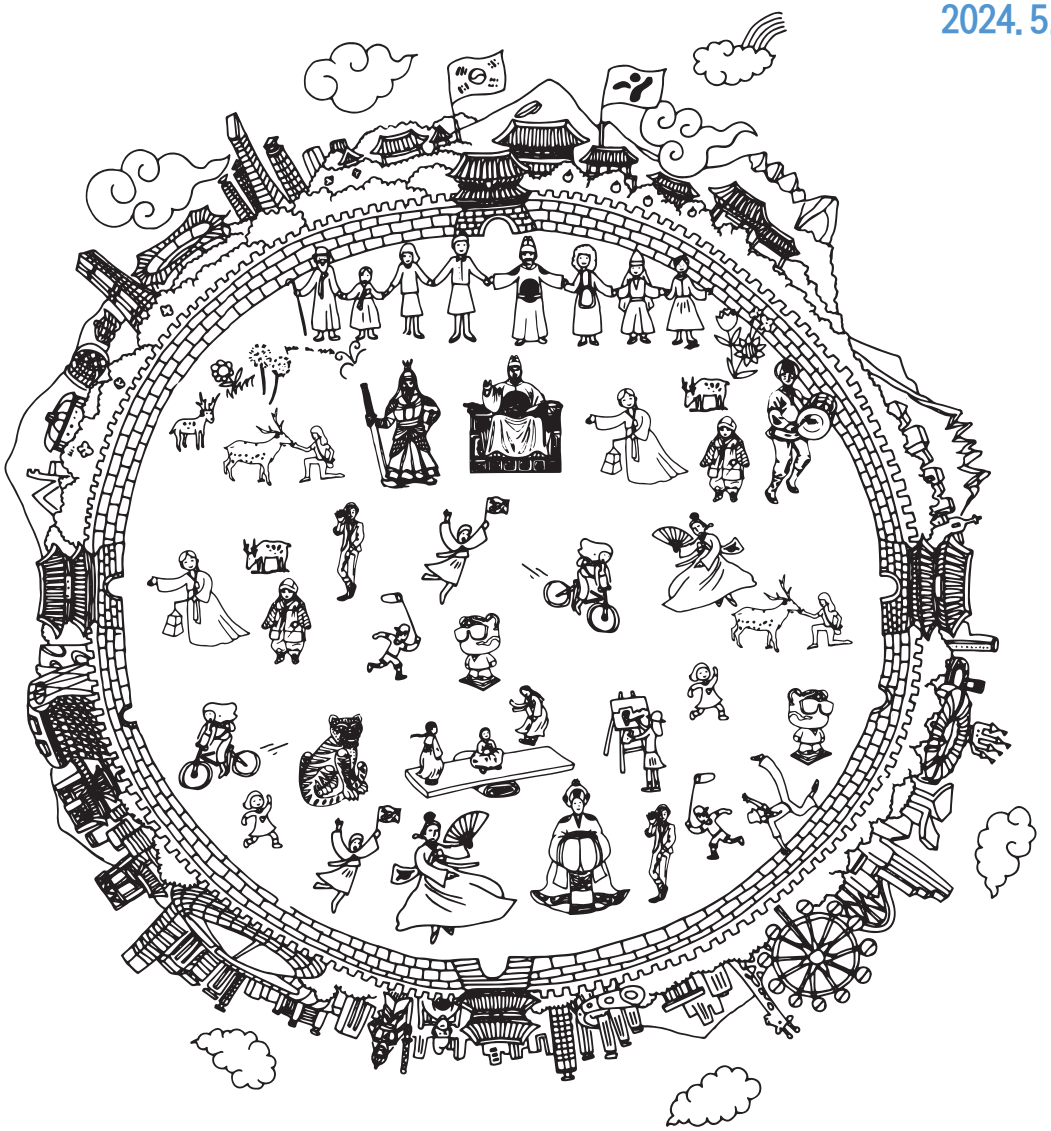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74호

2024. 5. 2.(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제2024-1340호 제기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행정예고 ····· 4

제2024-1348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안 행정예고 ····· 6

◈ 고 시

제2024-216호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18

제2024-217호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32

제2024-218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변경 고시 ····· 34

제2024-21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한국체육대학교) ····· 38

제2024-220호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7

제2024-221호 여의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2

제2024-223호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행 지정고시 ····· 77

제2024-22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0

제2024-225호 망원동 45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98

제2024-227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 112

◈ 공 고

제2024-1255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 124

제2024-128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25

제2024-129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26

제2024-129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28

제2024-12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30

제2024-129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32

제2024-130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134
제2024-130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135
제2024-1309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 공고[루나하우스 고시원] ····· 143
제2024-1310호 측량업 등록 공고 ····· 147
제2024-132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48
제2024-13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149
제2024-133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52
제2024-133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53
제2024-133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54
제2024-1338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신고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56
제2024-1341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159
제2024-1343호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반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66
제2024-134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167
제2024-1351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신규등록 공고 ····· 169
제2024-1361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170
제2024-1368호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 171

◈ 구 고 시

제2024-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서대문구) ····· 172
제2024-69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정정고시 (구로구) ····· 174
제2024-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구로구) ····· 177
제2024-4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11)(관악구) ····· 180
제2024-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봉천동 245번지 일대) (관악구) ····· 183
제2024-4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봉천동 247-2번지 일대) (관악구) ····· 185
제2024-5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 187
제2024-88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실시계획(변경) 고시(서초구) ····· 190
제2024-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 193

◈ 구 공 고

제2024-48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중구) ····· 196
제2024-7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도봉구) ····· 206
제2024-8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은평구) ····· 207
제2024-8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역촌1주택 소공원1(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은평구) ····· 209
제2024-8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은평구) ····· 212
제2024-811호 도시관리계획(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양천구) ····· 215
제2024-830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양천구) ····· 216
제2024-886호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강서구) ····· 217
제2024-92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동양미래대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 218
제2024-934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구로구) ····· 220
제2024-91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금천구) ····· 222
제2024-9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관악구) ····· 224
제2024-1187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개포동 산212-2)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강남구) ····· 225
제2024-1188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일원동 산63-1)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강남구) ····· 230

◈ 사업소고시

제2024-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5
제2024-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6
제2024-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7
제2024-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8

◈ 기 타

제2024-2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동대문소방서) ····· 239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은평소방서) ····· 240
제2024-15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41
제2024-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42
제2024-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43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40호

제기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9호(2017.11.2.)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제기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이유

「건축법」 제71조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제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485.70㎡

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일 : 2017. 11. 2.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건축물 및 특례해제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변경사항 없음

구 역 명	용 도	대지면적	최고층수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용지	29,916.00㎡	25층
	도 로	3,569.70㎡	-
	합 계	33,485.70㎡	

(2) 특례해제사항

구 역 명	특례해제사항	해제사유
제기4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적용의 해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3. 의견제출

특별건축구역 고시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thdwogh01@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48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타 전문위원회와 달리 운영기준이 부재하여 심의 및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기, 절차 등
나. 자치구의 사후 검증 요청
다. 변경심의 기준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심의기준
라. 기타 주의사항, 자치구 관련사항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02-2133-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2) 이메일: mss419@seoul.go.kr
3) 팩 스: 02-768-8926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이 운영기준은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대상

가.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또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의시기

건축 인허가 후, 착공 전 실시

4. 개최주기

매월 1회(세 번째 목요일) 개최 원칙이나, 일정에 따라 요일을 변경하거나 상정 안건 수를 감안하여 개최 횟수를 변경할 수 있음

5. 심의 준비절차

① 심의자료 사전제출	② 심의자료 배포	③ 심의요청	④ 사전검토 의견서 배포	⑤ 조치계획서 제출	심의
3주 전	2주 전	8~9일 전	1주 전	2일 전	

① 심의자료 사전제출 (신청자 → 건축기획과)

1) 제출기한: 심의 3주 전까지(사전검토)

2) 제출방법: 서울시 건축기획과(이하 “건축기획과”라 한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파일 제출

3) 제출자료 ※심의 당일에 A3 인쇄본 1부 제출

가. 필수제출

◯ 구조안전 (변경)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한글, PDF 파일)

◯ 구조안전 심의 체크리스트(별표 1) (※ 한글, PDF 파일)

◯ 구조안전 심의 발표자료 (※ PPT, PDF 파일)

◯ 도면[구조, 건축, 토목(흙막이 포함)] (※ PDF 파일)

◯ 계산서(건축구조, 흙막이, 토목) (※ PDF 파일)

◯ 구조안전확인서(각 동별) (※ PDF 파일)

◯ 지반조사보고서 (※ PDF 파일)

나. 해당 시 제출
○ 역타도면 및 역타계산서 (※ PDF 파일)
○ 성능기반설계보고서 (※ PDF 파일)
○ 지하철 영향검토서 (※ PDF 파일)
○ 풍동(풍력, 풍압)실험보고서 (※ PDF 파일) 및 기타자료 등

② 심의자료 배포 (건축기획과 → 심의위원)
1) 배포일정: 심의 2주 전까지
2) 배포자료: 사전검토 의견서 및 사전제출한 심의자료 일체

③ 심의요청 (신청자 → 허가권자(자치구 등) → 건축기획과)
1) 요청기한: 심의 8~9일 전까지
2) 제출자료: 사전제출한 심의자료 일체

④ 위원별 사전검토 의견서 배포 (건축기획과 → 신청자)
1) 배포일정: 심의 1주 전
2) 배포방법: 이메일 송부

⑤ 조치계획서 제출 (신청자 → 건축기획과)
1) 제출기한: 심의 2일 전까지
2) 제출방법: 건축기획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PPT 및 PDF 등)
3)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6. 심의위원 구성
위원장 및 외부전문위원을 합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1) 위원장(1명): 건축기획과장 (부재 시 참석위원 중 호선)
2) 외부전문위원(4명 이상): 건축구조분야 3명, 건축시공/건축계획/토질 및 기초분야 1명 이상

7. 심의
가. 발 표 자: 건축구조설계자
나. 배 석 자: 건축설계자, 토목설계자, 구조기술사, (해당 시)감리 · 시공관계자 등(심의를 위한 회의실 입장은 가급적 5명으로 제한)
다. 진행방법: 건축구조설계자 발표 후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응답
라. 발표 시 유의 사항
1) 발표자의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힐 것
2)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부분반영/미반영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할 것
3) 5분 이내로 하며 한국어를 사용할 것

8. 사후 검증 (자치구 → 건축기획과)
가. 자치구 인허가 부서는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기획과에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위원회는 사후 검증 요청이 있을 시,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함(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 당초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검증할 것
다. 건축기획과는 자치구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함

9. 변경심의 기준
가. 변경심의 대상
1) 구조형식의 변경(단, 변경구간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10% 이상 또는 200㎡ 초과 시)
가) 주요 구조부의 재료 변경(철근콘크리트구조, 강구조,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합성조 등)
나) 주요 구조부의 공법 변경[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중공슬래브, 딥데크(Deep deck)슬래브, 합성보(신기술·신공법 등)]
다) 특수구조건축물 해당 구간의 구조형식 변경
2) 기초형식의 변경(파일 기초, 지내력 기초, 특허공법 등의 변경)
3) 책임구조기술자(당초 건축구조설계자) 변경 등
4) 횡력저항시스템의 변경
5) R값 변경(성능설계, 특수전단벽 적용 등)
6) 설계변경 등으로 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 등
나. 심의시기: 상위의 1)~6)의 각 해당사항 변경 전
다. 위원구성: 위원장 및 외부전문위원은 제6호에 따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을 당초 심의한 위원 중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라. 기타 심의 절차, 심의 운영 등은 당초 심의와 동일

10. 경미한 사항 변경심의기준
제9호가목의 대상 외의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
2) 자문(서면심의)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

11. 기타 주의사항
가. 부정청탁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의 금지
1) 심의위원 개별 접촉, 심의의견 수정 시도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일절 금지
2) 심의위원의 부당한 요구(금품 및 향응 요구, 개별방문 조치계획 설명 요구 등) 시 즉시 건축기획과로 신고
나. 심의도서 관련 사항
1) 설계는 기본설계 수준이 아닌 실시설계 수준을 준수
2) 성능기반설계 심의대상인 경우 성능기반설계 완료 후 심의 신청(제3자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

3)「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계약서 제출(설계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계약 및 건축주 확인)

4) 풍동실험 대상인 경우 풍동실험(국토부 풍동실험가이드라인 준수) 결과보고서 제출

다. 심의결과 공개 관련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요청공문을 보낸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 통보되며, 내부결재 공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12. 자치구 관련사항

가. 자치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 보완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나. 변경심의 대상은 서울시로 심의요청하고, 경미한 변경 대상은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문, 서면심의 또는 감리단 검토를 통해 처리함

붙임 1. [별표 1] 구조안전 심의 체크리스트
2. [별표 2] 구조안전 심의 PPT 작성 안내
3. [별표 3] 구조안전 심의 안내문
4.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재)심의 신청서
5.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변경심의 신청서
6. [별지 제3호서식] 안건상정 개요 샘플
7. [별지 제4호서식] 조치계획서 작성 안내

부 칙

이 운영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조안전 심의 체크리스트

연번	구 분	내 용	반영여부 (반영/미반영/해당없음)
1	제출 도서	- (필수)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토목계획서, 지질조사서, 구조안전확인서, 건축도면·구조도면·흙막이도면, 구조계산서, 흙막이계산서 - (해당 시) 풍동실험보고서, 성능설계보고서(제3자 검증보고서 포함), 역타공법도면 및 계산서	
2	제출도면 수준	-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일치 여부 확인	
3	건축물 위치	- (인접하천) 설계지하 수위상승 고려, 홍수위 검토 - (경사지) 편측토압 검토	
4	지질조사 보고서	- 지반조사공수 및 위치 적정 여부 -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적정한지 판단 시추주상도에 기초레벨 표기 확인 - 설계지하수위 확인, 영구배수, 부상(부력) 검토 여부 확인 - 지진하중 산정 시 지반분류 확인	
5	적용 설계기준 및 최신기준 반영	- 적용 설계기준 적정성 확인	
6	재료강도	- 콘크리트, 철근, 철골 등 재료의 기준강도	
7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	- 고정하중 및 활하중, 설하중, 풍하중(특별풍하중(형상비) 적용여부 검토), 지진하중(지진력저항시스템, 내진설계범주 등), 지진토압	
8	동적해석	- 고유치 해석결과 (각 방향 질량참여율 90% 이상 확인), 구조형식과 높이에 따른 고유주기 적정 여부, 보정계수 확인	
9	사용성 및 안정성	- 층간변위, 횡변위, 수직처짐	
10	하중조합	- 구조설계 시 고려한 하중조합 검토	
11	내진상세 적정성	-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적정한 내진상세 적용 여부	
12	전이부재 설계	- 전이부재 내진상세 적용 여부 - 특별지진하중 조합 적용 여부 - 전이부재 단면 및 설계 적정 여부 - 설비에 의한 단면결손 및 시공성 검토 확인 - 전이부재의 시공성 및 안전성 고려한 접합부 검토	
13	기타	- 공동주택 : T형, L형 조합에서 다이아그램 연속 확보가능한지 평면 검토 - 플랫슬래브 : 주열대, 주간대 배근상세도 및 전단보강근 확인 - 장스팬 및 캔틸레버 : 단면 및 수직처짐 검토 - 연결브리지 : 구조계획 및 상세 - E.J 설치 : E.J 상세 및 조인트 간격(상대변위) 확인 - 역타공법, PC공법, PS공법 : 적용 여부	

[별표 2]

구조안전 심의 PPT 작성 안내

아래의 목차 및 항목으로 순서에 맞게 PPT를 작성하고, 목차와 해당 쪽 번호는 모두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상정개요
- 안건 상정개요(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 건축개요(층별면적, 시설면적 등 세부 사항)
- 추진경위(도시계획, 각종 인허가 사항 등 주요 추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

○ 위치도 및 주변 현황
- 세부 위치현황 및 실제 조사한 주변 현황자료 등 작성

○ 배치계획
- 조감도, 투시도, 축척 및 방위, 배치도(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대지의 종·횡단면도 등 작성)

○ 평면계획
- 층별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및 계단 위치 등 작성

○ 단면계획
- 종·횡단면도, 건축물 전체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작성

○ 구조개요
- 구조설계 개요, 적용기준, 구조재료 및 강도, 적용 프로그램 등으로 간략한 개요를 구성하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첨부

○ 구조계획
- 설계근거기준, 하중조건 분석, 구조재료의 성질·특성, 구조형식 선정계획, 구조안전 검토, 구조상 주요부 단면, 내진설계 내용, 주요 부분의 상세도면 등 세부항목 작성

○ 구조평면도

○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 근거, 지하수위, 기초에 대한 의견 등 세부항목 작성

○ 토목계획
- 흙막이·지보공법 등 선정내용과 흙막이 단면별 해석개요, 주요 흙막이도면 등 작성

○ 기타 자료
- 시방서, 기타 관련 도면, 기타 협의사항 등을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

※ 글꼴 및 크기 등은 자율이나 심의장소 프로젝터의 해상도를 고려하여 시인성이 좋은 글꼴 및 크기로 작성 필요

[별표 3]

구조안전 심의 안내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발표자(건축구조설계자)의 발표 후 사전검토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심의를 하는 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수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발표자가 주가 되어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 참석자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자는 위원과 발표자의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순서

발표자 및 배석자 소개	〉	안건1: 신청자 입장 및 조치계획 발표 (부분반영 및 미반영 내용, 5분 이내)	〉	위원별 질의응답	〉	퇴장
〉	안건2: 신청자 입장 및 조치계획 발표 (부분반영 및 미반영 내용, 5분 이내)	〉	위원별 질의응답	〉	퇴장	

※ 본 안내문은 위원회 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이며, 실제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와 심의 시 가져온 자료의 쪽 번호가 다른 경우, 발표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변경 심의 신청서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감 리 자 (해당 시)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시 공 사 (해당 시)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안건 상정개요(샘플)

□ 사업개요

본 사업을 「건축법」 제00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제0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대지위치			
지역지구			
구역면적	(제척면적:)		
대지면적			
건축용도			
세 대 수			
건축구조			
건축규모	지하0층/지상00층	최고높이	00.00m(법정00.00m)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소계			
건 폐 율			
용 적 률			
주차대수			
굴착깊이			

□ 위치도

※ 위 샘플을 참고하여 PPT 발표자료에 상정개요를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조치계획서 작성 안내

◯ 총괄표

위원명	의견수	반영여부			비고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홍일동	10	10	–	–	
홍이동	9	5	4	–	
홍삼동	8	4	3	1	

◯ 위원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명	연번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홍일동	1	~ 하기 바람.	~ 보강토록 명기	반영	
	2	~ 하기 바람.	~ 계획 수립	반영	
	3	~ 하기 바람.	~ 수정 후 반영	반영	
홍이동	1	~ 하기 바람.	~ 도면에 명기	반영	
	2	~ 하기 바람.	~ 상세도 작성	반영	
홍삼동	1	~ 하기 바람.	~ 추가로 반영	미반영	~에 따른 미반영

◯ 위원별 세부 조치계획

위원명	연번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홍일동	1	~ 하기 바람.	~ 보강토록 명기	반영	구조계산서 P.000 반영

반영 전	반영 후

※ 안내사항

- 위와 같이 총괄표, 위원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별 세부 조치계획 3가지로 구분하여 PPT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PPT/PDF로 제출
- 글꼴, 글자 크기, 표 속성, 표 크기 등은 자율
  (단, 회의실 프로젝터의 해상도로 인하여 글자 크기 15 이상에 검정색 사용 권장)
- 구분내용이 있는 부분의 셀 배경색은 시인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자율 설정
- 내용이 있는 부분의 셀 배경색은 색 채우기 없음을 권장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6호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7호(2021.4.15.)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지형도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 없음)

3.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기정]
○ 명 칭 : ㈜제이엘유나이티드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여의도동, 1231호)
○ 법인번호 : 110111-2935025

[변경]

○ 명 칭 : ㈜스페이스자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구, NK빌딩)

○ 법인번호 : 110111-2935025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지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계					7,601.0	-					
1	서초동	1448	1	대	1,904.6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904.6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2	서초동	1448	2	대	479.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79.7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3	서초동	1448	3	대	3,760.1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760.1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4	서초동	1448	4	대	1,107.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07.7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5	서초동	1448	6	대	348.9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48.9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1)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지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계					7,601.0	-					
1	서초동	1448	1	대	1,904.6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904.6	-	-	-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2	서초동	1448	2	대	479.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79.7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3	서초동	1448	3	대	3,760.1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760.1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4	서초동	1448	4	대	1,107.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07.7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5	서초동	1448	6	대	348.9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48.9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2) 물건조서(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계								13,657.57						
1	서초동	1448	3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989.1.20	9,327.97	3	6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주식회사제이엘 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위탁자)
2	서초동	1448	4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984.01.13	3,645.92	2	4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주식회사제이엘 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위탁자)
3	서초동	1448	6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987.07.20	683.68	1	3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주식회사제이엘 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위탁자)

2) 물건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계														
1	서초동	1448	3	대	-	-	-	-	-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위탁자)
2	서초동	1448	4	대	-	-	-	-	-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위탁자)
3	서초동	1448	6	대	-	-	-	-	-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위탁자)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와 서초구청 8층 주거 개선과 (02-2155-73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기정]

○ 명 칭 : ㈜제이엘유나이티드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여의도동, 1231호)

○ 법인번호 : 110111-2935025

[변경]

○ 명 칭 : ㈜스페이스자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구, NK빌딩)

○ 법인번호 : 110111-2935025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기정]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5년 12월
○ 재원조달계획 :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 자금조달
[변경]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6년 08월
○ 재원조달계획 :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 자금조달

4.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1,146명
2) 주택건설계획: 835호

[기정]

구분	세대 및 수용인구							비고
	주거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합계		22,996.83	835	100.00	-	1,146	100.00	-
공임대	소계	7,373.25	271	32.46	-	368	32.11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 공급
	23A형	18.99	9	1.08	1	9	0.79	
	23B형	17.77	82	9.82	1	82	7.16	
	24A형	18.74	29	3.47	1	29	2.53	
	24B형	18.20	14	1.68	1	14	1.22	
	30형	24.31	9	1.08	1	9	0.79	
	33A형	27.84	7	0.84	1	7	0.61	
	33B형	27.73	7	0.84	1	7	0.61	
	45형	35.20	17	2.04	1	17	1.48	
	47A형	37.36	19	2.28	2	38	3.32	
	47B형	37.08	15	1.80	2	30	2.62	
	49형	37.78	17	2.04	2	34	2.97	
	56A형	39.83	26	3.11	2	52	4.54	
	56B형	39.83	20	2.40	2	40	3.49	
공지원 민간임대	소계	15,623.58	564	67.54	-	778	67.89	
	23A형	18.99	9	1.08	1	9	0.79	
	23B형	17.77	188	22.51	1	188	16.40	
	24A형	18.74	49	5.87	1	49	4.28	
	24B형	18.20	42	5.03	1	42	3.66	
	30형	24.31	9	1.08	1	9	0.79	
	33A형	27.84	7	0.84	1	7	0.61	
	33B형	27.73	7	0.84	1	7	0.61	
	45형	35.20	39	4.67	1	39	3.40	
	47A형	37.36	37	4.43	2	74	6.46	
	47B형	37.08	35	4.19	2	70	6.11	
	49형	37.78	29	3.47	2	58	5.06	
	56A형	39.83	54	6.47	2	108	9.42	

구분	세대 및 수용인구							비고
	주거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56B형	39.83	36	4.31	2	72	6.28	
	57형	46.50	14	1.68	2	28	2.44	
	63형	48.52	9	1.08	2	18	1.57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변경]

구분	세대 및 수용인구							비고
	주거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합계		23,111.18	835	100.00	-	1,146	100.00	-
공공임대	소계	7,408.25	271	32.46	-	368	32.11	청년안심주택 건설·공급
	23A형	18.99	9	1.08	1	9	0.79	
	23B형	17.87	82	9.82	1	82	7.16	
	24A형	18.68	29	3.47	1	29	2.53	
	24B형	18.26	14	1.68	1	14	1.22	
	30형	24.22	9	1.08	1	9	0.79	
	33A형	27.65	7	0.84	1	7	0.61	
	33B형	27.97	7	0.84	1	7	0.61	
	45형	35.32	17	2.04	1	17	1.48	
	47A형	37.83	19	2.28	2	38	3.32	
	47B형	37.66	15	1.80	2	30	2.62	
	49형	37.92	17	2.04	2	34	2.97	
	56A형	39.96	26	3.11	2	52	4.54	
	56B형	39.96	20	2.40	2	40	3.49	
공공지원민간임대	소계	15,702.93	564	67.54	-	778	67.89	
	23A형	18.99	9	1.08	1	9	0.79	
	23B형	17.87	188	22.51	1	188	16.40	
	24A형	18.68	49	5.87	1	49	4.28	
	24B형	18.26	42	5.03	1	42	3.66	

구분	세대 및 수용인구							비고
	주거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30형	24.22	9	1.08	1	9	0.79	
	33A형	27.65	7	0.84	1	7	0.61	
	33B형	27.97	7	0.84	1	7	0.61	
	45형	35.32	39	4.67	1	39	3.40	
	47A형	37.83	37	4.43	2	74	6.46	
	47B형	37.66	35	4.19	2	70	6.11	
	49형	37.92	29	3.47	2	58	5.06	
	56A형	39.96	54	6.47	2	108	9.42	
	56B형	39.96	36	4.31	2	72	6.28	
	57형	46.72	14	1.68	2	28	2.44	
	63형	48.50	9	1.08	2	18	1.57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 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 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정]

구분		내용	계획사항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20% 이상 (부지면적 기준) ○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총공공기여 : 30.28% (2,301.57㎡) -기준용적률(540%)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 : 22,80%(1,733.36㎡)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00% (1,520.42㎡)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 2.8% (212.94㎡) •공공임대주택 추가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7.48% (568.21㎡)	•서초구 서초동 1448-1, 1448-2, 1448-3, 1448-4, 1448-6번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건축물 용도 구분	주거비율	○ 80%초과 90%이하	○ 주거 : 비주거 = 87.91% : 12.09%	
	비주거비율	○ 10%이상,20%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 친환경 건축물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300세대 이상: 200㎡이상	○ 면적 계 : 2,007.504㎡ - 주민공동시설 : 680.6566㎡ (2~9층) - 커뮤니티지원시설 : 1,326.8473㎡ (29층,36층)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총271세대 : 18.74㎡(29세대), 18.99㎡(9세대), 17.77㎡(82세대), 18.20㎡(14세대), 24.31㎡(9세대), 27.84㎡(7세대), 27.73㎡(7세대), 35.20㎡(17세대), 37.78㎡(17세대), 37.36㎡(19세대), 37.08㎡(15세대), 39.83㎡(26세대/56A형), 39.83㎡(20세대/56B형) ○ 민간임대주택 : 총564세대 : 18.74㎡(49세대), 18.99㎡(9세대),17.77㎡(188세대), 18.20㎡(42세대), 24.31㎡(9세대), 27.84㎡(7세대), 27.73㎡(7세대), 35.20㎡(39세대), 37.78㎡(29세대), 37.36㎡(37세대), 37.08㎡(35세대), 39.83㎡(54세대/56A형), 39.83㎡(36세대/56B형), 46.50㎡(14세대), 48.52㎡(9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변경]

구분		내용	계획사항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20% 이상 (부지면적 기준) ○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총공공기여 : 30.41% (2,311.74㎡) -기준용적률(540%)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 : 22.88%(1,739.24㎡)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00% (1,520.20㎡)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 2.8% (212.94㎡) -추가용적률(640.12%)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 : 7.53%(572.50㎡) •공공임대주택 추가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7.53% (572.50㎡)	•서초구 서초동 1448-1, 1448-2, 1448-3, 1448-4, 1448-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건축물 용도 구분	주거비율	○ 80%초과 90%이하	○ 주거 : 비주거 = 87.93% : 12.07%	
	비주거비율	○ 10%이상,20%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 친환경 건축물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300세대 이상: 200㎡이상	○ 면적 계 : 2,030.8880㎡ - 주민공동시설 : 702.0437㎡ (2~9층) - 커뮤니티지원시설 : 1,328.8443㎡ (29층,36층)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총271세대 : 18.68㎡(29세대), 18.99㎡(9세대), 17.87㎡(82세대), 18.26㎡(14세대), 24.22㎡(9세대), 27.65㎡(7세대), 27.97㎡(7세대), 35.32㎡(17세대), 37.92㎡(17세대), 37.83㎡(19세대), 37.66㎡(15세대), 39.96㎡(26세대/56A형), 39.96㎡(20세대/56B형) ○ 민간임대주택 : 총564세대 : 18.68㎡(49세대), 18.99㎡(9세대),17.87㎡(188세대), 18.26㎡(42세대), 24.22㎡(9세대), 27.65㎡(7세대), 27.97㎡(7세대), 35.32㎡(39세대), 37.92㎡(29세대), 37.83㎡(37세대), 37.66㎡(35세대), 39.96㎡(54세대/56A형), 39.96㎡(36세대/56B형), 46.72㎡(14세대), 48.50㎡(9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나)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 공공기여계획

[기정]

구분	위치	기부채납 내용	면적	기부채납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8-1일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계약면적: 15,013.22㎡	토지지분: 1,733.36㎡	서울시청
추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계약면적: 5,677.67㎡	토지지분: 568.21㎡	서울시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변경]

구분	위치	기부채납 내용	면적	기부채납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8-1일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계약면적: 15,006.8997㎡	토지지분: 1,739.2437㎡	서울시청
추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계약면적: 5,707.4340㎡	토지지분: 572.50㎡	서울시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방재계획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변경 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계					7,601.0	-					
1	서초동	1448	1	대	1,904.6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904.6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2	서초동	1448	2	대	479.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79.7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3	서초동	1448	3	대	3,760.1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760.1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4	서초동	1448	4	대	1,107.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07.7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5	서초동	1448	6	대	348.9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48.9	-	-	-
						(위탁자) 주식회사제이엘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	-	-

1)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계					7,601.0	-					
1	서초동	1448	1	대	1,904.6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904.6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2	서초동	1448	2	대	479.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79.7	-	-	-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3	서초동	1448	3	대	3,760.1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760.1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4	서초동	1448	4	대	1,107.7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07.7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5	서초동	1448	6	대	348.9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48.9	-	-	-
						(위탁자) 주식회사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	-	-

2) 물건조서(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계								13,657.57						
1	서초동	1448	3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989.1.20	9,327.97	3	6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주식회사제이엘 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위탁자)
2	서초동	1448	4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984.01.13	3,645.92	2	4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주식회사제이엘 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위탁자)
3	서초동	1448	6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987.07.20	683.68	1	3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주식회사제이엘 유나이티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여의도클라트 1231호(여의도동)	(위탁자)

2) 물건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계														
1	서초동	1448	3	대	-	-	-	-	-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위탁자)
2	서초동	1448	4	대	-	-	-	-	-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위탁자)
3	서초동	1448	6	대	-	-	-	-	-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스페이스자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위탁자)

3) 토지취득 방법 (변경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7호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87호(2021.4.15.)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65호(2021.12.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구분	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제이엘유나이티드1	윤도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여의도동, 1231호)
변경	(주)스페이스자광	윤도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5, 3층 (서초동, NK빌딩)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년
-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6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7,601㎡
다. 건 폐 율
- 기정 : 58.97%(건축면적: 4,482.4678㎡)
- 변경 : 58.96%(건축면적: 4,481.8902㎡)

라. 용 적 률
- 기정 : 638.85%*(용적률산정용 연면적 48,559.2325㎡)
- 변경 : 639.23%(용적률산정용 연면적 48,587.918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65호(2021.12.9.)의 용적률 오기 정정(635.85%→638.85%)

마. 용　　도
- 기정 : 공동주택(공공임대 271세대/민간임대 564세대), 판매시설
- 변경 : 공동주택(공공임대 271세대/민간임대 564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 기정 : 2개동, 지하5층/지상29,36층, 연면적 75,558.3730㎡
- 변경 : 2개동, 지하5층/지상29,36층, 연면적 75,372.8735㎡

사.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 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8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변경 고시

변경된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에 대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조성대상: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강서구	까치산로4길	4~10	240

2. 조성계획(변경):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서구 까치산로4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변경)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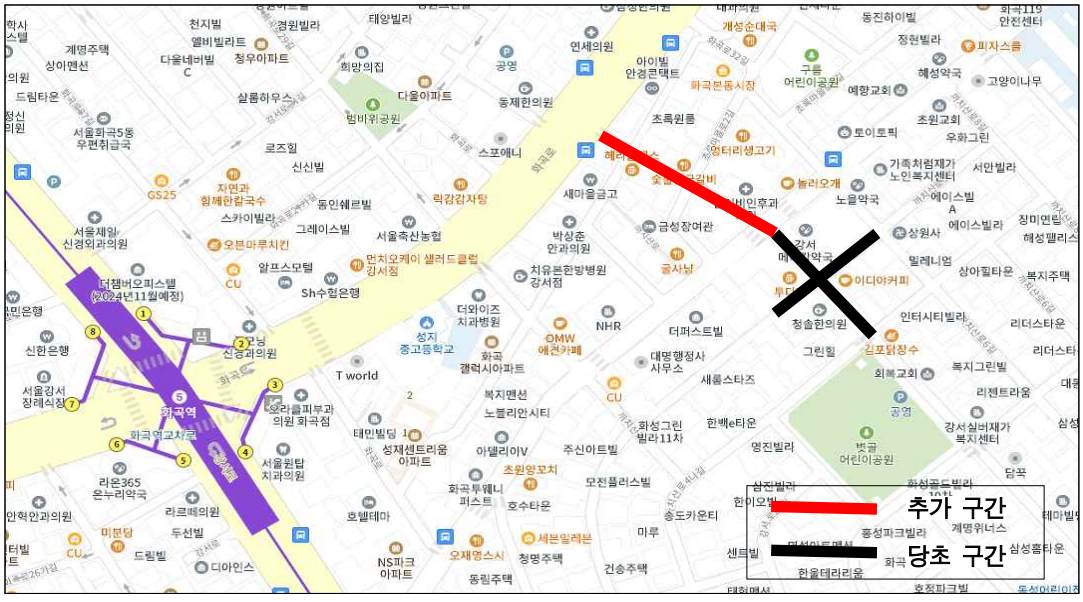
[붙임]

강서구 까치산로4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변경)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위치 : 까치산로4길 일대 (폭 9~10m)

당초				변경			
기점	종점	폭원	연장	기점	종점	폭원	연장
까치산로30	까치산로4나길2	9~10	70	화곡로194	좌동	좌동	170
까치산로4길10	까치산로6길10	4~6	7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사업기간 : 2024.05.~2024.06.

○ 사업내용

– 스텐실 포장 (2019년 기 설치)

– 지시표지 및 노면표시

○ 사 업 비 : 5,000천원

○ 사업지 현황

– 폭 9~10m의 양방통행 도로이며 마을버스 노선 통과하는 도로임

–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음

□ 개선목표 및 범위

○ (만족도)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 (안전성 측면)차량 감속,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으로 보행안전 확보

○ (쾌적성 측면)가로미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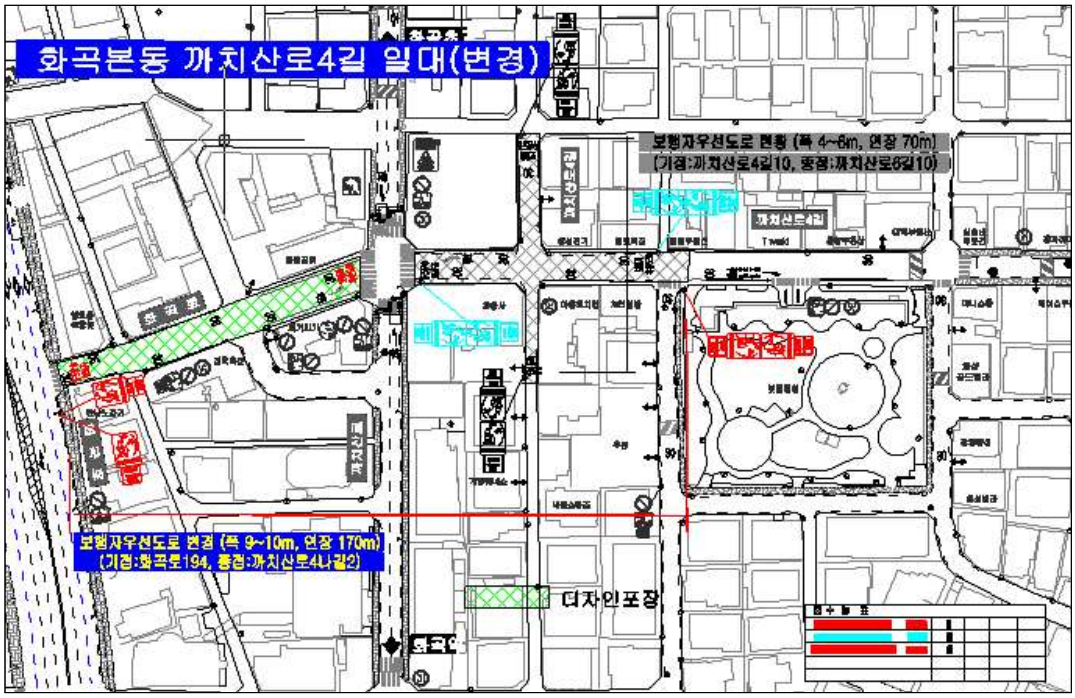
□ 설계안

○ 설계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 보행자우선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스텐실 포장

○ 설계도



□ 시설협의 및 조치사항
○ 강서경찰서
– 협의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변경관련
– 조치사항 : 교통규제 심의

□ 소요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 5,000천원
– 교통안전시설 설치 ※스텐실 포장은 2019년 기 설치
○ 일정계획
– ’24. 4. : 조성계획 고시
– ’24. 4. : 교통규제심의 실시
– ’24. 5. : 보행자우선도로 교통표지판 설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한국체육대학교)

건설부고시 제326호(1984.8.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4호(2023.9.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에 위치한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 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111,902.30	-	111,902.30	1984. 8. 25. (건고시 제326호)	자연녹지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구분	명칭	연 번	면 적 (㎡)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29,528.0

구분	명칭	연 번	면 적 (㎡)
		②	13,565.0
		⑥	29,980.3
	소 계		73,073.3
유지	외부활동구역	⑩	25,519.0
		⑪	7,636.0
	소 계		33,155.0
보존	녹지보존구역	⑬	5,674.0
합 계			111,902.3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	비 고
			기정	변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25.00	23.07	23.52	25.00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없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1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법정건폐율은 25%이하로 적용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

구분	총면적(㎡)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
				기 정	변 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111,902.3	82.00	77.33	78.91	82.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법정용적률은 82%이하로 결정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 고
	조례 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82.00	136.89	136.89	+56.00	138.00	○지표로부터 최대 8m ~ 35m 이하	· 4구역에서 16,537.00㎡ 용적 이전받음
②	82.00	129.74	129.74	+49.92	131.92	○지표로부터 최대 25m ~ 40m 이하	· 4구역에서 3,623.01㎡ 용적 이전받음 · 5구역에서 3,149.00㎡ 용적 이전받음
③	82.00	94.90	100.81	+24.44	106.44	○지표로부터 최대 5m ~ 40m 이하	· 5구역에서 2,730.72㎡ 용적 이전받음 · 6구역에서 4,596.00㎡ 용적 이전받음
④	82.00	0.24	0.24	-79.00	3.00	○지표로부터 최대 5m 이하	· 1구역으로 16,537.00㎡ 용적 이전함 · 2구역으로 3,623.01㎡ 용적 이전함
⑤	82.00	-	-	-77.00	5.00	○지표로부터 최대 5m 이하	· 2구역으로 3,149.00㎡ 용적 이전함 · 3구역으로 2,730.72㎡ 용적 이전함
⑥	82.00	-	-	-81.00	-	-	· 3구역으로 4,596.00㎡ 용적 이전함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동번호	건물명	층수(지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구역	13	골프연습장	4(1)	-	511.52	-	1,987.48	-	1,771.02	금회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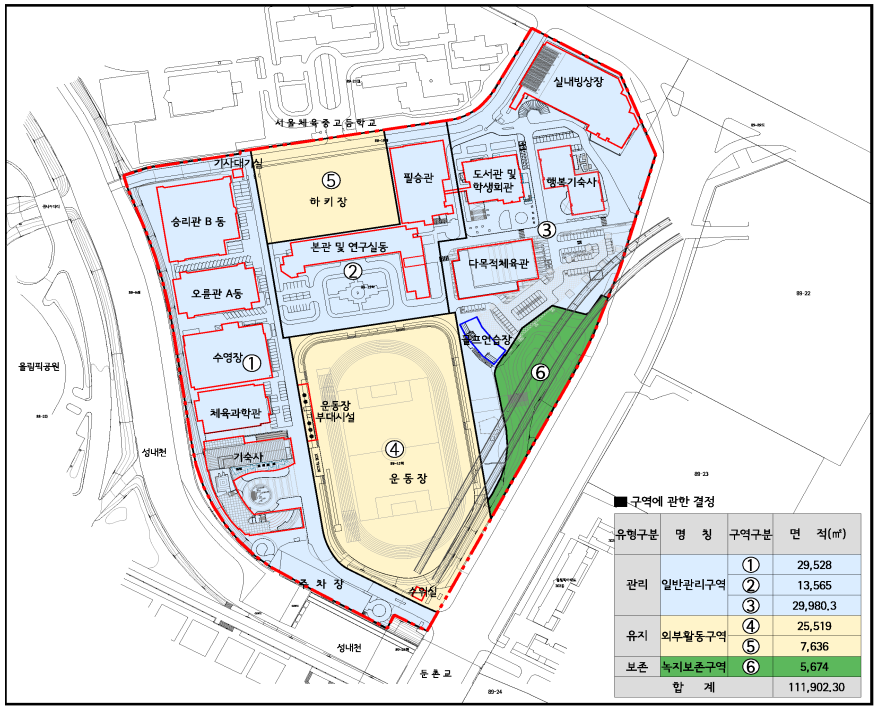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2)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 (☏2147-2992)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변경없음)



■구역에 관한 결정

유형구분	명 칭	구역구분	면 적(㎡)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29,528
		②	13,565
		③	29,980.3
유지	외부활동구역	④	25,519
		⑤	7,636
보존	녹지보존구역	⑥	5,674
합 계			111,90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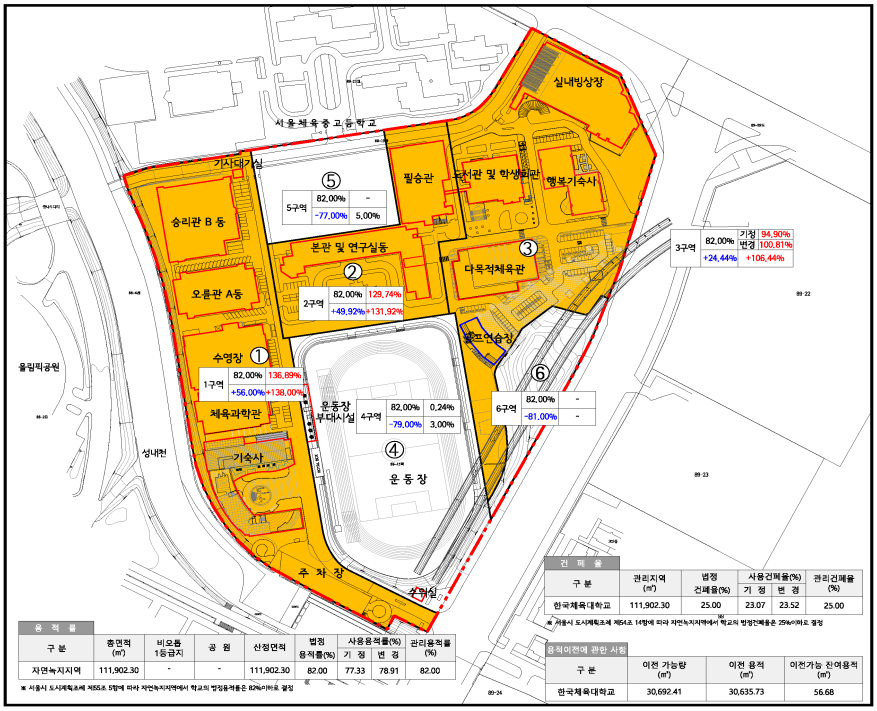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도

일반관리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
신축 건축물
지하철 9호선

N
0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용적률)



건 폐 율

구 분	관리지역 (㎡)	법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기 정	사용건폐율(%) 변 경	관리건폐율 (%)
한국체육대학교	111,902.30	25.00	23.07	23.52	25.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1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법정건폐율은 25%이며도 결정

용 적 률

구 분	총면적 (㎡)	비오톱 1등급지	공 원	산정면적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기 정	사용용적률(%) 변 경	관리용적률 (%)
자연녹지지역	111,902.30	-	-	111,902.30	82.00	77.33	78.91	82.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85조 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법정용적률은 82%이며도 결정

용적이전에 관한 사항

구 분	이전 가능량 (㎡)	이전 용적 (㎡)	이전가능 잔여용적 (㎡)
한국체육대학교	30,692.41	30,635.73	56.68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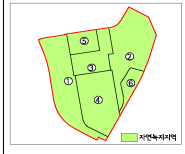
밀도계획도(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초과 관리구역
현황 건축물
신축 건축물
지하철 9호선

■밀도관리에 관한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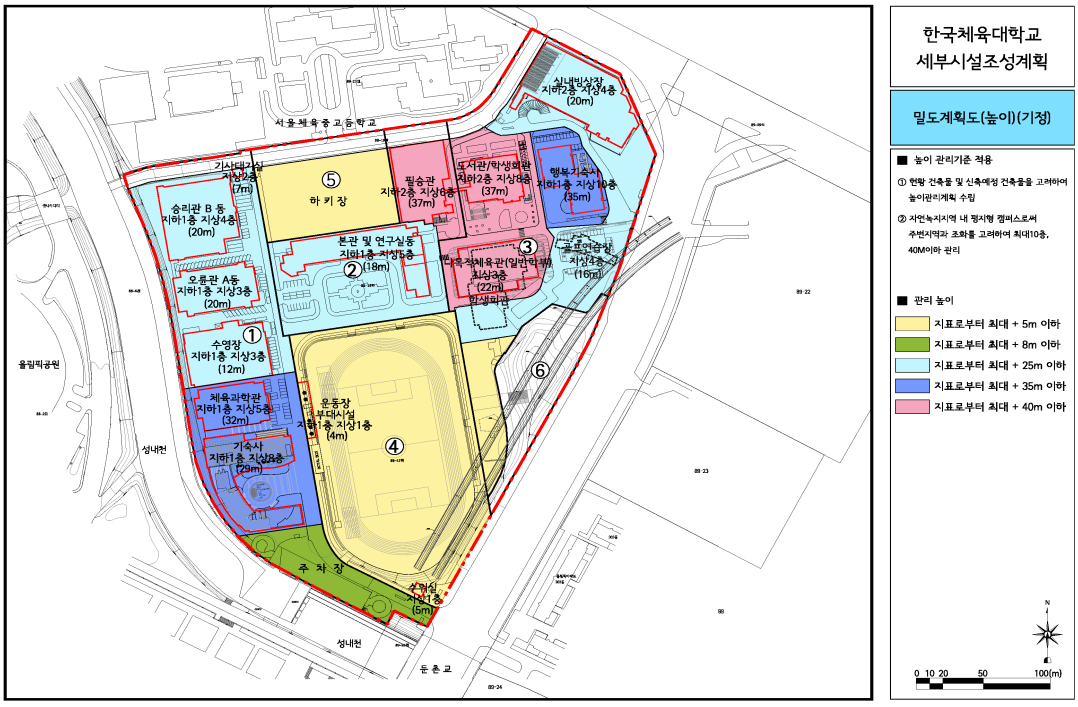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 지역·지구 구분도



N
0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기정)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기정)

■ 높이 관리기준 적용

① 현황 건축물 및 신축예정 건축물을 고려하여 높이관리계획 수립

② 자연녹지지역 내 평지형 캠퍼스로써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하여 최대10층, 40M이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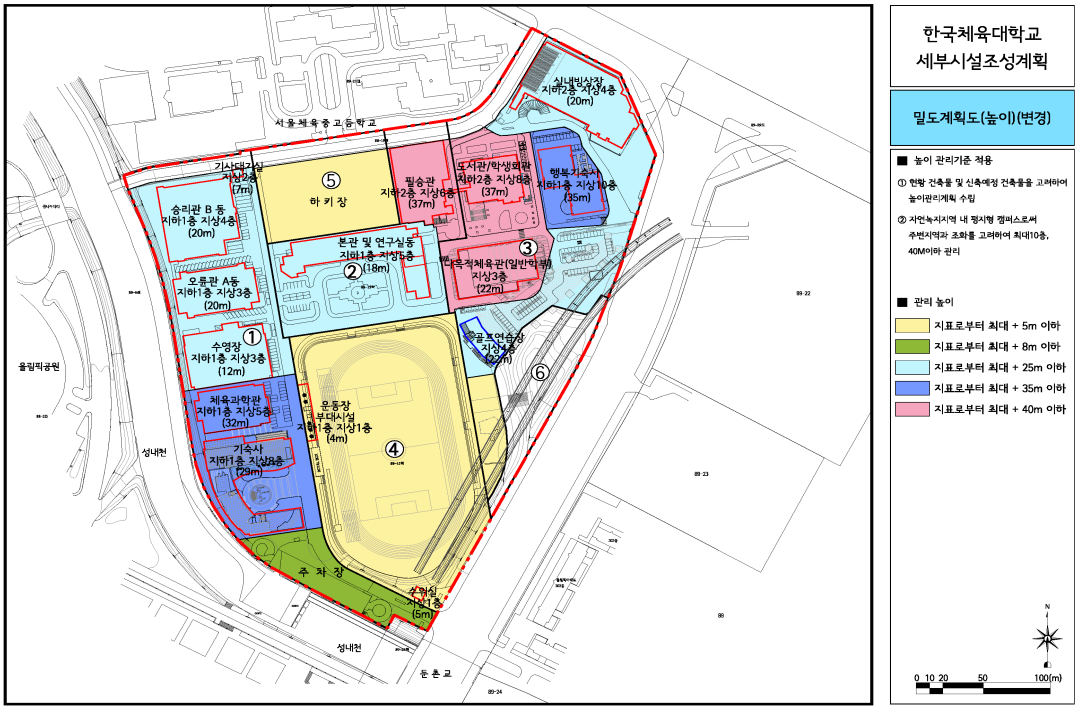
■ 관리 높이

- 지표로부터 최대 + 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2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3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40m 이하

N

0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변경)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변경)

■ 높이 관리기준 적용

① 현황 건축물 및 신축예정 건축물을 고려하여 높이관리계획 수립

② 자연녹지지역 내 평지형 캠퍼스로써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하여 최대10층, 40M이하 관리

■ 관리 높이

- 지표로부터 최대 + 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2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3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 40m 이하

N

0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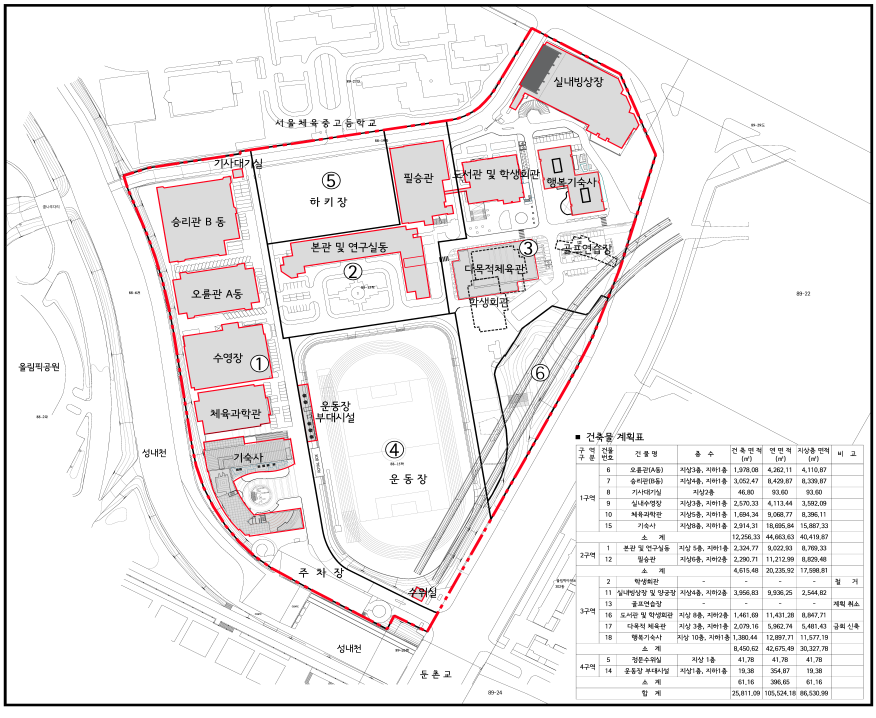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

■ 인접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간선도로
- 타 시설
- 하천
- 건축물
- 신축예정건축물
- 지하철 9호선

N
0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도 (기정)



■ 건축물 계획표

구역	건물번호	건물명	층 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 면적 (㎡)	비 고
1구역	6	오륜관(A동)	지상3층, 지하1층	1,978.08	4,262.11	4,110.87	
	7	승리관(B동)	지상4층, 지하1층	3,052.47	8,429.87	8,339.87	
	8	가사대기실	지상2층	46.80	93.60	93.60	
	9	실내수영장	지상3층, 지하1층	2,570.33	4,113.44	3,592.09	
	10	체육과학관	지상5층, 지하1층	1,684.34	9,068.77	8,396.11	
	15	기숙사	지상8층, 지하1층	2,914.31	18,695.84	15,887.33	
	소 계			12,258.33	44,663.63	40,419.87	
2구역	1	본관 및 연구실동	지상 5층, 지하1층	2,324.77	9,022.93	8,789.33	
	12	필승관	지상6층, 지하2층	2,290.71	11,212.99	8,829.48	
	소 계			4,615.48	20,235.92	17,598.81	
3구역	2	학생회관	-	-	-	-	철 거
	11	실내빙상장 및 당구장	지상4층, 지하2층	3,956.83	9,936.25	2,544.82	
	13	골프연습장	-	-	-	-	계획 취소
	16	도서관 및 학생회관	지상 8층, 지하2층	1,461.69	11,431.28	8,847.71	
	17	다목적 체육관	지상 3층, 지하1층	2,079.16	5,962.74	5,481.43	금회 신축
	18	행복기숙사	지상 10층, 지하1층	1,380.44	12,897.71	11,577.19	
	소 계			8,450.62	42,675.49	30,327.78	
4구역	5	정문수위실	지상 1층	41.78	41.78	41.78	
	14	운동장 부대시설	지상1층, 지하1층	19.38	354.87	19.38	
	소 계			61.16	396.65	61.16	
합 계				25,811.09	105,524.18	86,53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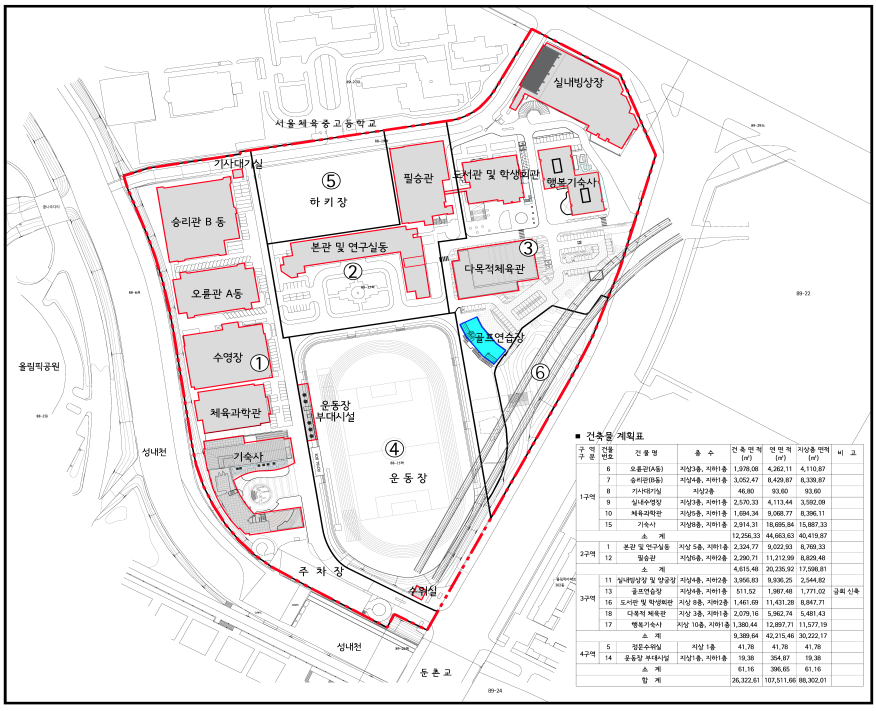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도(기정)

- 현황 건축물
- 신축 예정건축물
- 철거 건축물
- 계획 취소 건축물
- 지하철 9호선

N
0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도 (변경)



■ 건축물 계획표

구역 구분	건물번호	건물명	층 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 면적 (㎡)	비 고
1구역	6	오륜관(A동)	지상3층, 지하1층	1,978.08	4,262.11	4,110.87	
	7	승리관(B동)	지상4층, 지하1층	3,052.47	8,429.87	8,339.87	
	8	기사대기실	지상2층	46.80	93.60	93.60	
	9	실내수영장	지상3층, 지하1층	2,570.33	4,113.44	3,592.09	
	10	체육과학관	지상5층, 지하1층	1,694.34	9,068.77	8,396.11	
	15	기숙사	지상9층, 지하1층	2,914.31	18,695.84	15,887.33	
	소 계			12,256.33	44,663.63	40,419.87	
2구역	1	본관 및 연구실동	지상 5층, 지하1층	2,324.77	9,022.93	8,769.33	
	12	필승관	지상6층, 지하2층	2,280.71	11,212.99	8,829.48	
	소 계			4,615.48	20,235.92	17,598.81	
3구역	11	실내빙상장 및 양궁장	지상4층, 지하2층	3,956.83	9,936.25	2,544.82	
	13	골프연습장	지상4층, 지하1층	511.52	1,987.48	1,771.02	공회 신축
	16	도서관 및 학생회관	지상 8층, 지하2층	1,461.69	11,431.28	8,847.71	
	18	다목적 체육관	지상 3층, 지하1층	2,079.16	5,962.74	5,481.43	
	17	행복기숙사	지상 10층, 지하1층	1,380.44	12,897.71	11,577.19	
	소 계			9,389.64	42,215.46	30,222.17	
4구역	5	정문수위실	지상 1층	41.78	41.78	41.78	
	14	운동장 부대시설	지상1층, 지하1층	19.38	354.87	19.38	
	소 계			61.16	396.65	61.16	
	합 계			26,322.61	107,511.66	88,3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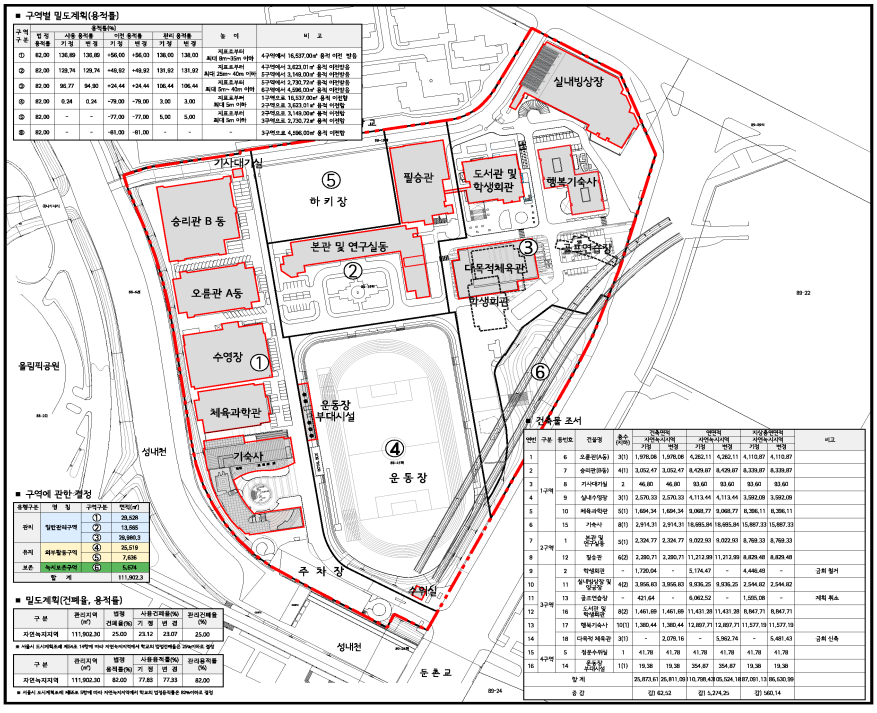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도(변경)

현황 건축물
신축 예정건축물
지하철 9호선

0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기정)



■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구역 구분	단 지	사업 승인률		지반 승인률		준공 승인률		높 이	비 고
	승인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①	82.00	136.89	136.89	+56.00	+56.00	138.00	138.00	지표조부터 최대 89m~35m 이하	4구역에서 16,537.00㎡ 음식 이전 반응
②	82.00	139.74	129.74	+49.92	+49.92	131.92	131.92	지표조부터 최대 25m~40m 이하	4구역에서 3,623.01㎡ 음식 이전반응 5구역에서 3,149.00㎡ 음식 이전반응
③	82.00	98.77	94.90	+24.44	+24.44	106.44	106.44	지표조부터 최대 5m~ 40m 이하	5구역에서 2,730.72㎡ 음식 이전반응 6구역에서 4,596.00㎡ 음식 이전반응
④	82.00	0.24	0.24	-79.00	-79.00	3.00	3.00	지표조부터 최대 5m 이하	1구역으로 16,537.00㎡ 음식 이전됨 2구역으로 3,623.01㎡ 음식 이전됨
⑤	82.00	-	-	-77.00	-77.00	5.00	5.00	지표조부터 최대 5m 이하	3구역으로 3,149.00㎡ 음식 이전됨 3구역으로 2,730.72㎡ 음식 이전됨
⑥	82.00	-	-	-81.00	-81.00	-	-		3구역으로 4,596.00㎡ 음식 이전됨

■ 구역에 관한 계정

용행구조	명 칭	구역구조	면적(㎡)
준비	일반공작구역	①	20,526
		②	13,595
		③	39,990.3
유지	체육활동구역	④	35,519
		⑤	7,636
보존	녹지보존공원	⑥	5,591
합 계			111,902.3

■ 밀도계획(건폐율, 용적률)

구 분	관리지역 (㎡)	법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기 정	사용건폐율(%) 변 경	완료건폐율 (%)
자연녹지지역	111,902.30	25.00	23.12	23.07	25.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1항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 학교의 입지선정계획은 30%이하로 설정

구 분	관리지역 (㎡)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기 정	사용용적률(%) 변 경	완료용적률 (%)
자연녹지지역	111,902.30	82.00	77.83	77.33	82.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1항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 학교의 입지선정계획은 80%이하로 설정

■ 건축물 조서

번호	구분	동번호	건물명	층수 (지하)	지층면적 사전승인지역 기정	지층면적 사전승인지역 변경	연면적 사전승인지역 기정	연면적 사전승인지역 변경	지상층면적적 사전승인지역 기정	지상층면적적 사전승인지역 변경	비고
1		6	오륜관(A동)	3(1)	1,978.08	1,978.08	4,262.11	4,262.11	4,110.87	4,110.87	
2		7	승리관(B동)	4(1)	3,052.47	3,052.47	8,429.87	8,429.87	8,339.87	8,339.87	
3	1구역	8	기사대기실	2	46.80	46.80	93.60	93.60	93.60	93.60	
4		9	실내수영장	3(1)	2,570.33	2,570.33	4,113.44	4,113.44	3,592.09	3,592.09	
5		10	체육과학관	5(1)	1,694.34	1,694.34	9,068.77	9,068.77	8,396.11	8,396.11	
6		15	기숙사	8(1)	2,914.31	2,914.31	18,695.84	18,695.84	15,887.33	15,887.33	
7	2구역	1	본관 및 연구실동	5(1)	2,324.77	2,324.77	9,022.93	9,022.93	8,769.33	8,769.33	
8		12	필승관	6(2)	2,280.71	2,280.71	11,212.99	11,212.99	8,829.48	8,829.48	
9		2	학생회관	-	1,720.04	-	5,174.47	-	4,446.49	-	공회 철거
10		11	실내빙상장 및 양궁장	4(2)	3,956.83	3,956.83	9,936.25	9,936.25	2,544.82	2,544.82	
11	3구역	13	골프연습장	-	421.64	-	6,062.52	-	1,505.08	-	제척 부소
12		16	도서관 및 학생회관	8(2)	1,461.69	1,461.69	11,431.28	11,431.28	8,847.71	8,847.71	
13		17	행복기숙사	10(1)	1,380.44	1,380.44	12,897.71	12,897.71	11,577.19	11,577.19	
14		18	다목적 체육관	3(1)	-	2,079.16	-	5,962.74	-	5,481.43	공회 신축
15	4구역	5	정문수위실	1	41.78	41.78	41.78	41.78	41.78	41.78	
16		14	운동장 부대시설	1(1)	19.38	19.38	354.87	354.87	19.38	19.38	
합 계					25,873.61	25,811.59	10,708.43	10,524.18	87,081.13	86,536.99	
증 감					감) 62.52		감) 5,274.25		감) 56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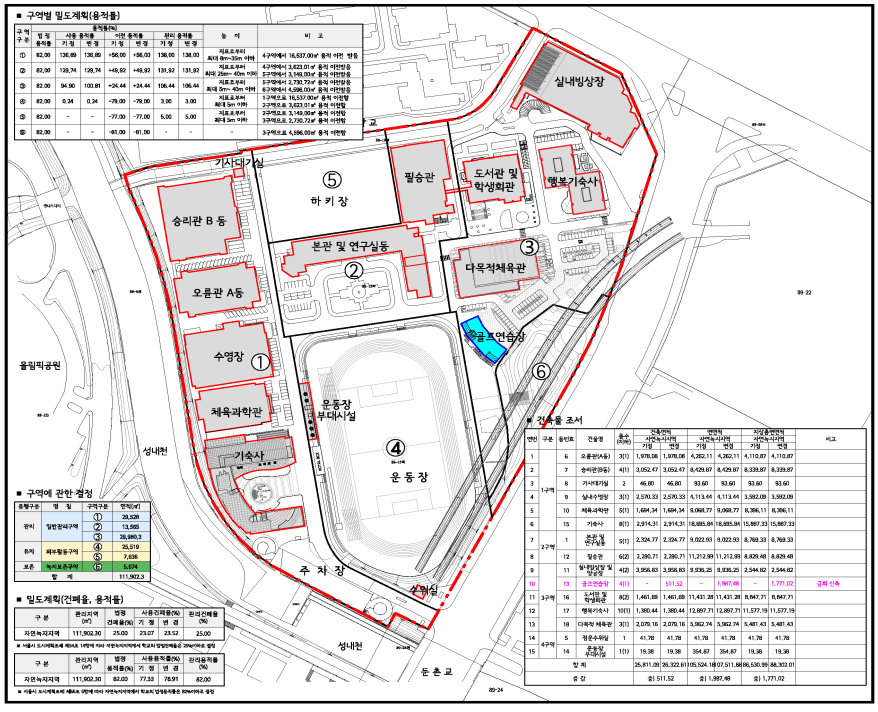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도(기정)

기정 건축물
철거 건축물
지하철 9호선

10 20 50 100(m)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변경)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도(변경)

기정 건축물
신축 건축물
지하철 9호선

N

10 20 50 10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0호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1982. 4. 2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7호(2023. 3. 30.)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인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인왕산근린공원 옥인지구 내 산책로(데크계단)를 설치하여 공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산3-1일대
3. 면 적 : 238,168.00㎡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1)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02-2148-2834)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02-330-1396)

인왕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옥인지구)

2024. 04

종 로 구

인왕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인왕산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 종로구 청운동 7-6번지 일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38,168.00	34,997.88	12	1,584.93	2,377.37	184	238,168.00	35,165.11	12	1,584.93	2,377.37	184	
시설지구	청운지구	39,692.10	9,140.68	6	891.43	1,364.20	49	39,692.10	9,140.68	6	891.43	1,364.20	49	
	옥인지구	92,881.80	14,741.42	2	601.78	921.45	34	92,881.80	14,908.65	2	601.78	921.45	34	시설부지면적 증가 167.23㎡
	누상지구	24,396.90	2,713.54	1	21.00	21.00	36	24,396.90	2,713.54	1	21.00	21.00	36	
	무악지구	47,494.80	4,201.20	1	16.00	16.00	27	47,494.80	4,201.20	1	16.00	16.00	27	
	홍제지구	8,795.00	1,718.91	1	31.62	31.62	20	8,795.00	1,718.91	1	31.62	31.62	20	
	쌈지마당지구	24,907.40	2,482.13	1	23.10	23.10	18	24,907.40	2,482.13	1	23.10	23.10	18	
시설율 (법정 40%)		(34,997.88㎡ / 238,168㎡) × 100% = 14.69%						(35,165.11㎡ / 238,168㎡) × 100% = 14.76%						증) 0.07%
건폐율 (법정 10%)		(1,584.93㎡ / 238,168㎡) × 100% = 0.67%						(1,584.93㎡ / 238,168㎡) × 100% = 0.67%						

나.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8,168.0	34,997.88	12	1,584.93	2,377.37	184	238,168.0	35,165.11	12	1,584.93	2,377.37	184	
기반시설	소 계	24,895.69	24,895.69	-	-	-	-	25,062.92	25,062.92	-	-	-	-	증) 167.23㎡
	도 로	21,351.93	21,351.93	-	-	-	-	21,519.16	21,519.16	-	-	-	-	증) 167.23㎡
	광 장	3,543.76	3,543.76	-	-	-	-	3,543.76	3,543.76	-	-	-	-	
조경시설		124.75	124.75	-	-	-	1	124.75	124.75	-	-	-	1	
휴양시설		1,999.54	1,999.54	-	-	-	103	1,999.54	1,999.54	-	-	-	103	
유희시설		1,267.80	1,267.80	-	-	-	9	1,267.80	1,267.80	-	-	-	9	
운동시설		3,342.89	3,342.89	-	-	-	71	3,342.89	3,342.89	-	-	-	71	
교양시설		1,535.67	1,535.67	5	1,076.00	1,807.30	-	1,535.67	1,535.67	5	1,076.00	1,807.30	-	
편익시설		1,831.54	1,831.54	7	508.93	570.07	-	1,831.54	1,831.54	7	508.93	570.07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202,787.12		-	-	-	-	202,619.89	-	-	-	-	-	감) 167.23㎡

다. <변경> 지구별 세부조서

1-2.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2,881.80	14,741.42	2	601.78	921.45	34	92,881.80	14,908.65	2	601.78	921.45	34	
기반시설	소 계	11,583.98	11,583.98	-	-	-	-	11,751.21	11,751.21	-	-	-	-	증) 167.23㎡
	도 로	11,097.48	11,097.48	-	-	-	-	11,264.71	11,264.71	-	-	-	-	증) 167.23㎡
	광 장	486.50	486.50	-	-	-	-	486.50	486.50	-	-	-	-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724.50	724.50	-	-	-	22	724.50	724.50	-	-	-	22	
유희시설		354.50	354.50	-	-	-	-	354.50	354.50	-	-	-	-	
운동시설		576.33	576.33	-	-	-	12	576.33	576.33	-	-	-	12	
교양시설		309.52	309.52	1	309.52	568.05	-	309.52	309.52	1	309.52	568.05	-	
편익시설		1,192.59	1,192.59	1	292.26	353.40	-	1,192.59	1,192.59	1	292.26	353.40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78,140.38	-	-	-	-	-	77,973.15	-	-	-	-	-	감) 167.23㎡

2-2.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시설조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92,881.80	14,741.42	철근콘	2	601.78	898.45	34			92,881.80	14,908.65	철근콘	2	601.78	898.45	34	주) 167.23㎡
기반시설	소 계			11,583.98	11,583.98								11,751.21	11,751.21						주) 167.23㎡
	도 로			11,097.48	11,097.48								11,264.71	11,264.71						주) 167.23㎡
	광장	가		486.50	486.50						가		486.50	486.50						
		가-1	옥인동 179-1	(76.00)	(76.00)						가-1	옥인동 179-1	(76.00)	(76.00)						
		가-2	옥인동 179-1	(192.00)	(192.00)						가-2	옥인동 179-1	(192.00)	(192.00)						
		가-3	옥인동 179-1	(51.00)	(51.00)						가-3	옥인동 179-1	(51.00)	(51.00)						
		가-4	옥인동 47-324	(167.50)	(167.40)						가-4	옥인동 47-324	(167.50)	(167.40)						
휴양시설	소 계			724.50	724.50					22			724.50	724.50					22	
	휴게소	나		724.50	724.50					22	나		724.50	724.50					22	
		나-1	옥인동 산3-1	(367.00)	(367.00)						나-1	옥인동 산3-1	(367.00)	(367.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2	옥인동 179-1	(99.50)	(99.50)						나-2	옥인동 179-1	(99.50)	(99.50)						
		나-3	옥인동 47-507	(85.40)	(85.40)						나-3	옥인동 47-507	(85.40)	(85.40)						
		나-4	옥인동 47-630	(7.20)	(7.20)						나-4	옥인동 47-630	(7.20)	(7.20)						
		나-5	옥인동 산1-12	(165.40)	(165.40)						나-5	옥인동 산1-12	(165.40)	(165.40)						
	정자	①	어린이놀이터							1	①	어린이놀이터							1	
	파고라	②	쉼터							2	②	쉼터							2	
	평의자	③	쉼터							10	③	쉼터							10	
	등의자	④								9	④								9	
유희시설	소 계			354.50	354.50								354.50	354.50						
	어린이놀이터	다	옥인동 179-1	354.50	354.50						다	옥인동 179-1	354.50	354.50						
안내시설	소 계			576.33	576.33					12			576.33	576.33					1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	라	옥인동 179-1	175.00	175.00						라	옥인동 179-1	175.00	175.00						
	다목적운동장	마	옥인동 179-1	401.33	401.33						마	옥인동 179-1	401.33	401.33						
	체력단련기구	⑤	전지역								⑤	전지역								
교양시설	소 계			309.52	309.52		1	309.52	545.05				309.52	309.52		1	309.52	545.05		
	힐링센터	아	옥인동 47-324	309.52	309.52		1	309.52	545.05		아	옥인동 47-324	309.52	309.52		1	309.52	545.05		
편익시설	소 계			1,192.59	1,192.59	3대	1	292.26	353.40				1,192.59	1,192.59	3대	1	292.26	353.40		
	약수터	사	옥인동 179-1	94.00	94.00						사	옥인동 179-1	94.00	94.00						
	책쉼터	바	옥인동 산3-1	1,065.59	1,065.59		1	292.26	353.40		바	옥인동 산3-1	1,065.59	1,065.59		1	292.26	353.40		
	주차장	자	신교동 2-120	33.00	33.00						자	신교동 2-120	33.00	33.00						
녹지 및 기타				78,140.38									77,973.15							감) 167.23㎡

3-2. 도로조서 (옥인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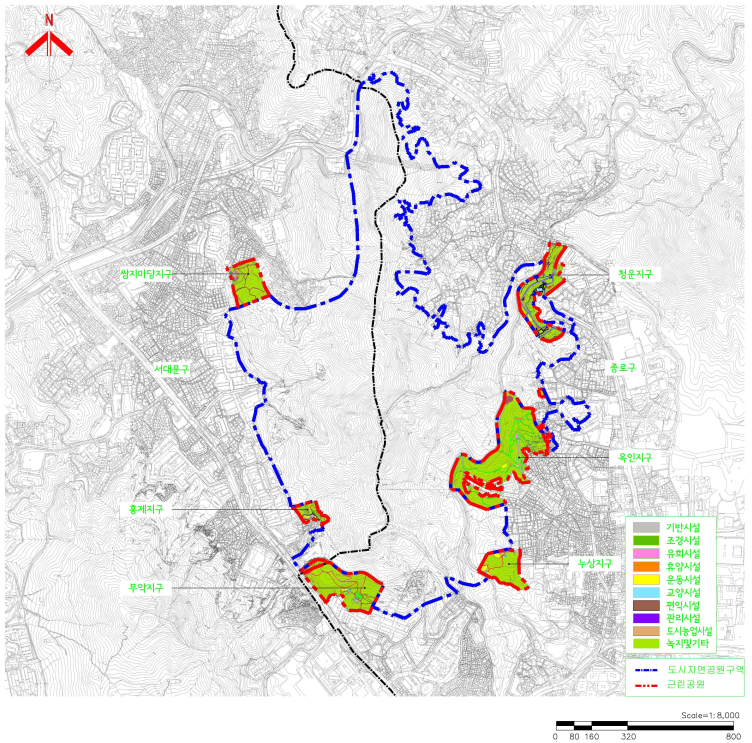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068.04	11,097.48				
변경					3,176.96	11,264.71				
당초	소로	소 계			959.28	7,334.28				
변경					959.28	7,334.28				
당초		2	1	8.0	164.50	1,374.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당초		2	2	8.0	395.93	3,821.7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7.0	32.00	224.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당초		3	2	4.0	72.34	702.86	연결로	소로3-3	광장 가-2	
당초		3	3	4.0	138.78	668.4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4	4.0	18.12	16.11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	5	4.0	10.21	34.13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	6	4.0	41.40	170.00	연결로	광장 가-2	소로2-1	
당초		3	7	4.0	72.00	288.00	산책로	소로2-1	산책로 22	
당초		3	8	2.5	14.00	35.00	진입로	소로3-1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소 계			2,108.76	3,763.20				
변경					2,217.68	3,930.43				
당초			1	1.5	16.00	24.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2	1.5	62.00	93.0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당초			3	1.5	2.50	3.7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4	1.5	42.00	63.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5	1.5	58.00	87.0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당초			6	1.5	109.60	164.5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3	
당초			7	1.5	107.67	162.08	연결로	산책로 6	쉼터 나-1	
당초			8	1.5	128.31	194.62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14	
당초			9	1.5	125.90	189.35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0	1.5	15.50	23.25	연결로	산책로 9	광장 가-1	
당초			11	1.2	7.50	9.00	연결로	광장 가-1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2	1.5	149.00	223.50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13	
당초			13	1.5	59.64	40.56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9	
당초			14	1.5	179.50	269.25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3	
당초			15	1.5	10.00	15.00	연결로	산책로 15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6	1.5	19.00	28.50	산책로	소로 2-1	산책로 13	
당초			17	2.5	7.00	17.50	연결로	소로 2-1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8	1.5	53.48	80.74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1	
당초			19	1.5	13.00	19.50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3	
당초			20	1.5	60.17	89.09	산책로	산책로 14	소로 2-2	
당초			21	1.5	48.50	72.75	연결로	산책로 13	체력단련장 라	
당초			22	1.5	58.80	88.80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2-2	
당초			23	1.5	19.50	29.25	산책로	소로 3-3	소로 2-1	
당초			24	1.5	8.00	12.00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23	
당초			25	1.5	69.50	104.2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4	
당초			26	1.5	123.02	268.06	연결로	산책로 28	다목적운동장 마	
당초			27	1.5	17.00	25.5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8	1.5	84.01	428.9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9	3.0~2.0	118.76	294.69	산책로	산책로 28	소 2-2	
당초			30	2.5	4.00	10.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1	2.5	63.00	157.5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2	2.0	73.00	146.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3	1.5	72.50	133.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4	1.0	9.00	9.00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당초			35	1.5	18.00	27.00	산책로	산책로 6	휴게소 나-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6	1.5	17.50	26.2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7	
당초			37	1.5	45.30	67.90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 36	
당초			38	2.4	4.60	11.00	산책로	산책로 37	숲힐링센터 아	
당초			39	2.4~4.3	4.50	15.00	산책로	산책로 37	숲힐링센터 아	
당초			40	1.1~2.0	17.70	25.80	산책로	산책로 37	휴게소 나-3	
당초			41	1.5	3.30	6.40	산책로	산책로 40	숲힐링센터 아	
당초			42	1.3~2.4	3.50	7.00	산책로	산책로 40	숲힐링센터 아	
신규			43	1.5	108.92	167.23	산책로	쉼터 나-1	바	

인왕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변경전]

인왕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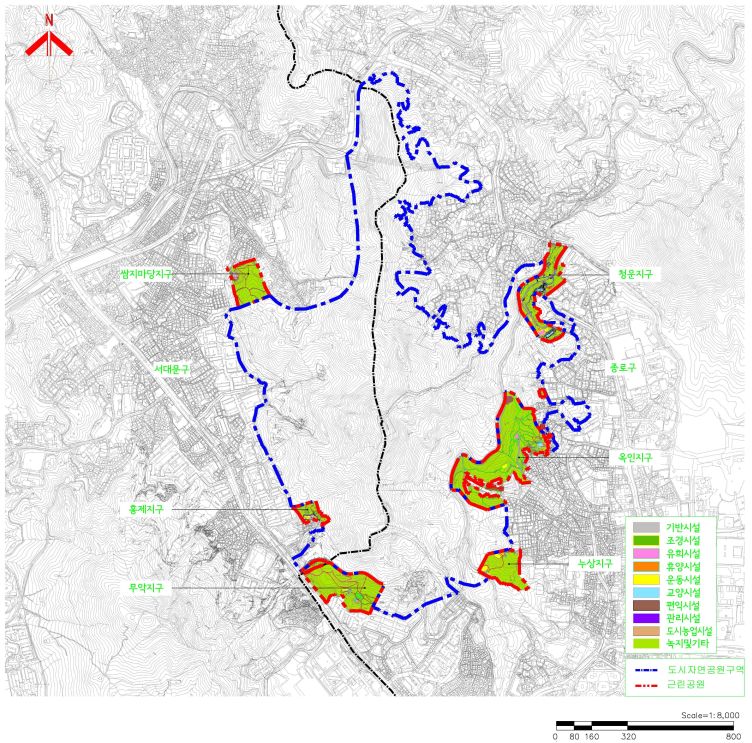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청운지구	옥인지구	누상지구	무악지구	홍제지구	썸지마당지구
부지 총 면적		238,168.00	39,692.10	92,881.80	24,396.90	47,494.80	8,795.00	24,907.40
시설 총 면적		34,997.88	9,140.68	14,741.42	2,713.54	4,201.20	1,718.91	2,482.13
기반시설	소계	24,895.69	5,721.31	11,583.98	1,500.04	3,009.43	972.58	2,108.35
	도로	21,351.93	4,893.31	11,097.48	964.04	2,596.27	295.40	1,505.43
	광장	3,543.76	828.00	486.50	536.00	413.16	677.18	602.92
조경시설		124.75	61.00	-	-	-	-	63.75
휴양시설		1,999.54	664.37	724.50	278.00	239.58	93.09	-
유희시설		1,267.80	757.70	354.50	-	-	-	155.60
운동시설		3,342.89	387.41	576.33	914.50	852.19	526.72	85.74
교양시설		1,535.67	1,226.15	309.52	-	-	-	-
편익시설		1,831.54	322.74	1,192.59	21.00	100.00	126.52	68.69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202,787.12	30,551.42	78,140.38	21,300.36	43,293.60	7,076.09	22,425.27
동수(동)		12	6	2	1	1	1	1
건축물 바닥면적		1,584.93	891.43	601.78	21.00	16.00	31.62	23.10
연면적		2,377.37	1,364.20	921.45	21.00	16.00	31.62	23.10
공작물(기)		184	49	34	36	27	20	18
비고		도시계획도로 383.00			도시계획도로 383.00			

* 공원시설율 : (34,997.88 / 238,168.00) × 100% = 14.69%
* 건폐율 : (1,584.93 / 238,168.00) × 100% = 0.67%

인왕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변경후]

인왕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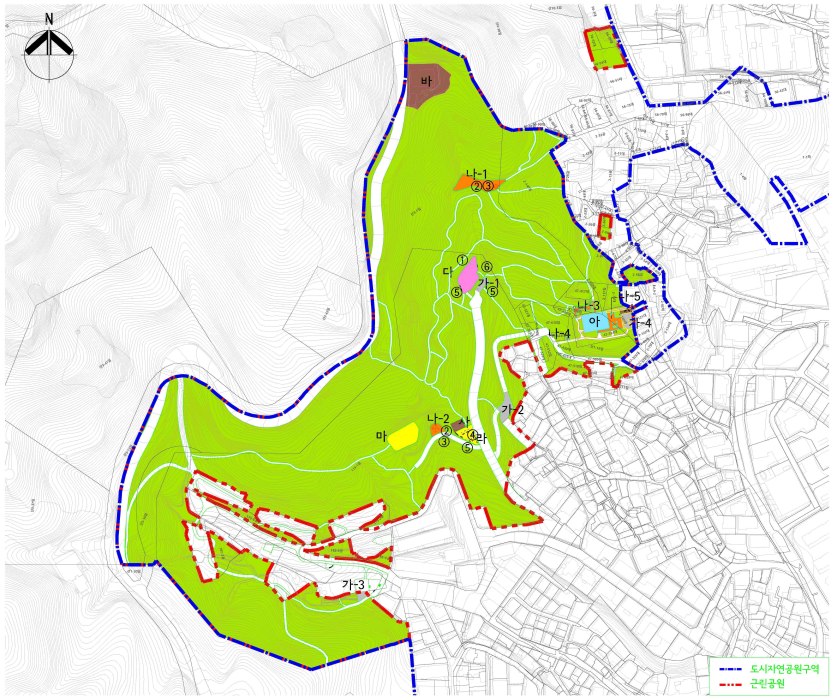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청운지구	옥인지구	누상지구	무악지구	홍제지구	쌈지마당지구
부지 총 면적		238,168.00	39,692.10	92,881.80	24,396.90	47,494.80	8,795.00	24,907.40
시설 총 면적		35,165.11	9,140.68	14,908.65	2,713.54	4,201.20	1,718.91	2,482.13
기반시설	소계	25,062.92	5,721.31	11,751.21	1,500.04	3,009.43	972.58	2,108.35
	도로	21,519.16	4,893.31	11,264.71	964.04	2,596.27	295.40	1,505.43
	광장	3,5143.76	828.00	486.50	536.00	413.16	677.18	602.92
조경시설		124.75	61.00	-	-	-	-	63.75
휴양시설		1,999.54	664.37	724.50	278.00	239.58	93.09	-
유희시설		1,267.80	757.70	354.50	-	-	-	155.60
운동시설		3,342.89	387.41	576.33	914.50	852.19	526.72	85.74
교양시설		1,535.67	1,226.15	309.52	-	-	-	-
편익시설		1,831.54	322.74	1,192.59	21.00	100.00	126.52	68.69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202,619.89	30,551.42	77,973.15	21,300.36	43,293.60	7,076.09	22,425.27
동수(동)		12	6	2	1	1	1	1
건축물 바닥면적		1,584.93	891.43	601.78	21.00	16.00	31.62	23.10
연면적		2,377.37	1,364.20	921.45	21.00	16.00	31.62	23.10
공작물(기)		184	49	34	36	27	20	18
비고		도시계획도로 383.00			도시계획도로 383.00			

* 공원시설율 : (35,165.11㎡ / 238,168.00㎡) × 100% = 14.76%
* 건폐율 : (1,584.93㎡ / 238,168.00㎡) × 100% = 0.67%

조성계획도 [변경전]

인왕산 근린공원 옥인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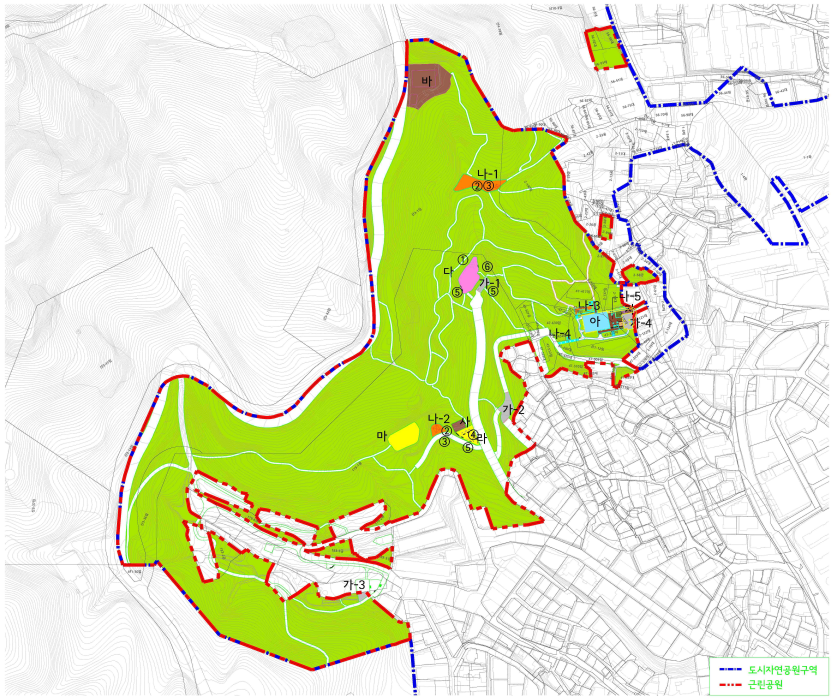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92,881.80	14,741.42	-	2	601.78	921.45	34	
기반시설	소계		11,583.98	11,583.98	-	-	-	-	-	
	도로		11,097.48	11,097.48	-	-	-	-	-	
	광장	가	486.50	486.50	-	-	-	-	-	
		가-1	(76.00)	(76.00)	-	-	-	-	-	
		가-2	(192.00)	(192.00)	-	-	-	-	-	
		가-3	(51.00)	(51.00)	-	-	-	-	-	
		가-4	(167.50)	(167.50)	-	-	-	-	-	
휴양시설	소계		724.50	724.50	-	-	-	-	22	
	쉼터	나	724.50	724.50	-	-	-	-	-	
		나-1	(367.00)	(367.00)	-	-	-	-	-	
		나-2	(99.50)	(99.50)	-	-	-	-	-	
		나-3	(85.40)	(85.40)	-	-	-	-	-	
		나-4	(7.20)	(7.20)	-	-	-	-	-	
		나-5	(165.40)	(165.40)	-	-	-	-	-	
	정자	①	-	-	-	-	-	-	1	
	파고라	②	-	-	-	-	-	-	2	
	평의자	③	-	-	-	-	-	-	10	
	등의자	④	-	-	-	-	-	-	9	
유희시설	소계		354.50	354.50	-	-	-	-	-	
	어린이놀이터	다	354.50	354.50	-	-	-	-	-	
운동시설	소계		576.33	576.33	-	-	-	-	12	
	체력단련장	라	175.00	175.00	-	-	-	-	-	
	다목적운동장	마	401.33	401.33	-	-	-	-	-	
	체력단련기구	⑤	-	-	-	-	-	-	12	
교양시설	소계		309.52	309.52	-	1	309.52	568.05	-	
	숲힐링센터	아	309.52	309.52	-	1	309.52	568.05	-	
편익시설	소계		1,192.59	1,192.59	-	1	292.26	353.40	-	
	책쉼터	바	1,065.59	1,065.59	-	1	292.26	353.40	-	
	약수터	사	94.00	94.00	-	-	-	-	-	
	주차장	자	33.00	33.0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78,140.38	-	-	-	-	-	-	
	녹지		78,140.38	-	-	-	-	-	-	

Scale=1:1,500
0 10 40 80 150

조성계획도 [변경후]

인왕산 근린공원 옥인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92,881.80	14,908.65	-	2	601.78	921.45	34	
기반시설	소계		11,751.21	11,751.21	-	-	-	-	-	
	도로		11,264.71	11,264.71	-	-	-	-	-	167.23종
	광장	가	486.50	486.50	-	-	-	-	-	
		가-1	(76.00)	(76.00)	-	-	-	-	-	
		가-2	(192.00)	(192.00)	-	-	-	-	-	
		가-3	(51.00)	(51.00)	-	-	-	-	-	
		가-4	(167.50)	(167.50)	-	-	-	-	-	
유양시설	소계		724.50	724.50	-	-	-	-	22	
	쉼터	나	724.50	724.50	-	-	-	-	-	
		나-1	(367.00)	(367.00)	-	-	-	-	-	
		나-2	(99.50)	(99.50)	-	-	-	-	-	
		나-3	(85.40)	(85.40)	-	-	-	-	-	
		나-4	(7.20)	(7.20)	-	-	-	-	-	
		나-5	(165.40)	(165.40)	-	-	-	-	-	
	정자	①	-	-	-	-	-	-	1	
	파고라	②	-	-	-	-	-	-	2	
	평의자	③	-	-	-	-	-	-	10	
	등의자	④	-	-	-	-	-	-	9	
유희시설	소계		354.50	354.50	-	-	-	-	-	
	어린이놀이터	다	354.50	354.50	-	-	-	-	-	
운동시설	소계		576.33	576.33	-	-	-	-	12	
	체력단련장	라	175.00	175.00	-	-	-	-	-	
	다목적운동장	마	401.33	401.33	-	-	-	-	-	
	체력단련기구	⑤	-	-	-	-	-	-	12	
교양시설	소계		309.52	309.52	-	1	309.52	568.05	-	
	숲힐링센터	아	309.52	309.52	-	1	309.52	568.05	-	
편익시설	소계		1,192.59	1,192.59	-	1	292.26	353.40	-	
	책쉼터	바	1,065.59	1,065.59	-	1	292.26	353.40	-	
	약수터	사	94.00	94.00	-	-	-	-	-	
	주차장	자	33.00	33.0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77,973.15	-	-	-	-	-	-	
	녹지		77,973.15	-	-	-	-	-	-	167.23법

Scale=1:1,500
0 10 40 80 15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1호

여의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0호(1999.2.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53호(2019.12.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여의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공원의 시설 및 종류 등이 변경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대
3. 면 적 : 229,539㎡
4.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별도첨부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공원조성과(☏ 02-2133-2075) 및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02-2133-2809)

여의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영등포구 여의도동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29,539.0	84,978.9	11	1,372.48	2,590.74	989	229,539.0	88,284.68	11	1,372.48	2,590.74	990	시설면적 증가 3,305.78㎡ 유희시설 1기 증가
기반시설 소계	71,168.0	71,168.0					71,168.0	71,168.0					
기반시설 도로	35,178.0	35,178.0					35,178.0	35,178.0					
기반시설 광장	35,990.0	35,990.0					35,990.0	35,990.0					
조경시설	5,304.0	5,304.0				25	5,304.0	5,304.0				25	
휴양시설	339.9	339.9				344	339.9	339.9				344	
유희시설	695.3	695.3				5	4,001.08	4,001.08				6	증 3,305.78㎡ (증 1기)
운동시설	692.2	692.2				39	692.2	692.2				39	
교양시설	2,303.8	2,303.8				4	2,303.8	2,303.8				4	
편익시설	4,211.38	3,075.8	9	987.78	1,634.22	12	4,211.38	3,075.8	9	987.78	1,634.22	12	
관리시설	1,620.9	1,399.9	2	384.70	956.52	560	1,620.9	1,399.9	2	384.70	956.52	560	
녹지및기타	143,203.52						139,897.74						감 3,305.78㎡
시설율 (법정 40%)	(84,978.9 / 229,539) × 100 = 37.02%						(88,284.68 / 229,539) × 100 = 38.46%						
건폐율 (법정 10%)	(1,372.48 / 229,539) × 100 = 0.60%						(1,372.48 / 229,539) × 100 = 0.60%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29,539	84,978.9		11	1,372.48	2,590.74	989			229,539	88,284.68		11	1,372.48	2,590.74	990	지상 3,305.78㎡
기반시설	계		계	71,168.0	71,168.0							계	71,168.0	71,168.0						
	도로			35,178	35,178								35,178	35,178						
	광장	가	19개소	35,990.0	35,990.0						가	19개소	35,990.0	35,990.0						
		가-1	여의도동 2번지	(855.5)	(855.5)						가-1	여의도동 2번지	(855.5)	(855.5)						
		가-2		(736.2)	(736.2)						가-2		(736.2)	(736.2)						
		가-3		(231.1)	(231.1)						가-3		(231.1)	(231.1)						
		가-4		(231.4)	(231.4)						가-4		(231.4)	(231.4)						
		가-5		(1,350.3)	(1,350.3)						가-5		(1,350.3)	(1,350.3)						
		가-6		(24,709.5)	(24,709.5)						가-6		(24,709.5)	(24,709.5)						
		가-7		(780.0)	(780.0)						가-7		(780.0)	(780.0)						
		가-8		(780.0)	(780.0)						가-8		(780.0)	(780.0)						
		가-9		(326.7)	(326.7)						가-9		(326.7)	(326.7)						
		가-10		(275)	(275)						가-10		(275)	(275)						
		가-11		(134.1)	(134.1)						가-11		(134.1)	(134.1)						
		가-12		(800)	(800)						가-12		(800)	(800)						
		가-13		(1,596.8)	(1,596.8)						가-13		(1,596.8)	(1,596.8)						
		가-14		(809.7)	(809.7)						가-14		(809.7)	(809.7)						
		가-15		(777)	(777)						가-15		(777)	(777)						
		가-16		(76.2)	(76.2)						가-16		(76.2)	(76.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17		(125)	(125)						가-17		(125)	(125)						
		가-18		(606.8)	(606.8)						가-18		(606.8)	(606.8)						
		가-19		(788.7)	(788.7)						가-19		(788.7)	(788.7)						
조경시설	계		계	5,304	5,304					25		계	5,304	5,304					25	
	입구플랜터	①	6개소	456	456						①	6개소	456	456						
		①-1	여의도동 2번지	(64)	(64)						①-1	여의도동 2번지	(64)	(64)						
		①-2		(64)	(64)						①-2		(64)	(64)						
		①-3		(100)	(100)						①-3		(100)	(100)						
		①-4		(100)	(100)						①-4		(100)	(100)						
		①-5		(64)	(64)						①-5		(64)	(64)						
		①-6		(64)	(64)						①-6		(64)	(64)						
	연못	나		4,848	4,848						나		4,848	4,848						
	생태연못	나-1		(730)	(730)						나-1		(730)	(730)						
	잔디마당연못	나-2		(588)	(588)						나-2		(588)	(588)						
	지당	나-3		(3,530)	(3,530)						나-3		(3,530)	(3,530)						
	목교	②								1	②								1	
	입구문주	③	12개소							23	③	12개소							23	
		③-1								(3)	③-1								(3)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③-2								(2)	③-2								(2)	
		③-3								(1)	③-3								(1)	
		③-4								(3)	③-4								(3)	
		③-5								(4)	③-5								(4)	
		③-6								(1)	③-6								(1)	
		③-7								(1)	③-7								(1)	
		③-8								(1)	③-8								(1)	
		③-9								(2)	③-9								(2)	
		③-10								(2)	③-10								(2)	
		③-11								(2)	③-11								(2)	
		③-12								(1)	③-12								(1)	
	목재데크	④								1	④								1	
휴양시설	계		계	339.9	339.9					538		계	339.9	339.9					344	
	쉼터	다	여의도동 2번지	339.9	339.9						다	여의도동 2번지	339.9	339.9						
		다-1		(12.9)	(12.9)						다-1		(12.9)	(12.9)						
		다-2		(21.9)	(21.9)						다-2		(21.9)	(21.9)						
		다-3		(114.6)	(114.6)						다-3		(114.6)	(114.6)						
		다-4		(109.4)	(109.4)						다-4		(109.4)	(109.4)						
		다-5		(81.1)	(81.1)						다-5		(81.1)	(81.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야외탁자		여의도동 2번지							22		여의도동 2번지							22	
	평의자		여의도동 2번지							134		여의도동 2번지							134	
	등의자		여의도동 2번지							175		여의도동 2번지							175	
	야외파라솔		여의도동 2번지							5		여의도동 2번지							5	
	파고라	⑤								8	⑤	여의도동 2번지							8	
		⑤-1								(2)	⑤-1								(2)	
		⑤-2								(1)	⑤-2								(1)	
		⑤-3								(2)	⑤-3								(2)	
		⑤-4								(1)	⑤-4								(1)	
		⑤-5								(2)	⑤-5								(2)	
유희시설	계		계	695.3	695.3					5		계	4,001.08	4,001.08					6	증 3,305.78㎡
	어린이놀이터	라	2개소	386.3	386.3					4	라	2개소	386.3	386.3					4	
		라-1	여의도동 2번지	(156.4)	(156.4)					(4)	라-1	여의도동 2번지	(156.4)	(156.4)					(4)	
		라-2		(229.9)	(229.9)						라-2		(229.9)	(229.9)						
	유아차대여소(밧데리카)	라`		309.0	309.0					1	라`		309.0	309.0						
	가스기구										라-3		3,305.78	3,305.78					1	증1기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계		계	692.2	692.2					39		계	692.2	692.2					39	
	건강지압보도	마		211.9	211.9						마		211.9	211.9						
		마-1		(88.6)	(88.6)						마-1		(88.6)	(88.6)						
		마-2		(123.3)	(123.3)						마-2		(123.3)	(123.3)						
	종합운동시설	바		169.0	169.0					28	바		455.3	455.3					28	
		바-1		(169.0)	(169.0)					(9)	바-1		(169.0)	(169.0)					(9)	
		바-2		(144.4)	(144.4)					(9)	바-2		(144.4)	(144.4)					(9)	
		바-3		(141.9)	(141.9)					(10)	바-3		(141.9)	(141.9)					(10)	
	농구대									10									10	
	로울러스케이트 대여소	바`		25.0	25.0		1			1	바`		25.0	25.0		1			1	
교양시설	계		계	2,303.8	2,303.8					4		계	2,303.8	2,303.8					4	
	야외무대	사	여의도동 2번지	1,242.0	1,242.0						사	여의도동 2번지	1,242.0	1,242.0						
	대형태극기 게양대	아	여의도동 2번지	(490.8)	(490.8)					1	아	여의도동 2번지	(490.8)	(490.8)					1	
	세종대왕동상	자	여의도동 2번지	1,043.4	1,043.4					1	자	여의도동 2번지	1,043.4	1,043.4					1	
	공군발상지 기념조형물	차	여의도동 2번지	16	16					1	차	여의도동 2번지	16	16					1	
	천주교 한국 순교자 103위	카	여의도동 2번지	2.4	2.4					1	카	여의도동 2번지	2.4	2.4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성 기념비																			
편익시설	계			4,211.38	3,075.8		9	987.78	1,634.22	12			4,211.38	3,075.8		9	987.78	1,634.22	12	
	매점/화장실	1	7개소	3,541.88	2,791.6		7	950.97	1,597.41		1	7개소	3,541.88	2,791.6		7	950.97	1,597.41		
		1-1		(723.3)	(574.7)	철근콘크리트	(1)	(127.26)	(322.56)		1-1		(723.3)	(574.7)	철근콘크리트	(1)	(127.26)	(322.56)		
		1-2		(420.2)	(399)		(1)	(127.26)	(167.73)		1-2		(420.2)	(399)		(1)	(127.26)	(167.73)		
		1-3		(498.1)	(444.4)	철근콘크리트	(1)	(127.26)	(167.73)		1-3		(498.1)	(444.4)	철근콘크리트	(1)	(127.26)	(167.73)		
		1-4		(557.)	(497.2)		(1)	(127.26)	(167.73)		1-4		(557.)	(497.2)		(1)	(127.26)	(167.73)		
		1-5		(615.)	(555.7)		(1)	(127.26)	(302.76)		1-5		(615.)	(555.7)		(1)	(127.26)	(302.76)		
	화장실	1-6		(169.8)	(169.8)		(1)	(169.8)	(324.03)		1-6		(169.8)	(169.8)		(1)	(169.8)	(324.03)		
	화장실 및 휴게음식점	1-7		(558.48)	(150.8)	철근콘크리트	(1)	(144.87)	(144.87)		1-7		(558.48)	(150.8)	철근콘크리트	(1)	(144.87)	(144.87)		
	사모정	3	여의도동 2번지	48.1	48.1	목구조	1	9.00	9.00		3	여의도동 2번지	48.1	48.1	목구조	1	9.00	9.00		
	여의정	4	여의도동 2번지	486.3	101.0	목구조	1	27.81	27.81		4	여의도동 2번지	486.3	101.0	목구조	1	27.81	27.81		
	음수전		여의도동 2번지							9		여의도동 2번지							9	
	공중전화		여의도동 2번지							2		여의도동 2번지							2	
	자전거보관소	차	4개소	135.1	135.1					1	차	1개소	135.1	135.1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차-1									차-1									
		차-2		(135.1)	(135.1)					(1)	차-2		(135.1)	(135.1)					(1)	
		차-3									차-3									
		차-4																		
		차-5									차-5									
관리시설	계			1,620.9	1,399.9		2	384.70	956.52	560			1,620.9	1,399.9		2	384.70	956.52	560	
	관리사무소	5	여의도동 2번지	1,214.7	1,016.1	철근콘크리트	1	272.90	709.00		5	여의도동 2번지	1,199.2	1,016.1	철근콘크리트	1	272.90	709.00		
	관리동	6	여의도동 2번지	342.2	304.3	철근콘크리트	1	111.80	247.52		6	여의도동 2번지	342.2	304.3	철근콘크리트	1	111.80	247.52		
	안내소	7	여의도동 2번지	53.0	53.0					6.0	7	여의도동 2번지	53.0	53.0					6.0	
		7-1		(40.0)	(40.0)					(4.0)	7-1		(40.0)	(40.0)					(4.0)	
		7-2		(4.0)	(4.0)					(1.0)	7-2		(4.0)	(4.0)					(1.0)	
		7-3		(9.0)	(9.0)					(1.0)	7-3		(9.0)	(9.0)					(1.0)	
	창고	8	여의도동 2번지	26.5	26.5					3.0	8	여의도동 2번지	26.5	26.5					3.0	
		8-1		(9.0)	(9.0)					(1.0)	8-1		(9.0)	(9.0)					(1.0)	
		8-2		(2.5)	(2.5)					(1.0)	8-2		(2.5)	(2.5)					(1.0)	
		8-3		(15.0)	(15.0)					(1.0)	8-3		(15.0)	(15.0)					(1.0)	
	울타리		여의도동 2번지							1		여의도동 2번지							1	
	볼라드		여의도동							82		여의도동							8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번지									2번지								
	쓰레기통		여의도동 2번지							6		여의도동 2번지							6	
	안내판		여의도동 2번지							75		여의도동 2번지							75	
	공원등		여의도동 2번지							358		여의도동 2번지							358	
	CCTV									29		여의도동 2번지							29	
녹지	계		계	143,203.52								계	139,897.74							감 3,305.78㎡
	녹지 및 기타			143,203.52									139,897.74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0,818.2	35,178				
당초	소로	소 계			2,687	9,206.5				
당초		3류	1	3	1,172.5	3,517.5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18	
당초		3류	2	8	53	424	산책로	산책로 7	한강시민공원	
당초		3류	3	10	111.50	1,115	산책로	광장 가-18	광장 가-19	
당초		3류	4	3	1,250	3,750	산책로	광장 가-19	광장 가-2	
당초		3류	5	4	100	400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1	
당초	산책로	소 계			8,131.2	25,971.5				
당초			1	6	46	276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17	
당초			2	4	89	356	산책로	광장 가-3	산책로 33	
당초			3	4	274	1,096	산책로	산책로 33	광장 가-7	
당초			4	4	237	948	산책로	광장 가-7	광장 가-9	
당초			5	4	231.5	926	산책로	광장 가-9	광장 가-12	
당초			6	4	163.5	654	산책로	광장 가-12	광장 가-16	
당초			7	4	546	2,184	산책로	광장 가-16	광장 가-17	
당초			8	6	46.5	279	산책로	광장 가-18	산책로 7	
당초			9	6	96	576	산책로	광장 가-19	산책로 7	
당초			10	4	68	272	산책로	광장 가-17	광장 가-15	
당초			11	4	92.5	370	산책로	광장 가-15	광장 가-11	
당초			12	4	142.5	570	산책로	광장 가-11	광장 가-10	
당초			13	4	307.5	1,230	산책로	광장 가-10	광장 가-8	
당초			14	4	283	1,132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33	
당초			15	4	86	344	산책로	산책로 33	광장 가-4	
당초			16	6	64.5	387	산책로	산책로 17	광장 가-2	
당초			17	4	234	936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3	
당초			18	2	86	172	산책로	광장 가-3	산책로 33	
당초			19	2	230.5	461	산책로	산책로 33	광장 가-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0	2	235	470	산책로	광장 가-7	광장 가-9	
당초			21	2	223	446	산책로	광장 가-9	광장 가-12	
당초			22	2	141.5	283	산책로	광장 가-12	광장 가-16	
당초			23	2	392	784	산책로	광장 가-16	광장 가-17	
당초			24	2	68	136	산책로	광장 가-17	광장 가-15	
당초			25	2	93	186	산책로	광장 가-15	광장 가-11	
당초			26	2	117.5	235	산책로	광장 가-11	광장 가-10	
당초			27	2	235.5	471	산책로	광장 가-10	광장 가-8	
당초			28	2	231	462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33	
당초			29	2	86	172	산책로	산책로 33	광장 가-4	
당초			30	2	218	436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3	
당초			31	3	92	276	산책로	산책로 33	목 교	
당초			32	3	81.5	244.5	산책로	목 교	산책로 33	
당초			33	6	189.5	1,137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당초			34	6	39	234	산책로	산책로 19	광장 가-5	
당초			35	6	39	234	산책로	광장 가-5	산책로 28	
당초			36	2	11.8	23.6	산책로	산책로 19	광장 가-6	
당초			37	2	9.7	19.4	산책로	산책로 19	광장 가-6	
당초			38	2	11.3	22.6	산책로	산책로 19	광장 가-6	
당초			39	2	14	28	산책로	산책로 19	광장 가-6	
당초			40	2	11.5	23	산책로	산책로 19	광장 가-6	
당초			41	2	11.2	22.4	산책로	산책로 19	광장 가-6	
당초			42	2	14	28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28	
당초			43	2	12.5	25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28	
당초			44	2	11	22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28	
당초			45	2	13.7	27.4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28	
당초			46	2	11.3	22.6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28	
당초			47	2	11	22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2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8	3	13	39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49	
당초			49	3	185	555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52	
당초			50	3	158	474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27	
당초			51	3	71.4	214.2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50	
당초			52	3	150.2	450.6	산책로	광장 가-9	산책로 26	
당초			53	3	71.3	213.9	산책로	산책로 52	산책로 54	
당초			54	3	127.4	382.2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55	
당초			55	3	174	522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6	
당초			56	4	63.4	253.6	산책로	산책로 55	광장 가-13	
당초			57	4	101.3	405.2	산책로	산책로 56	광장 가-15	
당초			58	4	29	116	산책로	산책로 55	세종대왕동상	
당초			59	4	32	128	산책로	세종대왕동상	산책로 57	
당초			60	4	11	44	산책로	세종대왕동상	산책로 25	
당초			61	3	32	96	산책로	광장 가-13	광장 가-14	
당초			62	2	30	48	산책로	광장 가-13	광장 가-14	
당초			63	4	24.6	86.1	산책로	광장 가-14	산책로 64	
당초			64	3	85	255	산책로	광장 가-15	산책로 65	
당초			65	3	66.5	199.5	산책로	광장 가-14	산책로 68	
당초			66	2	81.8	163.6	산책로	광장 가-13	산책로 68	
당초			67	2	51.2	76.8	산책로	산책로 68	매점/화장실1-5	
당초			68	3	173.5	520.5	산책로	산책로 69	광장 가-17	
당초			69	3	138.5	415.5	산책로	광장 가-16	여의정	
당초			70	2	72.4	115.8	산책로	여의정	산책로 68	
당초			71	2	50	100	산책로	산책로 68	여의정	
당초			72	2	48.5	77.6	산책로	종합운동시설	산책로 68	
당초			73	2	48	76.8	산책로	산책로 68	종합운동시설	
당초			74	3	93.7	281.1	산책로	산책로 69	산책로 23	

조성계획도(변경전)

여의도근린공원

SCALE=1/2,000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29,539	84,978.9	989	
기반시설	소 계		71,168.0	71,168.0		
	도 로	㉮ ~ ㉲	35,178	35,178		
	광 장	가-1	855.5	855.5		
		가-2	736.2	736.2		
		가-3	231.1	231.1		
		가-4	231.4	231.4		
		가-5	1350.3	1350.3		
		가-6	24709.5	24709.5		
		가-7	780.0	780.0		
		가-8	780.0	780.0		
		가-9	326.7	326.7		
		가-10	275	275		
		가-11	134.1	134.1		
		가-12	800	800		
		가-13	1596.8	1596.8		
		가-14	809.7	809.7		
		가-15	777	777		
		가-16	76.2	76.2		
		가-17	125	125		
		가-18	606.8	606.8		
		가-19	786.7	786.7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계		5304	5304	25	
	입구플랜터	①	456	456		
		①-1	(64)	(64)		
		①-2	(64)	(64)		
		①-3	(100)	(100)		
		①-4	(100)	(100)		
		①-5	(64)	(64)		
		①-6	(64)	(64)		
	연 못	나	4,848	4,848		
	생태연못	나-1	(730)	(730)		
	전디마실연못	나-2	(588)	(588)		
	지 당	나-3	(3,530)	(3,530)		
	목 교	⑦			1	
	입구문주	⑧			23	
		③-1			(3)	
		③-2			(2)	
		③-3			(1)	
		③-4			(3)	
		③-5			(4)	
		③-6			(1)	
		③-7			(1)	
		③-8			(1)	
		③-9			(2)	
		③-10			(2)	
		③-11			(2)	
		③-12			(1)	
	목재데크	④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휴양시설	계		339.9	339.9	344	
	원 탁	다	339.9	339.9		
		다-1	(12.9)	(12.9)		
		다-2	(21.9)	(21.9)		
		다-3	(114.6)	(114.6)		
		다-4	(109.4)	(109.4)		
		다-5	(81.1)	(81.1)		
	야외목자				22	
	봉 의 자				134	
	등 의 자				175	
	야외파고라				5	
	파 고 라	⑤			8	
		⑤-1			(2)	
		⑤-2			(1)	
		⑤-3			(2)	
		⑤-4			(1)	
		⑤-5			(2)	
유희시설	계		695.3	695.3	5	
	어린이놀이터	라	386.3	386.3	4	
		라-1	(156.4)	(156.4)	(4)	
		라-2	(229.9)	(229.9)		
	파크골프장(연습장)	라'	309.0	309.0	1	
운동시설	계		622.2	622.2	39	
	건강지압보도	마	211.9	211.9		
		마-1	(88.8)	(88.8)		
		마-2	(123.3)	(123.3)		
	종합운동시설	바	455.3	455.3	28	
		바-1	(169.0)	(169.0)	(9)	
		바-2	(144.4)	(144.4)	(9)	
		바-3	(141.9)	(141.9)	(10)	
	농구대				10	
	모델스포츠트리대체소	바'	25.0	25.0	1	
교양시설	계		2,303.8	2,303.8	4	
	야외무대	사	1,242.0	1,242.0		
	대형안내지개안대	아	490.8	490.8	1	
	세종대왕동상	자	1043.4	1043.4	1	
	공군발표 기념조형물	차	16	16	1	
	한주공 한국순교자 100위 시복 기념비	카	2.4	2.4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편익시설	계		4,211.38	3,075.8	12	
	매점/화장실	1	3,541.88	2,791.6		
		1-1	(723.3)	(574.7)		
		1-2	(420.2)	(388)		
		1-3	(498.1)	(444.4)		
		1-4	(557)	(497.2)		
		1-5	(615)	(555.7)		
	화 장 실	1-6	(169.8)	(169.8)		
	휴음료 및 휴게음식점	1-7	(558.48)	(150.8)		
	사 모 정	3	48.1	48.1		
	여 의 정	4	486.3	101.0		
	음 수 전				9	
	공중전화				2	
	자전거보관소	차	135.1	135.1	1	
		차-1				
		차-2	(135.1)	(135.1)	(1)	
		차-3				
		차-4				
		차-5				
관리시설	계		1,820.9	1399.9	560	
	관리사무소	5	1,199.2	1016.1		
	관 리 동	6	542.2	304.3		
	안 내 소	7	53.0	53.0	6	
		7-1	(40.0)	(40.0)	(4)	
		7-2	(4.0)	(4.0)	(1)	
		7-3	(9.0)	(9.0)	(1)	
	창 고	8	26.5	26.5	3	
		8-1	(9.0)	(9.0)	(1)	
		8-2	(2.5)	(2.5)	(1)	
		8-3	(15.0)	(15.0)	(1)	
	물 탄 리				1	
	볼 라 드				82	
	쓰레기통				6	
	안 내 판				75	
	경 원 등				358	
	CCTV				29	
녹 지	계		143,203.52			
	녹지 및 기타		143,203.52			

서울특별시 2024. 5. 2. (목)

조성계획도(변경후)

여의도근린공원

SCALE=1/2,000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29,539	88,284.68	990	
기반시설	소 계		71,168.0	71,168.0		
	도 로	㉮ ~ ㉲	35,178	35,178		
	광 장	가-1	855.5	855.5		
		가-2	736.2	736.2		
		가-3	231.1	231.1		
		가-4	231.4	231.4		
		가-5	1350.3	1350.3		
		가-6	24709.5	24709.5		
		가-7	780.0	780.0		
		가-8	780.0	780.0		
		가-9	326.7	326.7		
		가-10	275	275		
		가-11	134.1	134.1		
		가-12	800	800		
		가-13	1596.8	1596.8		
		가-14	809.7	809.7		
		가-15	777	777		
		가-16	76.2	76.2		
		가-17	125	125		
		가-18	606.8	606.8		
		가-19	788.7	788.7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계		5304	5304	25	
	입구플랜터	①	456	456		
		①-1	(64)	(64)		
		①-2	(64)	(64)		
		①-3	(100)	(100)		
		①-4	(100)	(100)		
		①-5	(64)	(64)		
		①-6	(64)	(64)		
	연 못	나	4,848	4,848		
	생태연못	나-1	(730)	(730)		
	전디마당연못	나-2	(588)	(588)		
	지 당	나-3	(3,530)	(3,530)		
	목 교	②			1	
	입구문주	③			23	
		③-1			(3)	
		③-2			(2)	
		③-3			(1)	
		③-4			(3)	
		③-5			(4)	
		③-6			(1)	
		③-7			(1)	
		③-8			(1)	
		③-9			(2)	
		③-10			(2)	
		③-11			(2)	
		③-12			(1)	
	목재데크	④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휴양시설	계		339.9	339.9	344	
	원 탁	다	339.9	339.9		
		다-1	(12.9)	(12.9)		
		다-2	(21.9)	(21.9)		
		다-3	(114.6)	(114.6)		
		다-4	(109.4)	(109.4)		
		다-5	(81.1)	(81.1)		
	야외목자				22	
	봉 의 자				134	
	등 의 자				175	
	야외파고라				5	
	파 고 라	⑤			8	
		⑤-1			(2)	
		⑤-2			(1)	
		⑤-3			(2)	
		⑤-4			(1)	
		⑤-5			(2)	
유희시설	계		4,001.06	4,001.08	6	
	어린이놀이터	라	386.3	386.3	4	
		라-1	(156.4)	(156.4)	(4)	
		라-2	(229.9)	(229.9)		
	가스가구	라-3	3,305.76	3,305.78	1	
	파워업레스토랑(보호각)	라'	309.0	309.0	1	
운동시설	계		692.2	692.2	39	
	건강지압보도	마	211.9	211.9		
		마-1	(88.6)	(88.6)		
		마-2	(123.3)	(123.3)		
	종합운동시설	바	455.3	455.3	28	
		바-1	(169.0)	(169.0)	(9)	
		바-2	(144.4)	(144.4)	(9)	
		바-3	(141.9)	(141.9)	(10)	
	농구대				10	
	유물리스크린 트대장소	바'	25.0	25.0	1	
교양시설	계		2,303.8	2,303.8	4	
	야외무대	사	1,242.0	1,242.0		
	대형안내게시판입대	아	490.8	490.8	1	
	세종대왕동상	자	1043.4	1043.4	1	
	공군행상및 기념조형물	차	16	16	1	
	한국군 한국유고상 10위 사람 기념비	카	2.4	2.4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편익시설	계		4,211.38	3,075.8	12	
	매점/화장실	1	3,541.88	2,791.6		
		1-1	(723.3)	(574.7)		
		1-2	(420.2)	(388)		
		1-3	(498.1)	(444.4)		
		1-4	(557)	(497.2)		
		1-5	(615)	(555.7)		
	화 장 실	1-6	(169.8)	(169.8)		
	휴음료 및 휴게음식대	1-7	(558.48)	(150.8)		
	사 모 정	3	48.1	48.1		
	여 의 정	4	486.3	101.0		
	음 수 전				9	
	공중전화				2	
	자전거보관소	차	135.1	135.1	1	
		차-1				
		차-2	(135.1)	(135.1)	(1)	
		차-3				
		차-4				
		차-5				
관리시설	계		1,820.9	1399.9	560	
	관리사무소	5	1,199.2	1016.1		
	관 리 동	6	542.2	304.3		
	안 내 소	7	53.0	53.0	6	
		7-1	(40.0)	(40.0)	(4)	
		7-2	(4.0)	(4.0)	(1)	
		7-3	(9.0)	(9.0)	(1)	
	창 고	8	26.5	26.5	3	
		8-1	(9.0)	(9.0)	(1)	
		8-2	(2.5)	(2.5)	(1)	
		8-3	(15.0)	(15.0)	(1)	
	로 타 리				1	
	볼 라 드				82	
	쓰레기통				6	
	안 내 판				75	
	공 원 등				358	
	CCTV				29	
녹 지	계		139,897.74			
	녹지 및 기타		139,897.7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3호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행 지정고시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한강공원 구역 내 도입·운행하고자 하는 '한강공원 순환관람차'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 제10호 나목 규정에 따라 반포·잠원한강공원 관리구역 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사용하고자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고시 취지
   한강공원 내 접근성 개선 및 한강공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운행 추진 중인 '한강공원 순환관람차'를 반포·잠원한강공원 구역 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사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제10호 나목에 근거하여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지정대상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에 따라 도입·운행하는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3. 한강공원 정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 일원

4. 반포·잠원한강공원 관리구역 정의
   (1) 반포한강공원 : 잠수교 상류 철탑 ~ 최하류쪽 한강철교 중앙 ※ 서래섬 일대 포함
   (2) 잠원한강공원 : 영동대교 중앙 ~ 잠수교 상류 철탑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02-3780-0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반포·잠원한강공원 지구지정도

□ 반포한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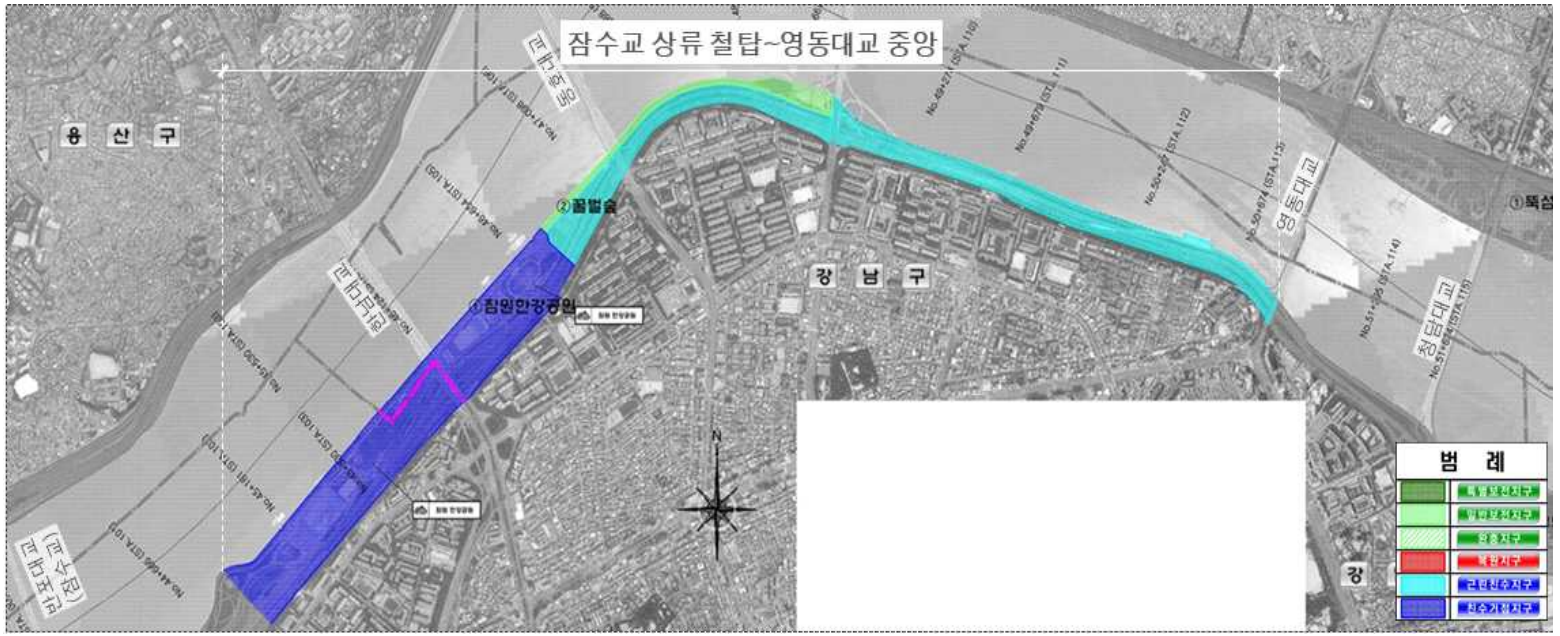


○ 복원지구 : 반포천 합류부

○ 근린친수지구 : 한강철교(공원 경계)~반포천 합류부,
동작대교 우측~서래섬

○ 친수거점지구 : 서래섬 앞 주차장~잠수교 상류 철탑(공원 경계)

□ 잠원한강공원



○ 일반보전지구 : 꿀벌 숲~성수대교 하부 한강변

○ 친수거점지구 : 잠수교 상류 철탑~1주차장

○ 근린친수지구 : 꿀벌 숲~영동대교 하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 제2020-39호(2020.01.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기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적분할 및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72,349.71	-	3,472,349.71	1995.3.10. (서고시 제1995-53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조서
1)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 9) 정비창 전면지구 : 변경없음
10)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 변경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동명	기정		면적(㎡)		계획내용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기정	변경	
변경	-	한강로3가	65-1대	12,684.8	65-1대	11,961.5	특별계획구역 (51,915.0㎡)	특별계획구역 (51,936.1㎡)	-
					65-593대	6.9			
					65-594대	530.8			
					65-595대	185.6			
			65-449대	76.0	65-449대	70.8			
					65-596대	5.2			
			65-450대	76.0	65-450대	67.4			
					65-597대	8.6			
			65-451대	76.0	65-451대	68.3			
					65-598대	7.7			
			65-452대	36.4	65-452대	32.1			
					65-599대	4.3			
			65-453대	19.8	65-453대	17.6			
					65-600대	2.2			
			65-454대	30.7	65-454대	30.3			
					65-601대	0.4			
			65-552철	4,712.2	65-605철	3,064.4			
					65-606철	203.3			
					65-607철	1,485.5			
			65-584대	32,354.6	65-608대	32,253.9			
					65-609대	106.9			
					65-610대	1.3			
					65-611대	0.5			
			65-585대	475.5	65-585대	302.5			
					65-612대	172.3			
					65-613대	0.7			
			65-586대	1,373.0	65-614대	265.0			
					65-615대	227.1			
					65-616대	842.3			
					65-617대	10.7			

주)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외 가구 및 획지규모 변경없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1,915.0㎡ → 51,936.1㎡	○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분할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구역계 및 면적 변경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

1)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분				높이계획
기정	아세아 아파트 주변지구	한강로변		• 10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 이하)
		이면부(주거지역)		• 40, 80m 이하
		특별계획구역	정류장부지	• 10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 이하)
			정류장부지 동측	• 최고층수 12층 이하
			용산세무서주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최고층수 12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0m 이하
			65-100번지	• 80m 이하
			아세아아파트	• 최고층수 33층 이하
			용산철도병원부지	• 10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기준 별도 제시
변경	아세아 아파트 주변지구	한강로변		• 10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 이하)
		이면부(주거지역)		• 40, 80m 이하
		특별계획구역	정류장부지	• 10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 이하)
			정류장부지 동측	• 최고층수 12층 이하
			용산세무서주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최고층수 12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0m 이하
			65-100번지	• 80m 이하
			아세아아파트	• 최고층수 36층 이하
			용산철도병원부지	• 10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기준 별도 제시

주) 1.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부분만 기재

주) 2.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외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없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최고층수 계획 변경 - 최고층수 33층 이하 → 최고층수 36층 이하	○ 주변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용적률 증가를 고려한 층수계획 변경 ○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주변지역으로 열린 공간을 형성

라.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건축물 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① ~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㉟ : 변경없음

나.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 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일원	51,915.0	증) 21.1	51,936.1	서울시고시 제2001-229 (2001.7.10.)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1,915.0㎡ → 51,936.1㎡	○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분할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구역계 및 면적 변경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구분		계획지표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		• 46,524㎡	•46,510.8㎡	
밀도	건폐율	• 50%	•50%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이하 •허용용적률 : 250%이하 •상한용적률 : 340%이하	•기준용적률 : 200%이하 •허용용적률 : 250%이하 •상한용적률 : 382%이하	

구분	계획지표		비고
	기정	변경	
높이	•최고층수 33층이하	•최고층수 36층이하	
토지이용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및 공공시설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및 공공시설	
건축선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폭 12m 개설	•보차혼용통로 폭 12m 개설	
공공시설계획	•순 부담률 : 34%이상 - 공공시설 (도로, 공공청사 등)	•순 부담률 : 34%이상 - 공공시설 (도로, 공공청사 등)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획지면적 변경 - 46,524㎡ → 46,510.8㎡	○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적분할 사항을 반영한 구역계 변경으로 획지선 및 면적 변경
	○ 상한용적률 변경 - 340%이하 → 382%이하	○ 주변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용산구 수요조사를 반영한 추가 공공기여 등 공공기여 계획 변경에 따른 상한용적률 변경
	○ 최고층수 계획 변경 - 최고층수 33층이하 → 최고층수 36층이하	○ 주변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용적률 증가를 고려한 층수계획 변경 ○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주변지역으로 열린 공간 형성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5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Ⅲ.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일원	51,915.0	증) 21.1	51,936.1	-

주) 구역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1,915.0㎡ → 51,936.1㎡	○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분할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구역계 및 면적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915.0	증) 21.1	51,936.1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64.6	-	464.6	0.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22.8	증) 90.9	413.7	0.8%	-
	제3종일반주거지역	51,127.6	감) 69.8	51,057.8	98.3%	-

주) 면적 등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한강로3가 65-608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51,127.6㎡ → 51,057.8㎡(감 69.8㎡)	○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에 따른 지적분할로 사업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22.8㎡ → 413.7㎡(증 90.9㎡)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구간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4	12	집산도로	150 (139)	한강로3가 65-54	한강로3가 65-42	일반 도로	-	서고제188호 (06.05.18)	-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462 (254)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3가 65-329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438호 (10.12.2)	-
기정	중로	3	11	12	집산도로	109 (109)	한강로3가 65-42	한강로3가 65-26	일반 도로	-	서고제188호 (06.05.18)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구간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92 (192)	한강로3가 (중3-(14))	한강로3가 (중3-9)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438호 (10.12.2)	-

주) ( )는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내 연장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도면표시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①	한강로3가 65-608일대	46,524.0	획지
변경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①	한강로3가 65-608일대	46,510.8	획지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46,524.0㎡ → 46,510.8㎡	○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적분할 사항을 반영한 구역계 변경으로 획지선 및 면적 변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및 공공시설	좌 동	

나.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 변경

1) 건폐율 : 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50% 이하	좌 동	

2) 용적률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좌 동	좌 동	제3종 일반주거
	허용용적률	250% 이하	250% 이하	좌 동	좌 동	
	상한용적률	340% 이하	382% 이하	좌 동	좌 동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적률	○ 상한용적률 계획 변경 : 340% 이하 → 382% 이하	○ 주변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용산구 수요조사를 반영한 추가 공공기여 등 공공기여 계획 변경에 따른 상한용적률 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기준 : 변경없음

-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건축계획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권장·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건축선 후퇴부분 등 관련규정상 의무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에서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는 없음
- 상기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①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계획 유도형 인센티브	건축물용도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X (지정·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20%이상 설치(주차장제외)
	대지내공지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4	-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친환경 인센티브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X0.12이내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X0.08이내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X0.04이내	•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X0.4이내 적용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X0.08이내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X0.06이내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X0.04이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X0.12이내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X0.10이내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X0.08이내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X0.06이내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X0.04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X0.04이내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X0.04이내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X(녹화면적/대지면적)X0.1이내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 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X(보존면적/대지면적)X0.2이내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X(설치면적/대지면적)X0.2이내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적용

다.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최고층수 33층 이하	좌 동	-
변경	최고층수 36층 이하	좌 동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높이	○ 최고층수 계획 변경 - 최고층수 33층이하 → 최고층수 36층이하	○ 주변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용적률 증가를 고려한 층수계획 변경 ○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주변지역으로 열린 공간을 형성

3.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가. 공공시설 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률	•순부담률 : 34%이상 - 공공시설 (도로, 공공청사 등)	• 공공용지 부담비율 : 34%이상 ‣ 계획 : 34.91% ①도로 조성 : 5,391㎡ ②공공청사 설치 : 연면적 : 41,829.99㎡ → 환산부지 면적 : 12,734.12㎡ 전체 : 5,391㎡ + 12,734.12 = 18,125.12㎡	-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률	•순부담률 : 34%이상 - 공공시설 (도로, 공공청사 등)	• 공공용지 부담비율 : 34%이상 ‣ 계획 : 35.32% ①도로 조성 : 5,425.3㎡ ②공공청사 설치 : 연면적 : 42,520.2㎡ → 기부채납(환산+지분) 면적 : 11,983.7㎡ ③체육관 설치 : 연면적 : 3,002.6㎡ → 기부채납(환산+지분) 면적 : 936.0㎡ 전체 : 5,425.3㎡ + 11,983.7㎡ + 936.0㎡ = 18,345.0㎡	-

나. 공공시설 설치내역 : 변경

– 기정

■ 순 부담률 : 34.91%

– 도로 기부채납 : 5,391㎡

– 공공청사 연면적 및 부지환산면적 : 41,829.99㎡, 환산부지면적 12,734.12㎡

■ 공공청사 연면적 및 부지환산면적 산식

구분	계산값	비고
① 대지면적	46,524.00㎡	공동주택 면적
② 전체건축연면적	238,005.61㎡	주차장면적 포함
③ 건축물㎡당지분율	0.19547	①부지면적 / ②전체건축연면적
④ 공공기여연면적	41,829.99㎡	-
⑤ 표준건축비	1,859,000원	국토교통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적용
⑥ 기준지가(공시지가2배)	17,062,000원	⑦공시지가 X 2
⑦ 공시지가	8,531,000원	대상부지 공시지가
⑧ 환산부지면적	4,557.61㎡	(④공공기여 연면적 X ⑤표준건축비) / ⑥공시지가2배
⑨ 지분면적	8,176.51㎡	④공공기여연면적 X ③건축물㎡당지분율
⑩ 기부채납면적	12,734.12㎡	⑧환산부지면적 + ⑨지분면적

– 변경

■ 순 부담률 : 35.32%

– 도로 기부채납 : 5,425.3㎡

– 공공청사(공관) 연면적 및 기부채납면적 : 42,520.2㎡, 기부채납면적 11,983.7㎡

– 체육관 연면적 및 기부채납면적 : 3,002.6㎡, 기부채납면적 936.0㎡

■ 건축물(공관) 기부채납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구분		계산값	비고
① 대지면적		46,510.8㎡	공동주택 면적
② 전체건축연면적		269,029.1㎡	주차장면적 포함
③ 건축물㎡당지분율		0.17288	①부지면적 / ②전체건축연면적
④-1	공공기여연면적	42,515.4㎡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관 설치 연면적
④-2		4.75㎡	금회 공관 추가 설치 연면적

구분		계산값	비고
⑤-1	표준건축비	1,859,000원	국토교통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적용
⑤-2		2,031,300원	국토교통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적용(부가가치세제외)
⑥-1	기준지가	17,062,000원	⑦공시지가 X 2
⑥-2		27,940,000원	
⑦-1	공시지가	8,531,000원	대상부지 공시지가(2018년도)
⑦-2		13,970,000원	대상부지 공시지가(2023년도)
⑧-1	환산부지면적	4,632.29㎡	(④공공기여 연면적 X ⑤표준건축비) / ⑥공시지가2배
⑧-2		0.35㎡	
⑨ 지분면적		7,351.06㎡	④공공기여연면적 X ③건축물㎡당지분율
⑩ 기부채납면적		11,983.7㎡	⑧환산부지면적 + ⑨지분면적

※ ④⑤⑥⑦⑧-1 :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산구고시 제2021-32호) 완료 분 / ④⑤⑥⑦⑧-2 : 금회 공관 초과 분

■ 건축물(체육관) 기부채납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구분	계산값	비고
① 대지면적	46,510.8㎡	공동주택 면적
② 전체건축연면적	269,029.1㎡	주차장면적 포함
③ 건축물㎡당지분율	0.17288	①부지면적 / ②전체건축연면적
④ 공공기여연면적	3,002.6㎡	금회 체육관 설치 연면적
⑤ 공사비	3,879,900원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2년도 적용(부가가치세제외)
⑥ 기준지가	27,940,000원	⑦공시지가 X 2
⑦ 공시지가	13,970,000원	대상부지 공시지가(2023년도)
⑧ 환산부지면적	416.9㎡	(④공공기여 연면적 X ⑤공사비) / ⑥공시지가2배
⑨ 지분면적	519.1㎡	④공공기여연면적 X ③건축물㎡당지분율
⑩ 기부채납면적	936.0㎡	⑧환산부지면적 + ⑨지분면적

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설치계획(안)	비고
시설구상	•시책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내 공공청사(공관) 설치 •공공청사 설치계획 – 층수 : 공공청사(공관)으로 배치된 공간 – 공급면적 : 27,182.02㎡(전체 연면적 41,829.99㎡) (공공기여량 34%이상)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 조정될 수 있음 – 세대수 : 150세대 ※ 공공청사(공관)로 배치된 공간(층), 규모 등은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된 사항으로 변경 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함 ※ 공공청사(토지 및 건축물)는 국토교통부(관리청)로 귀속됨 ※ 공공청사(공관)의 세부적인 건축시설 및 성능 기준 등은 향후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 변경

구분	설치계획(안)	비고
시설구상	•시책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내 공공청사(공관) 설치 •공공청사(공관) 설치계획 – 층수 : 공공청사(공관)로 배치된 공간 – 공급면적 : 28,488.62㎡(전체 연면적 42,520.2㎡) – 기부채납 면적 : 11,983.7㎡ (공공기여량 23.07%)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 조정될 수 있음 – 세대수 : 150세대 ※ 공공청사(공관)로 배치된 공간(층), 규모 등은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된 사항으로 변경 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함 ※ 공공청사(토지 및 건축물)는 국토교통부(관리청)로 귀속됨 ※ 공공청사(공관)의 세부적인 건축시설 및 성능 기준 등은 향후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체육관 설치계획 – 층수 : 지하1 ~ 지상1층 – 연면적 : 3,002.6㎡ – 관리·운영주체 : 용산구청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합의서 결정도서에 첨부) – 체육관 기부채납 면적 : 936.0㎡ (공공기여량 1.80%)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 한강로14길 : 3m, 한강로14가길 : 3m, 한강로14나길 : 3m, 이촌로51길 : 3m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을 활용한 전면공지(인도부속형) – 철도변에 위치한 전면공지는 보행·녹지축과 연계한 조경 공간으로 활용	–
대지내	보차	• 2001년 특별계획구역 지침상 도로체계 유지를 위한 남-북 연결동선 확보	–

구분		계획 내용	비고
통로	혼용통로	(보차혼용통로 : 12m) -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통행(보행, 차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지장물(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음 -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용산구청장)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계획		• 공동주택 주동의 배치 및 형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 같이 유지 • 수변에서 조망되는 도시의 실루엣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한강변 첫번째 건축물과 이면부 건축물의 디자인 변화(색채 및 마감재 변화, 발코니 위치 등의 변화 등)를 주어서 계획 • 다채로운 입면이 되도록 층수를 고려하여 저층부(2~4층 내외)와 중층부를 구분하고 마감 및 디자인 변화 계획(예시: 저층부 석재마감 / 중층부 페인트, 발코니 위치의 저, 중층부 패턴 변화 등) •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 및 색채 계획(서울시 경관별 색채가이드라인과 서울 상징색에서 제안한 수변경관 색상을 이용하여 계획) •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한 동-서측 방향 및 철도변으로 보행·녹지축 조성 ※ 향후 타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배치계획 등 수정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할 것(필요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구로 인한 보행동선 단절 최소화 • 주변 학교 및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과속방지시설 설치	-

- 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 한강로14길 : 3m, 한강로14가길 : 3m, 한강로14나길 : 3m, 이촌로51길 : 3m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을 활용한 전면공지(인도부속형) - 철도변에 위치한 전면공지는 보행·녹지축과 연계한 조경 공간으로 활용	-
대지내 통로	보차 혼용통로	• 2001년 특별계획구역 지침상 도로체계 유지를 위한 남-북 연결동선 확보 (보차혼용통로 : 12m) -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통행(보행, 차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지장물(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음 -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용산구청장)	-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계획		• 공동주택 주동의 배치 및 형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 같이 유지 • 수변에서 조망되는 도시의 실루엣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한강변 첫번째 건축물과 이면부 건축물의 디자인 변화(색채 및 마감재 변화, 발코니 위치 등의 변화 등)를 주어서 계획 • 다채로운 입면이 되도록 층수를 고려하여 저층부(2~4층 내외)와 중층부를 구분하고 마감 및 디자인 변화 계획(예시: 저층부 석재마감 / 중층부 페인트, 발코니 위치의 저, 중층부 패턴 변화 등) •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 및 색채 계획(서울시 경관별 색채가이드라인과 서울 상징색에서 제안한 수변경관 색상을 이용하여 계획) •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한 동-서측 방향 및 철도변으로 보행·녹지축 조성 • 남북간 보차혼용통로를 중심으로 폭 20m의 통경축 확보 ※ 향후 타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배치계획 등 수정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할 것(필요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구로 인한 보행동선 단절 최소화 • 주변 학교 및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과속방지시설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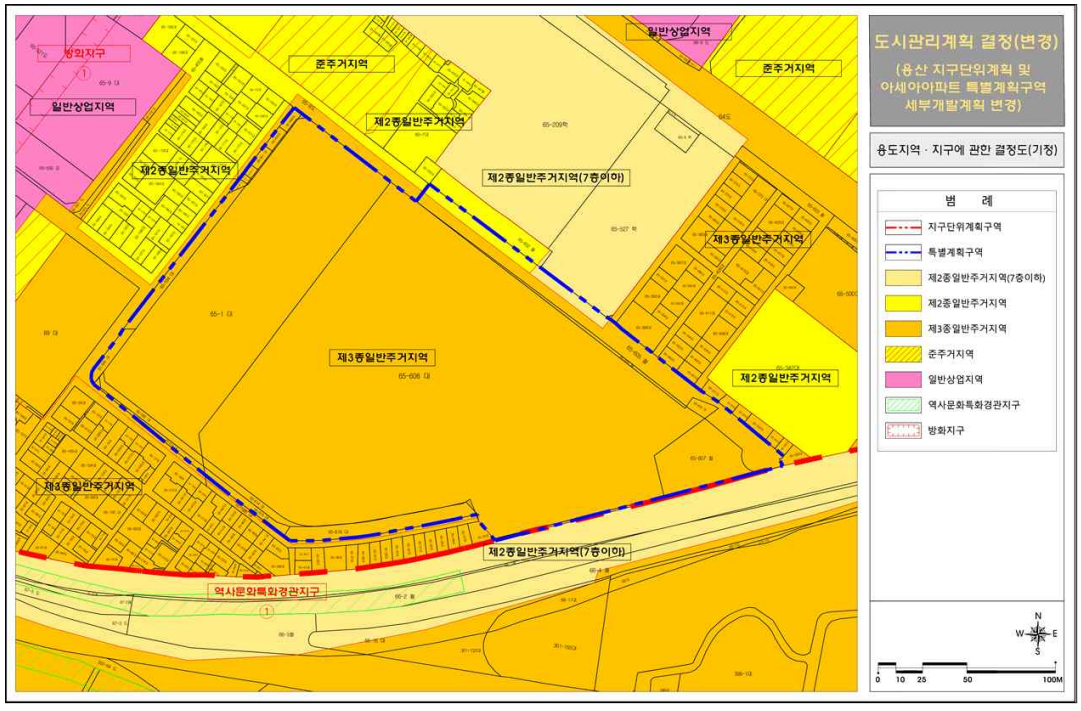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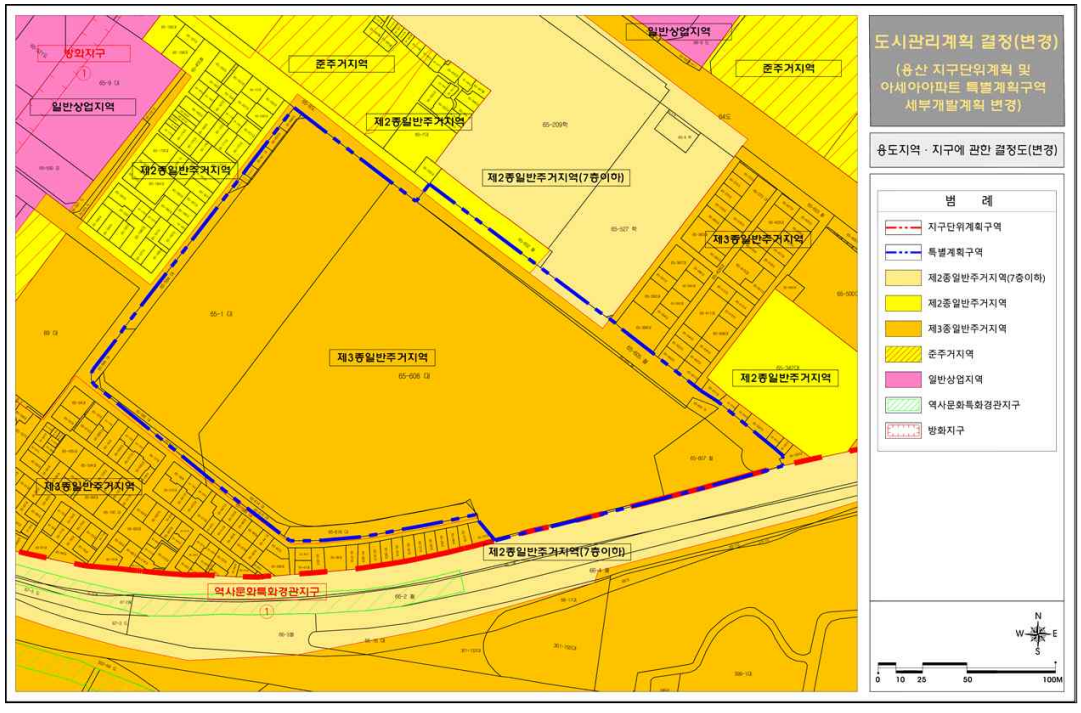
Ⅴ. 관계도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0) 및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1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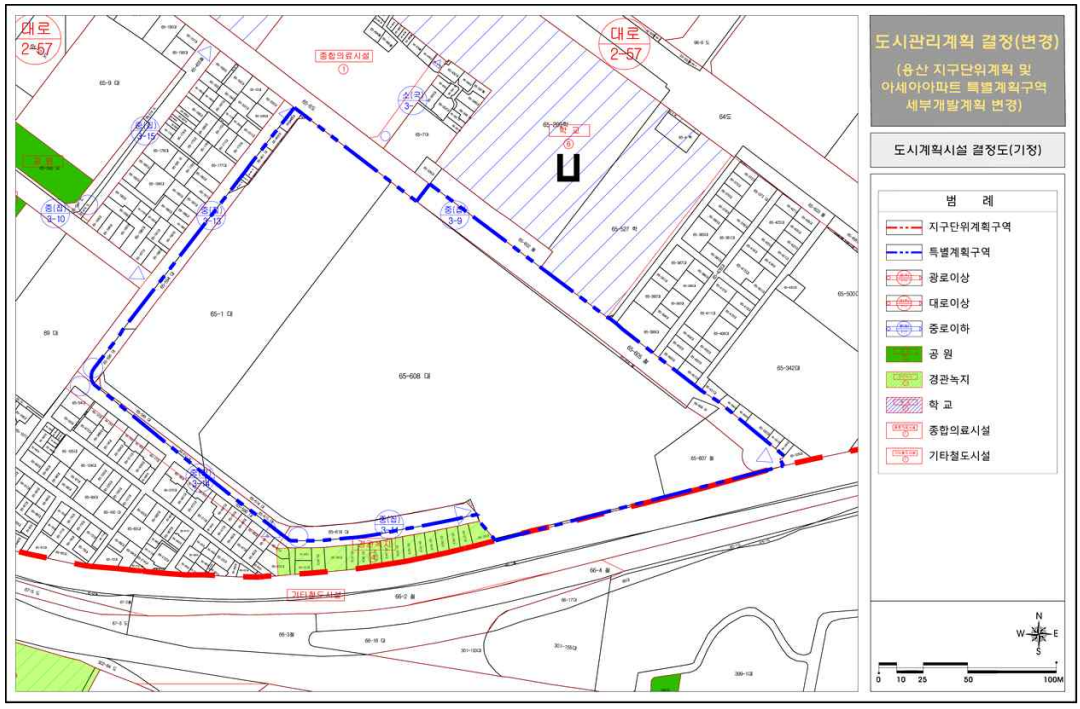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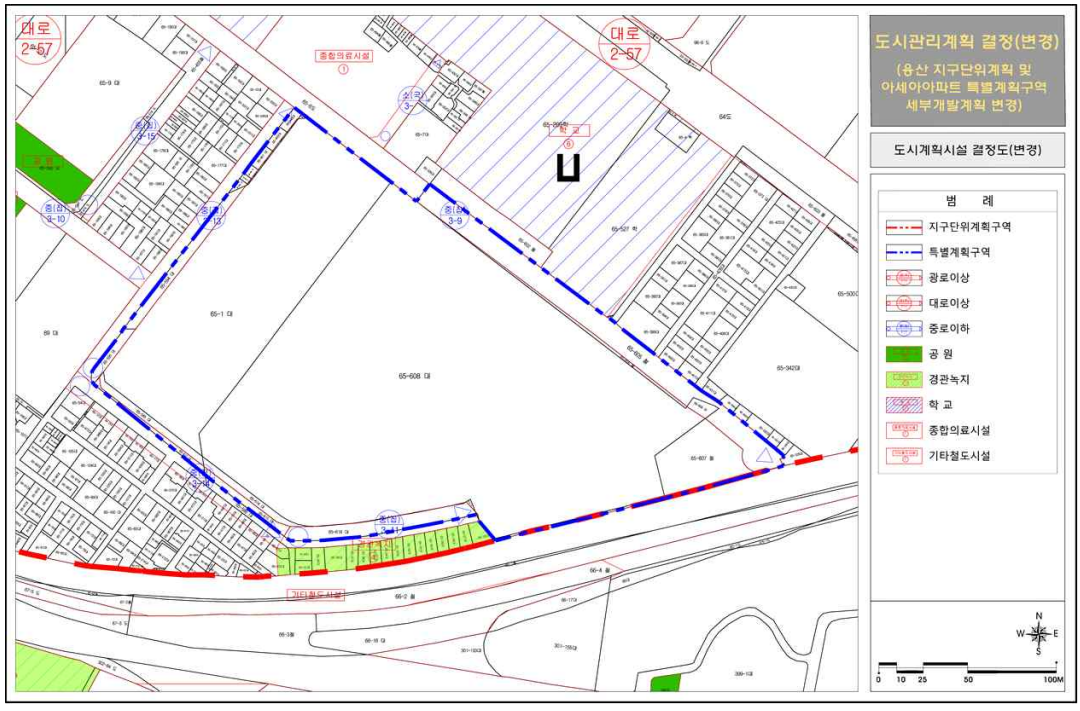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기정)도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5호

망원동 45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망원동 45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77,449.33㎡	전체 : 245동 노후·불량 : 176동(71.84%)	

   다.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망원동 45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	증)77,449.33	77,449.33	

■ 관리지역의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관리지역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망원동 45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77,449.33㎡	노후 · 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77,449.33	100.00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50,031.85	64.60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394.90	6.97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427.00	9.59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515.60	11.00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9,886.70	12.77	
		A-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171.40	6.68	
		A-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9,110.30	11.76	
		A-7	사업추진구역7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3,738.15	4.83	
		A-8	사업추진구역8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87.80	1.02	
	정비기반시설	-	도로	108.15	0.14	7구역
시행구역 외		B	주택용지 등	12,075.93	15.59	
		도로	도로	15,233.40	19.67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기결정 도로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92	20	집산 도로	750 (68)	망원동 458	망원동 망원유수지	일반	서고 제250호 (1978.5.29)	희우정로
신설	중로	1	가	20	집산 도로	102	망원동 419-16	망원동 419-3	일반	-	망원로
신설	중로	1	나	20	집산 도로	149	망원동 453-7	망원동 453-44	일반	-	망원로
신설	소로	2	다	8	국지 도로	501	망원동 454-7	망원동 457-28	일반	-	
신설	소로	2	라	8	국지 도로	45	망원동 460-10	망원동 460-8	일반	-	
신설	소로	2	마	8	국지 도로	50	망원동 459-8	망원동 459-4	일반	-	
신설	소로	2	바	8	국지 도로	76	망원동 455-1	망원동 455-69	일반	-	
신설	소로	3	사	6	국지 도로	45	망원동 461-2	망원동 461-1	일반	-	
신설	소로	3	아	6	국지 도로	81	망원동 456-1	망원동 456-49	일반	-	
신설	소로	3	자	6	국지 도로	44	망원동 460-5	망원동 460-1	일반	-	

※ ( )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중로 1-가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중로 1-나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 2-다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 2-라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 2-마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연장 및 확폭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소로 2-바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 3-사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 3-아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 3-자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분	설치기준	비고
사업추진구역1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내
사업추진구역2		
사업추진구역3		
사업추진구역4		
사업추진구역5		
사업추진구역6		
사업추진구역7		
사업추진구역8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망원로, 희우정로, 동교로1길, 동교로3길, 월드컵로25길	• 망원로, 희우정로변으로 차량 진출입 불허 • 가각부 진출입 제한을 위해 동교로1길, 동교로3길, 월드컵로25길 일부 불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 업 계 획					비 고
			계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50,031.85㎡	-	939	-	-	-	-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 업 계 획					비 고
			계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19 일대	5,394.90㎡	-	129	-	-	-	-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3-44 일대	7,427.00㎡	-	90	-	-	-	-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4-3 일대	8,515.60㎡	-	185	지정 개발자	-	-	-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5 일대	9,886.70㎡	-	174	-	-	-	-
A-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61 일대	5,171.40㎡	-	124	-	-	-	-
A-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6 일대	9,110.30㎡	-	150	지정 개발자	-	-	-
A-7	사업추진구역7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9 일대	3,738.15㎡	-	64	지정 개발자	-	-	-
A-8	사업추진구역8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60-1 일대	787.80㎡	-	23	조합	-	-	-

※ ( )는 모아타운 전체 면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계		-	32,548.70	-	-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19 일대	5,394.90	대지의 조경(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4조), 지하층의 설치(53조), 건폐율(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대지의 조경(42조), 건폐율(55조), 용적률(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3-44 일대	7,427.00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5번지 일대	8,515.60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5번지 일대	9,886.70		
A-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61번지 일대	5,171.40		
A-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5번지 일대	9,110.3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적용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용지 A-1, 2, 3, 4, 5 ,6 ,7 (제2종 일반), A-8(제2종 일반(7층이하))
	용적률[1]	기준(상향) 200% 이하2) 법적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기준 적용	
사업시행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B-1 ,2 ,3 ,4 ,5 ,6 (제2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기준 적용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기준용적률 상향' 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추진구역 1, 3~8	유 형	• 공동주택 용지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업추진구역 2	유 형	• 공동주택 용지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6호의 종교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

구 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사업구역 1~7구역	• 건축한계선 3m 적용 • 동교로1길, 동교로3길, 희우정로 13길변 2m 적용	• 가로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벽면한계선	망원로, 희우정로15길	• 주거동 고층부 벽면한계선 - 11층 이하 : 5m - 11층 이상 : 8m	• 한강변 경관형성기준 적용
저층부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망원로, 희우정로, 희우정로21길	• 망원로, 희우정로, 희우정로21길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 기존 근린생활가로 기능 유지 위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512	298	-	-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19 일대	179	36	-	-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3-44 일대	204	41	-	-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4-3 일대	259	52	-	-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5 일대	290	59	-	-
A-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61 일대	171	35	-	-
A-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6 일대	267	54	-	-
A-7	사업추진구역7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59 일대	117	21	-	-
A-8	사업추진구역8 (가로주택정비사업)	망원동 460-1 일대	25	-	-	-

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차.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7,449.33	-	77,449.33	100.00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66,207.46	감)53,428.97	12,778.49	16.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41.87	증)53,428.97	64,670.84	83.5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49,244.05	49,244.05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관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지역 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	
A-1	-	증) 5,394.90	5,394.90			
A-2	-	증) 7,427.00	7,427.00			
A-3	-	증) 8,515.60	8,515.60			
A-4	-	증) 9,886.70	9,886.70			
A-5	-	증) 5,171.40	5,171.40			
A-6	-	증) 9,110.30	9,110.30			
A-7	-	증) 3,738.15	3,738.15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하며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건축법	대지의 조경(42조), 건축물의 건폐율(55조), 건축물의 용적률(56조), 대지 안의 공지(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61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10조), 기준척도(13조), 비상급수시설(35조), 난방설비 등(37조), 근린생활시설 등(50조), 유치원(52조)

※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등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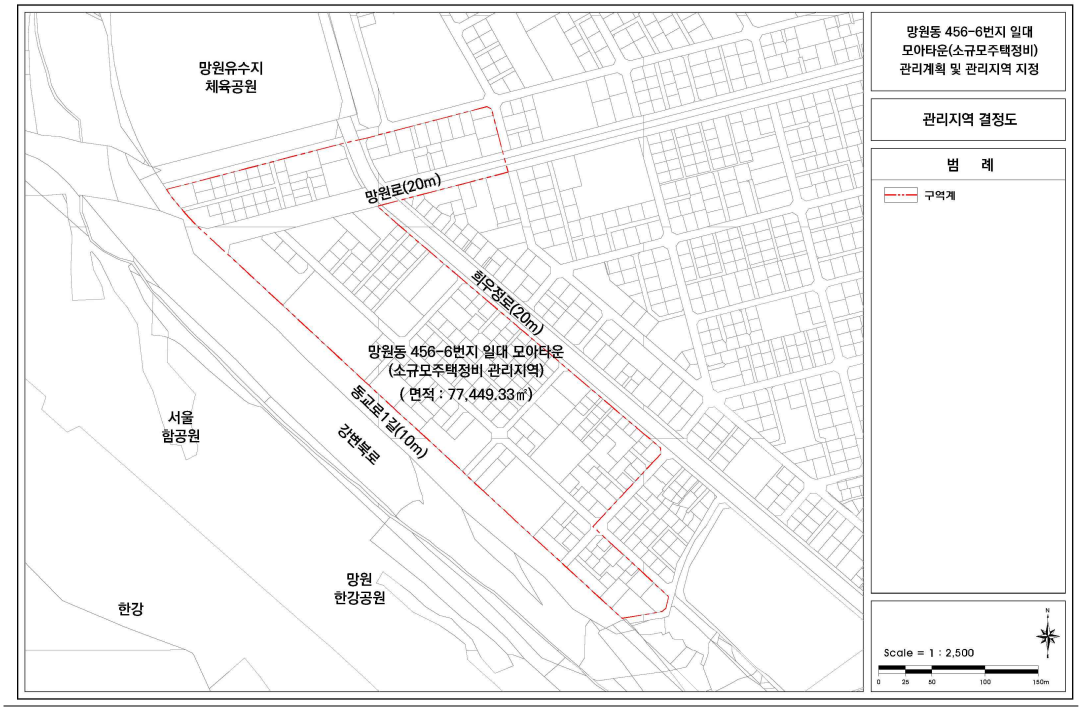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28) 및 마포구 상생주택과(☎02-3153-932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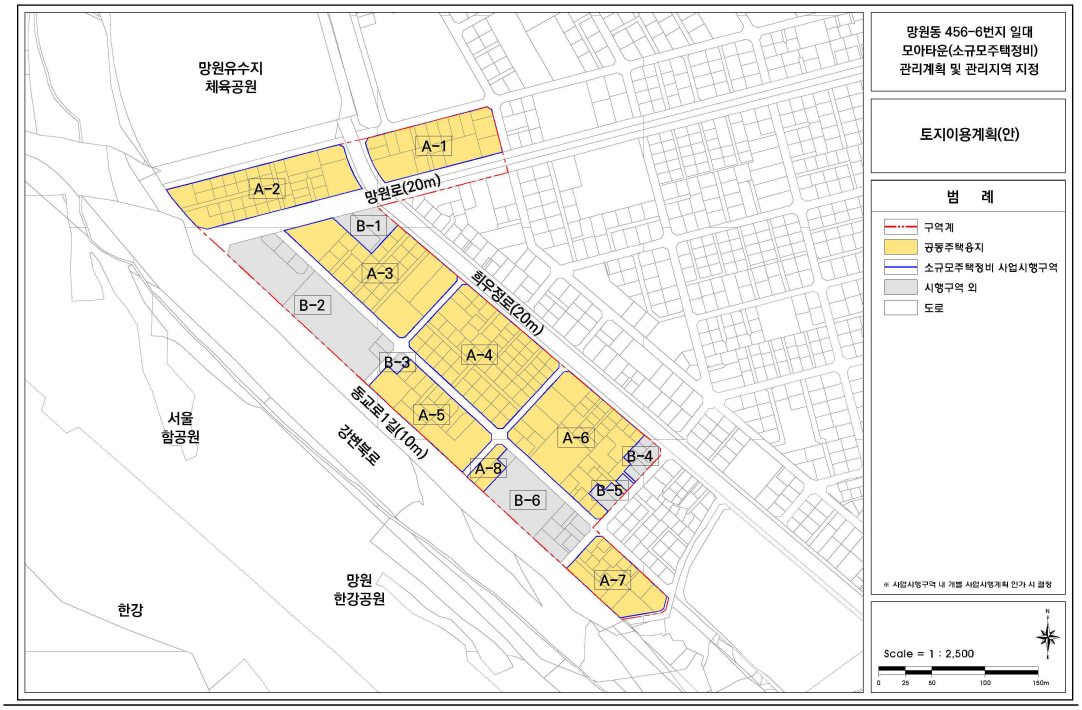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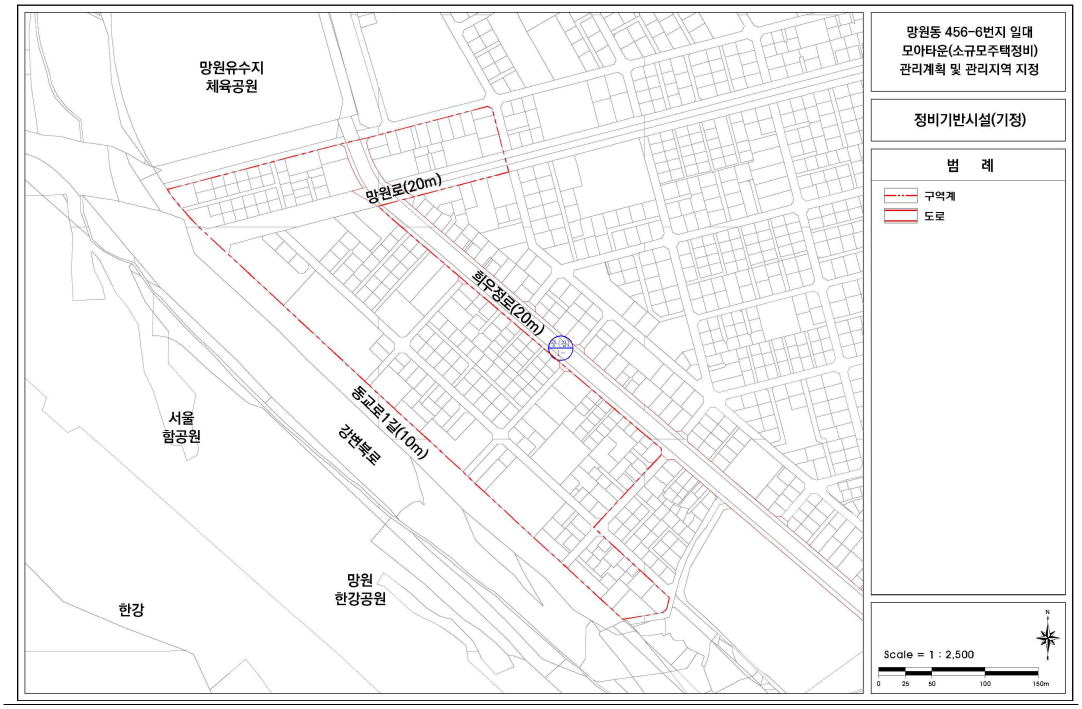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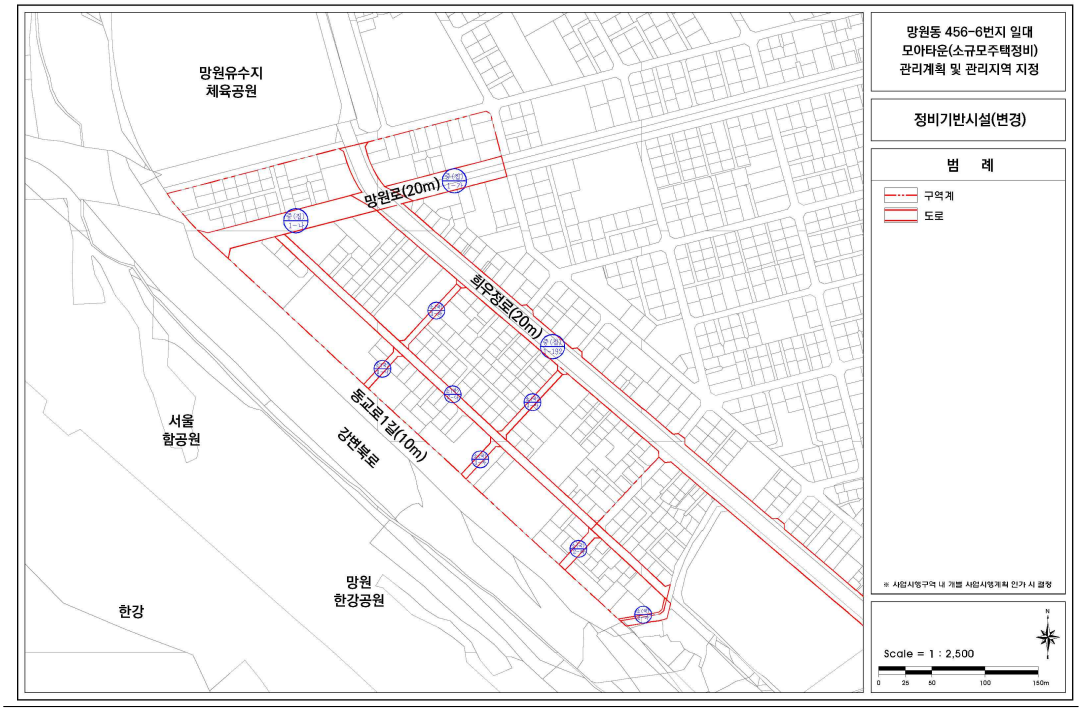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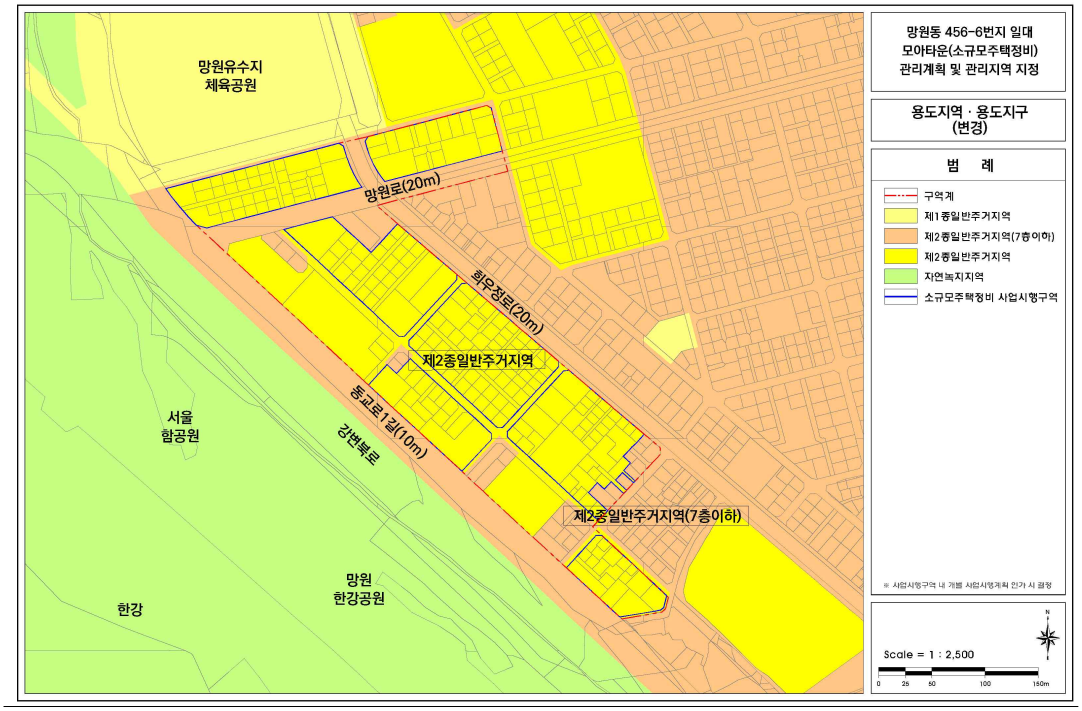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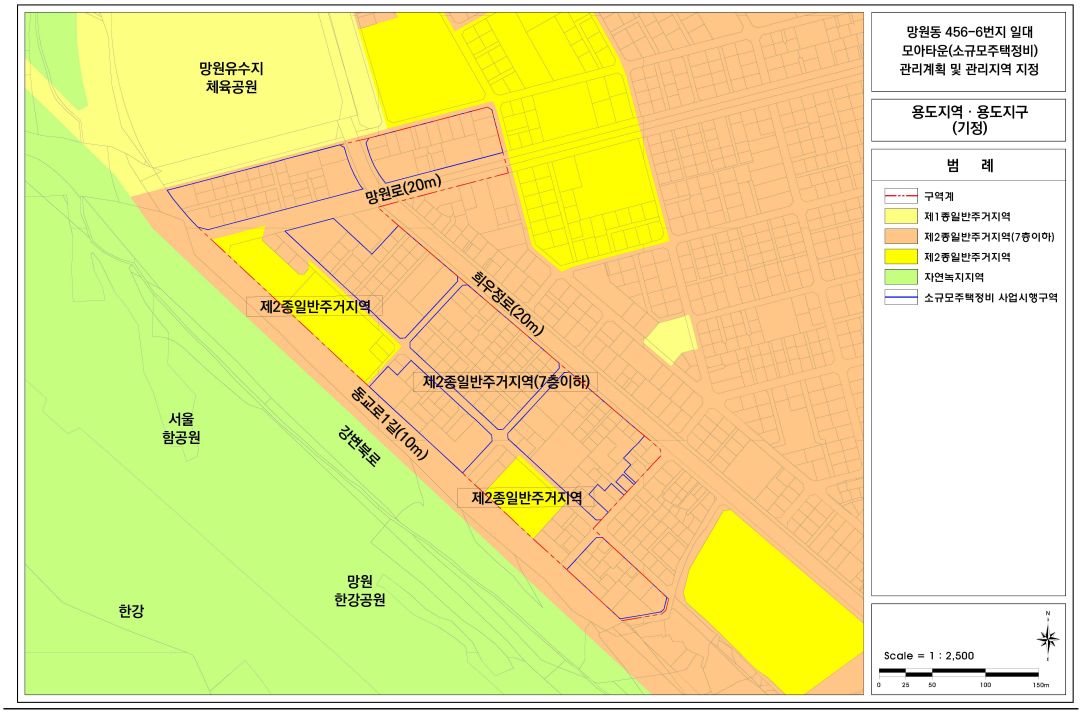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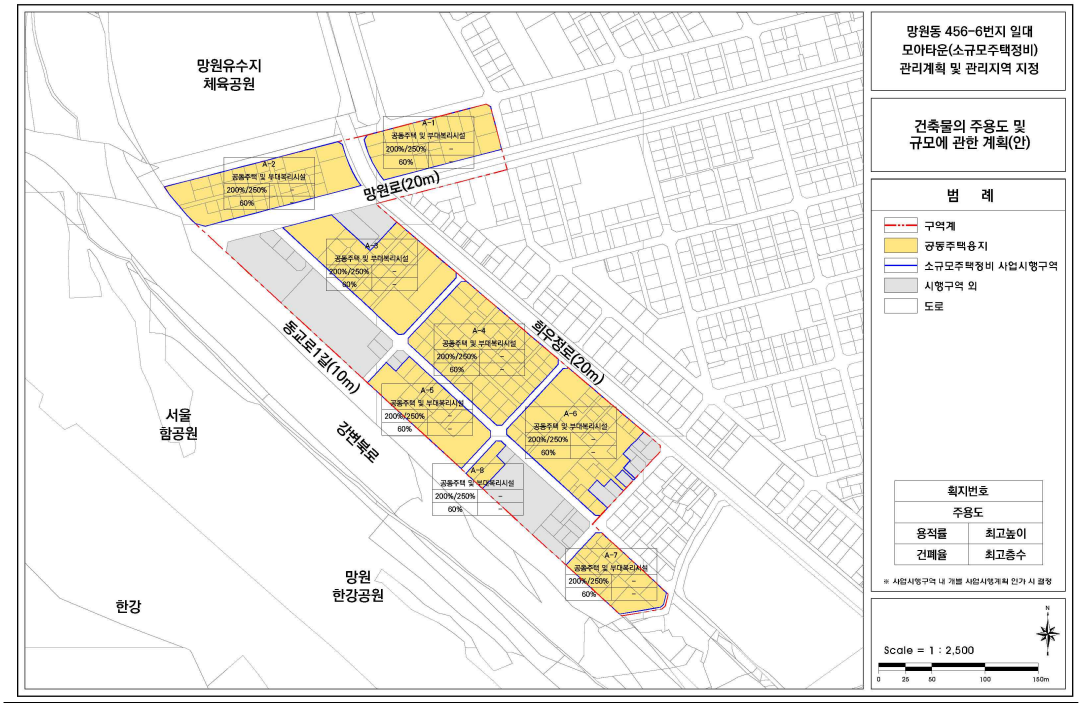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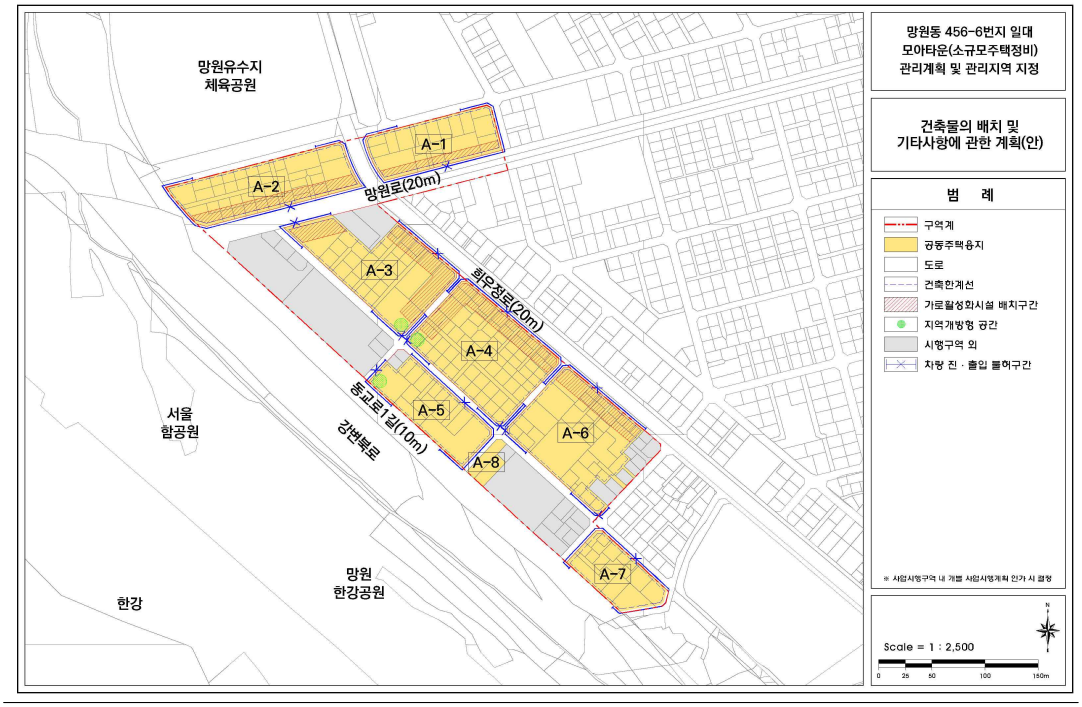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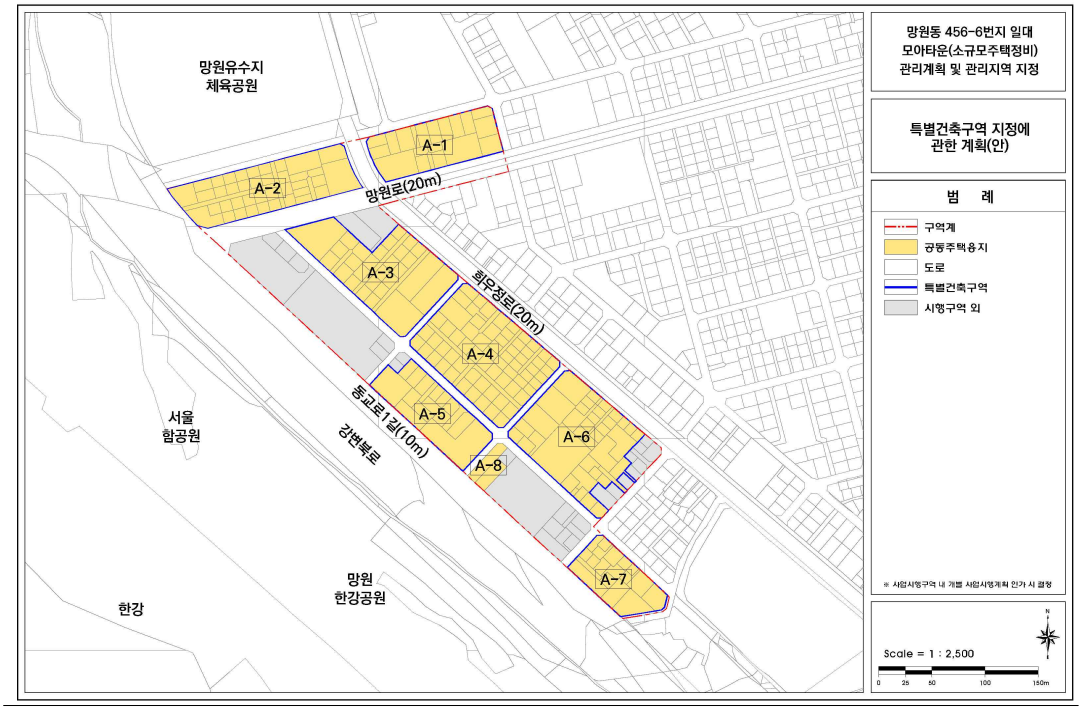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7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2017.07.13.)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9-76호(2019.5.16.), 강남구고시 제2021-118호(2021.7.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Ⅱ.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20,876.0	-	20,876.0	

3. 정비계획 수립(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876.0	-	20,876.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76.0	-	20,876.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876.0	-	20,876.0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376.6	-	2,376.6	11.4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2,376.6㎡ (순부담 11.4%)
	도 로	1,359.9	-	1,359.9	6.5	
	녹 지	1,016.7	-	1,016.7	4.9	
획 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499.4	-	18,499.4	88.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확보
기정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 1-72	대로 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 확폭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5-1 일대	1,016.7	-	1,016.7	-	일원로변, 폭 12m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계		2,968.26	증)1,319.52	4,287.78	
	경로당	획지1 (공동주택용지)	202.98	증)1.62	204.60	
	관리사무소		160.17	증)195.85	356.02	
	어린이놀이터		704.0	증)64.43	768.43	
	주민운동시설		248.0	감)158.0	90.0	
	어린이집		240.27	증)0.27	240.54	
	작은도서관		286.1	증)125.38	411.48	
	주민공동시설		1,126.74	증)1,089.97	2,216.71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0,876.0	일원동 615-1 일대	5	-	-	5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일원개포한신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876.0	획지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 이하	299.78 이하	105m이하/ 최고35층
변경	일원개포한신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876.0	획지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 이하	299.99 이하	115m이하/ 최고3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전용 60㎡이하	171 (재건축소형주택 66)	감) 43	128 (재건축소형주택 66)	26.7%
전용 60초과 ~85㎡이하	228	감) 10	218	45.4%
전용 85㎡초과	99	증) 35	134	27.9%
합계	498	감) 18	480	100%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50% 이상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변경)

기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총 5% 완화
- 에너지효율등급 1+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6%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법적상한용적률 (299.78%)

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총 5% 완화
- 에너지효율등급 1+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6%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법적상한용적률 (299.9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준용)
- 개원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 획</td><td>구역면적</td><td>획지
(공동주택)</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td><td>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20,876.0㎡</td><td>18,499.4㎡</td><td>2,376.6㎡</td><td>-</td><td>-</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376.6㎡ - 0㎡ - 0㎡ = 2,376.6㎡</td></tr>
<tr><td>계획용적률</td><td colspan="5">•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계획(기준)용적률 : 210.0%이하</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10% + 5% = 215%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총 5% 완화
- 에너지효율 1+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6%
※ 2020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2020.7.28.)에서 결정된 사항임</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상한용적률(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215% × (1 + 1.3 × 0.12847) = 250.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376.6㎡ / (20,876.0㎡-2,376.6㎡) = 0.12847
• 정비계획용적률 : 250%
• 법적상한용적률
- 기정 : 299.78%
- 변경 : 299.99%</td></tr>
</table>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인공적인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이용객 편익 및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사업대상지 경계부의 녹지대는 외부에서의 시각적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된 수림대 형성 • 시각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조경 및 구조물 선정은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경험을 다양화
환경보전	• 토양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대한 틈새투수포장 활용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2007. 12,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제시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율 기준인 30%(공동주택기준) 이상 확보하되, 개포택지(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생태면적률40%, 자연지반율 10% 확보 •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톱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 주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공사시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재난방지	• 사업대상지내 전면공지 등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 방지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 시행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364 • 계획세대수 : 498 증)134세대	이상없음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364 • 계획세대수 : 480 증)116세대	이상없음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499.4	-	18,499.4	도로, 녹지 제외
획 지	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18,499.4	공동주택용지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3">•250%</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3">•299.99%</td></tr>
<tr><td colspan="2">용적률 차이의 50%</td><td colspan="3">•(299.99% - 250%) X 50% = 24.995%</td></tr>
<tr><td>소형주택
공급기준</td><td colspan="5">•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X 24.995%
= 18,499.4㎡ X 24.995% = 4,623.925㎡ 이상</td></tr>
<tr><td rowspan="5">소형주택
건설계획</td><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건립위치</td><td rowspan="2">세대수</td><td colspan="2">주택규모</td><td rowspan="2">연면적</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rowspan="2">기정</td><td rowspan="2">획지</td><td>64세대</td><td>44.11㎡</td><td>69.8451</td><td rowspan="2">•계획 = 69.8451㎡ X 64세대
+ 87.5958㎡ X 2세대
= 4,645.278㎡ 〉 4,604.5㎡</td></tr>
<tr><td>2세대</td><td>59.97㎡</td><td>87.5958</td></tr>
<tr><td rowspan="2">변경</td><td rowspan="2">획지</td><td>46세대</td><td>44.11㎡</td><td>64.7915</td><td rowspan="2">•계획 = 64.7915㎡ X 46세대
+ 82.8161㎡ X 20세대
= 4,636.731㎡ 〉 4,623.925㎡</td></tr>
<tr><td>20세대</td><td>59.97㎡</td><td>82.8161</td></tr>
</table>

※ 주택의 규모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 정	특별계획구역 14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20,876.0	-	20,876.0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876.0	-	20,876.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76.0	-	20,876.0	10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확보
기정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 1-72	대로 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 확폭

②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5-1 일대	1,016.7	-	1,016.7	-	일원로변, 폭 12m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499.4	도로, 녹지 제외
공동주택용지	소계	18,499.4	
	획지1	18,499.4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①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용도 외 불허	
	허용용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좌동	

②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 변경

▌건폐율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50% 이하	50%이하	

▌용적률 : 변경

구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정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210% / 230% / 250%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허용용적률 : 215%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299.78% 이하	
변경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210% / 230% / 250%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허용용적률 : 215%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이하	

▌용적률

구분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상한용적률	35%	49.78%	합계 : 84.78%
변경	상한용적률	35%	49.99%	합계 : 84.99%

③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구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정	최고높이	35층이하	35층이하 105m 이하	
변경	최고높이	35층이하	35층이하 115m 이하	

④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개원길변 : 6m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개원길변 : 건축지정선 3m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보행동선	대청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개원길에서 북측으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확보	
자전거도로	개원길, 일원로변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폭1.5m이상)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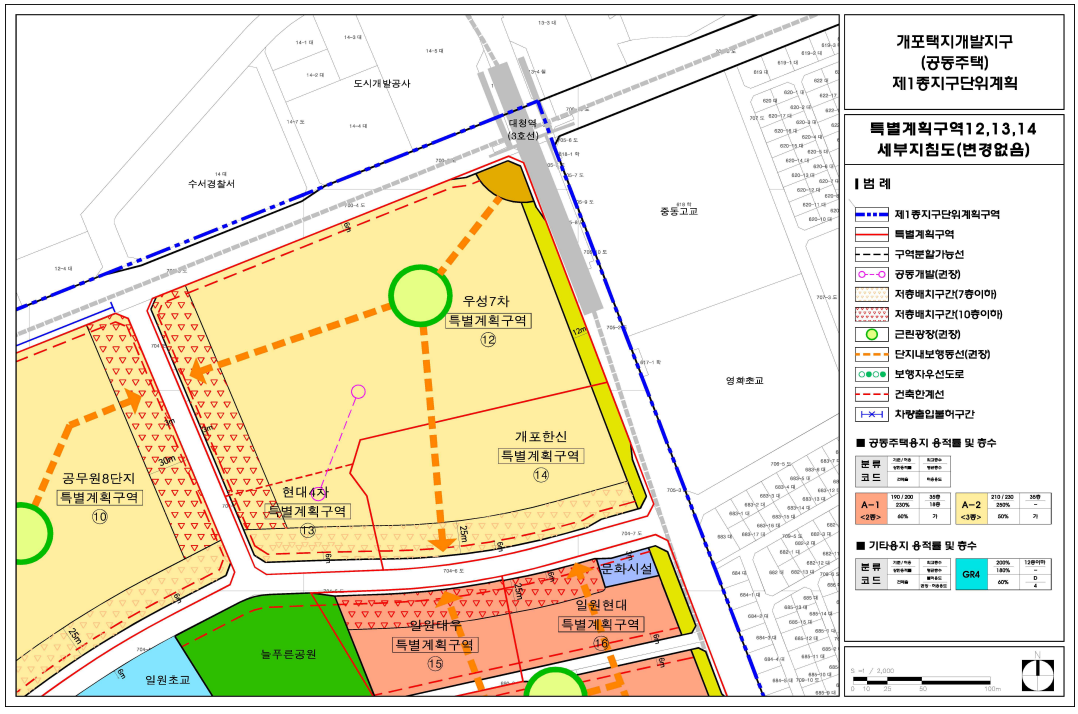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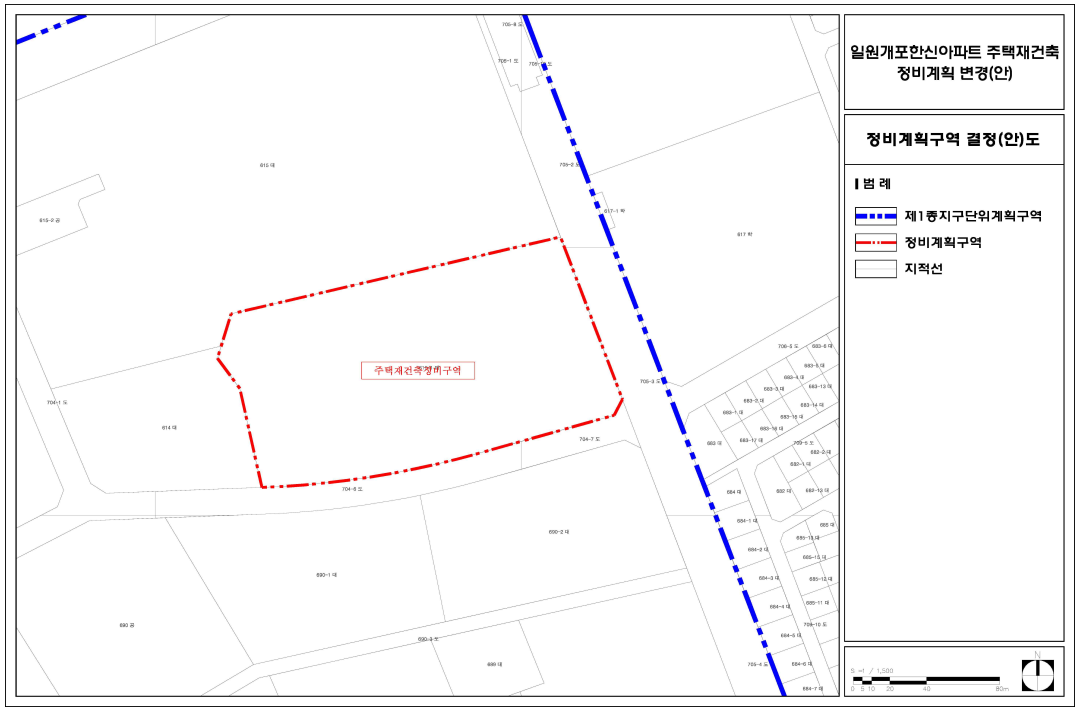
Ⅴ.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공동주택지원과 (☎ 02-2133-7142) 및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7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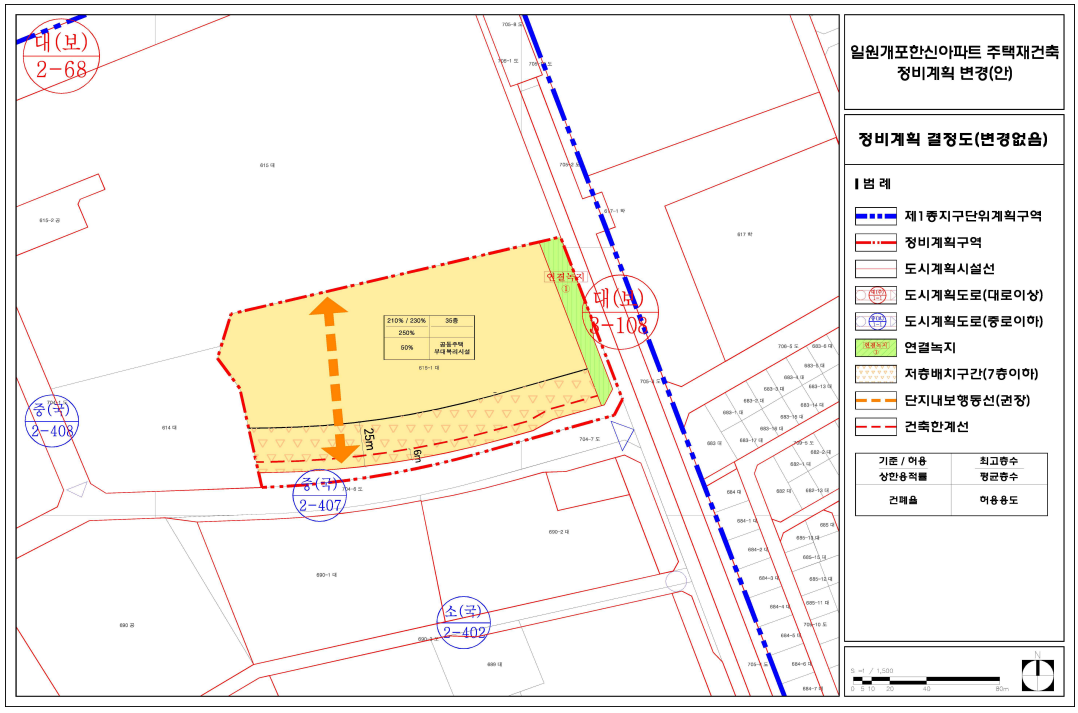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 정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55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점용허가 신청 사항

신청자		점용 장소	점용 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명칭	주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서울시 강서구 일원동 580	24.5	"난분해성 물질 특성을 고려한 오존마이크로버블 기반의 가변형 세라믹 막여과 복합공정 개발" 테스트베드 설치 운영	'24. 1. 1. ~ '25. 12. 31.
동문이엔티(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80	6	실증프로그램 사업(미생물 건전성 판단시스템 구축) 측정데이터 제어룸 설치·운영	'24. 4. 1. ~ '24. 6. 30.

2.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3.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 전까지 복구완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02-2133-38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8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5560815	관악구 인헌1나길 25, 101호 (봉천동)	상하수도요금	22.08 ~ 24.02	9	694,82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봉천동 1650-27 101호	김○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56번길 43, 402호(우만동, 화이트빌)	694,820	24.4.1.
		박○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56번길 43, 402호(우만동, 화이트빌)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혜리(☎02-3146-44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9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27250291	강서구 화곡동 105-438 대호골든 103호	상하수도 요금	22.05~23.11	10회	505,63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건물	강서구 화곡동 105-438 대호골든 103호	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67-1, 2층(마천동)	505,630원	2024년 4월 2일

4.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9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27273579	강서구 화곡동 55-45 홈랜드15차 (지하)B02호	상하수도 요금	21.09~24.01	15회	759,16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건물	강서구 화곡동 55-45 홈랜드15차 (지하)B02호	이□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0-24, 3동 1329호	759,160원	2024년 4월 2일

4.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38418189	강서구 화곡동 458-23 더스타일 201호	상하수도 요금	21.02~23.12	17회	874,09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건물	강서구 화곡동 458-23 더스타일 201호	민□자	강서구 화곡동 458-23 더스타일 201호	874,090원	2024년 3월 29일

4.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9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32529958	강서구 화곡동 56-640 성진 B동 302호	상하수도 요금	22.11~24.01	8회	934,89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건물	강서구 화곡동 56-640 성진 B동 302호	□혁	강서구 화곡동 56-640 성진 B동 302호	934,890원	2024년 3월 29일

4.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0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5. 2.~2024. 5. 16.(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지산퍼스트 종합건설(주) 한경진, 박근석	건축공사업 01-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2 (능동)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요구 (지방세 체납)	지방세 징수법 제7조 제2항	영업정지 5개월 (2024.6.1.~2024.10.31)	법 제83조 제11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0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5.(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yka1303@seoul.go.kr
 팩스: 02-2133-1076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4. 5. 15. ~ 2024. 5. 29.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3년 11,12월 및 2024년 1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3046870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02 10:46
2	1078833046872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03 11:27
3	1078833046916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06 10:37
4	1078833046918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06 10:55
5	1078833046922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06 14:17
6	1078833046924	기타	2024-04-09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127	열차	2023-11-07 11:17
7	1078833046926	기타	2024-04-09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127	열차	2023-11-07 12:11
8	1078833046929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07 13:45
9	1078833046931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08 10:40
10	1078833046932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08 10:50
11	1078833046933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08 11:30
12	1078833046928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07 13:42
13	1078833046935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08 12:51
14	1078833046939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11 10:21
15	1078833046940	폐문부재	2024-04-11 09:0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11-11 10:36
16	1078833046941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11 10:46
17	1078833046943	수취인불명	2024-04-04 09:58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2	대합실(고속터미널7역)	2023-11-11 13:08
18	1078833046944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12 11:19
19	1078833046945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13 10:31
20	1078833046947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13 13:56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21	1078833046950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14 10:58
22	1078833046953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14 11:26
23	1078833046957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14 13:14
24	1078833046958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14 13:21
25	1078833046959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14 13:37
26	1078833046960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14 14:00
27	1078833046961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14 14:40
28	1078833046963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15 11:13
29	1078833046968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16 10:52
30	1078833046970	기타	2024-04-11 09:30	6501**-*******	박*일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64길	열차	2023-11-16 12:00
31	1078833046971	기타	2024-04-11 09:50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열차	2023-11-16 13:28
32	1078833046973	기타	2024-04-11 09:50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열차	2023-11-16 14:49
33	1078833046974	기타	2024-04-11 13:00	5503**-*******	김*엽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191-11	열차	2023-11-17 07:10
34	1078833046975	이사불명	2024-04-04 10:00	6210**-*******	김*주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2길	대합실(영등포구청2호선)	2023-11-17 09:28
35	1078833046977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17 13:38
36	1078833046980	기타	2024-04-09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127	열차	2023-11-18 12:23
37	1078833046981	폐문부재	2024-04-11 09:0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11-19 11:20
38	1078833046982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20 14:16
39	1078833046983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21 11:21
40	1078833046985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22 11:36
41	1078833046987	주소불명	2024-04-03 10:40	7404**-*******	오*석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3길 22	대합실(고속터미널7역)	2023-11-22 13:2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42	1078833046991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23 10:57
43	1078833046994	이사불명	2024-04-04 14:3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11-24 13:34
44	1078833046996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1-25 11:13
45	1078833046999	이사불명	2024-04-04 14:3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11-27 10:34
46	1078833047000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1-27 13:43
47	1078833047002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1-29 13:47
48	1078833047003	기타	2024-04-11 10:00	6310**-*******	최*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44번길	열차	2023-11-29 14:14
49	1078833046908	폐문부재	2024-04-11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4-01-06 10:18
50	1078833046898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02 13:43
51	1078833046902	기타	2024-04-11 09:14	5902**-*******	권*철	서울시 종로구 종로356-5	열차	2024-01-03 14:10
52	1078833046909	주소불명	2024-04-04 10:00	6602**-*******	조*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42	열차	2024-01-06 19:39
53	1078833046910	수취인불명	2024-04-04 09:00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33길	열차	2024-01-07 12:02
54	1078833046912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08 13:13
55	1078833046913	기타	2024-04-11 09:50	6610**-*******	김*기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4-01-08 13:20
56	1078833047079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09 14:30
57	1078833047075	기타	2024-04-09 18:0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4-01-09 11:01
58	1078833047077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09 11:35
59	1078833047078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09 14:30
60	1078833047080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09 14:30
61	1078833047081	기타	2024-04-11 09:50	6610**-*******	김*기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4-01-09 14:51
62	1078833047084	주소불명	2024-04-04 09:10	6810**-*******	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열차	2024-01-10 11:0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63	1078833047089	기타	2024-04-11 13: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4-01-11 13:42
64	1078833047090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11 14:15
65	1078833047091	수취인불명	2024-04-04 10:14	6105**-*******	배*오	서울시 종로구 종로377-3(숭인동)	열차	2024-01-11 14:38
66	1078833047093	기타	2024-04-11 13: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4-01-12 12:16
67	1078833047094	기타	2024-04-11 13: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4-01-12 12:33
68	1078833047096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12 13:25
69	1078833047100	주소불명	2024-04-04 15:02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열차	2024-01-13 11:00
70	1078833047102	기타	2024-04-11 09:50	8908**-*******	조*성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9길 59	대합실	2024-01-13 13:38
71	1078833047103	주소불명	2024-04-04 15:02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열차	2024-01-14 10:55
72	1078833047104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14 11:40
73	1078833047105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14 12:33
74	1078833047106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15 14:02
75	1078833047107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16 10:30
76	1078833047108	기타	2024-04-11 09:30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36-5(도림동)	열차	2024-01-16 10:36
77	1078833047110	수취인불명	2024-04-04 12:35	5911**-*******	김*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54번길 7	대합실	2024-01-16 12:51
78	1078833047111	폐문부재	2024-04-11 09:00	6211**-*******	김*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29	대합실	2024-01-16 12:51
79	1078833047112	주소불명	2024-04-04 15:02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열차	2024-01-16 13:13
80	1078833047116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17 13:35
81	1078833047120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18 14:25
82	1078833047121	기타	2024-04-11 13: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10가길	열차	2024-01-18 17:56
83	1078833047124	폐문부재	2024-04-11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4-01-20 10:59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84	1078833047125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21 11:20
85	1078833047126	이사불명	2024-04-04 14:3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4-01-22 13:27
86	1078833047131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23 10:56
87	1078833047128	기타	2024-04-11 13: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10가길	열차	2024-01-22 16:40
88	1078833047129	기타	2024-04-11 09:50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8길	열차	2024-01-23 10:31
89	1078833047130	기타	2024-04-11 05:28	4711**-*******	서*석	인천 서구 율도로 15번길	열차	2024-01-23 10:43
90	1078833047133	주소불명	2024-04-04 15:02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열차	2024-01-24 10:51
91	1078833047135	이사불명	2024-04-04 14:3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4-01-24 12:20
92	1078833047136	폐문부재	2024-04-11 10:40	5108**-*******	배*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0-5	열차	2024-01-25 09:05
93	1078833047137	주소불명	2024-04-04 15:02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열차	2024-01-25 10:46
94	1078833047138	기타	2024-04-11 13: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4-01-25 11:53
95	1078833047140	주소불명	2024-04-04 15:02	4711**-*******	서*석	서울 중구 청구로	열차	2024-01-27 10:30
96	1078833047141	폐문부재	2024-04-11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4-01-27 11:27
97	1078833047142	수취인불명	2024-04-04 09:58	7511**-*******	연*성	서울 성동구 한림말 3길 22	열차	2024-01-27 12:12
98	1078833047144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29 11:10
99	1078833047146	기타	2024-04-11 09:30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열차	2024-01-29 13:30
100	1078833047147	기타	2024-04-11 09:30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열차	2024-01-29 13:48
101	1078833047148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1-29 14:48
102	1078833047149	수취인불명	2024-04-04 10:14	6105**-*******	배*오	서울시 종로구 종로377-3(숭인동)	열차	2024-01-30 10:41
103	1078833047152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30 12:55
104	1078833047154	수취인불명	2024-04-04 10:14	6105**-*******	배*오	서울시 종로구 종로377-3(숭인동)	열차	2024-01-31 10:36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05	1078833047155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1-31 12:53
106	1078833047004	폐문부재	2024-04-11 08:10	6804**-*******	홍*식	경기도 군포시 공란로 26, 매화아파트	열차	2023-12-01 14:41
107	1078833047008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2-05 11:35
108	1078833047013	이사불명	2024-04-04 14:3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열차	2023-12-06 14:14
109	1078833047025	이사불명	2024-04-04 14:3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열차	2023-12-12 11:31
110	1078833047034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2-16 10:34
111	1078833047035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2-16 10:57
112	1078833047037	기타	2024-04-11 09:50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열차	2023-12-19 13:22
113	1078833047038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2-19 13:40
114	1078833047039	폐문부재	2024-04-11 12:16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2-20 11:30
115	1078833047041	기타	2024-04-11 09:50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열차	2023-12-21 14:29
116	1078833047043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2-22 13:57
117	1078833047045	기타	2024-04-11 13:00	4204**-*******	김*업	서울시 사근동	열차	2023-12-22 15:30
118	1078833047049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2-24 11:15
119	1078833047050	기타	2024-04-12 09:32	5507**-*******	강*수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232번길	대합실(고속터미널3)	2023-12-24 14:26
120	1078833047052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2-27 11:42
121	1078833047054	기타	2024-04-11 08: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3-12-28 13:26
122	1078833047055	폐문부재	2024-04-11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12-28 14:30
123	1078833047056	기타	2024-04-11 13: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3-12-29 14:35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09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 공고[루나하우스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 1항) 위반으로 같은법 9조 2항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해당 업소 영업주에 통보하여야 하나 현재 거주지 불명 및 영업주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5. 2.(목) ~ 2024. 5. 13.(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table>
<tr><td colspan="2">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4">현장활동중 소방시설 불량사항 발견에 따른 조치명령서</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4">곽정한(루나하우스 고시원)</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2(방배동 761-8)</td></tr>
<tr><td colspan="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현장활동중 소방시설 불량사항 발견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td></tr>
<tr><td colspan="2">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4">조치명령내용(붙임)</td></tr>
<tr><td colspan="2">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1항,2항)
2.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부 서 명</td><td>서초소방서 예방과</td><td>담당자</td><td>임근필,안성현</td></tr>
<tr><td>주 소</td><td>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td><td>전화번호</td><td>02)6981-5888</td></tr>
<tr><td>전자우편
주 소</td><td>2009092918@seoul.go.kr</td><td>팩스번호</td><td>02)2187-8232</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3">2024년 5월 13일까지</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화재안전조사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서초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명령내용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2">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r>
<tr><td>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td></tr>
<tr><td>기 타</td><td></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루나하우스 고시원] 조치명령내용

설비명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관련법규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4층 화재수신기 주 · 지구경종 정비요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4층 감시제어반 예비전원 정비 요함 – 5층 배관 누수로 인한 정비 요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 1항), 화재안전기준(NFPC 203), 화재안전기준(NFPC 103A)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10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565)	주식회사 케이씨엠씨 (211-87-23701)	곽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7-5, 4층(잠실동)	2024. 4.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2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 · 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05. 02. ~ 2024. 05. 17.(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61792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84-2	수도요금	2021. 02. 28. 외 10납기	11회	24,420원	2024. 3. 26. ~ 2024. 4. 12. 2024. 4. 1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1-7703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84-2	홍*표	52071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길97번길 107	24,420원	2024. 5. 20. ~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4. 05. 17.)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한동수 주무관(☎ 02-3146-210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6호('23.3.2.)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관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4.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학여울역 교차로 ~ 영동대교 남단)
3) 사업의 규모 : 폭 37.6~70.8m, 연장 2,887.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9.7.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8)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열람 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18:00)
10)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6438-2151)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m)	비고
					지상	지하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합계		16필지		447,584.4	53,643.0	84,037.4							
강남구 대치동 소계		7필지		179,798.8	47,728.0	18,158.1							
1	대치동	995	도	97,930.2	46,195.0	17,627.9	서울특별시	공					
2	대치동	1012-82	도	21,341.8	749.0		서울특별시	공					
3	대치동	1012-40	도	11,493.2	7.0		서울특별시	공					
4	대치동	1012-110	유	136.0	3.0		서울특별시	공					
5	대치동	1012-120	도	2,254.2	436.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					
6	대치동	1012-77	도	2,790.4	110.0		서울특별시	공					
7	대치동	1011	도	43,853.0	228.0	530.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					
강남구 삼성동 소계		3필지		142,410.3		43,469.3							
1	삼성동	172-66	도	43,711.9		1,031.3	서울특별시	공					
2	삼성동	111-8	도	94,806.0		42,054.8	서울특별시	공					
3	삼성동	111-185	도	3,892.4		383.2	서울특별시	공					
강남구 청담동 소계		6필지		125,375.3	5,915.0	22,410.0							
1	청담동	77-76	도	24,307.1		382.9	서울특별시	공					
2	청담동	77-4	도	52,810.4	667.0	17,755.9	서울특별시	공					
3	청담동	139-28	도	14,026.2	1,432.0	3,682.1	서울특별시	공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m)	비고
					지상	지하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4	청담동	138	제	25,263.0		589.1	서울특별시	공					
5	청담동	107-1	잡	8,005.0	3,364.0		서울특별시	공					
6	청담동	107	잡	963.6	452.0		서울특별시	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3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9844863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31 101동 203호 (신길동)	상·하수도요금	21.02~24.02	11	24,64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89-119 영모던빌 제101동 제2층 제203호	육정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11 B02호 (신림동)	24,640	'24. 4. 15.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승렬(☎02-3146-4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3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해외체류로 인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5381768	영등포구 영등포로62라길 2-6, 103호 (신길동)	상·하수도요금	21.03~24.03	19	48,330

   나. 압류 예고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예정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영등포구 신길동 39-1 제지1층 제비02호	김기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흑석동, 흑석동주민센터)	48,330	'24. 5. 1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승렬(☎02-3146-4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3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963	24. 4. 18.	주식회사 태양전기 홍석봉 110111-464627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45, 3층(화곡동)
2	203964	24. 4. 18.	주식회사 극동파워테크 배철한 110111-2273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29-1, 2층(합정동)
3	203965	24. 4. 18.	주식회사 알티넷솔루션 박명수 110111-875397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0, 지하1층(역삼동, 알티넷빌딩)
4	203966	24. 4. 18.	주식회사 비트릭스 (VITRIX Co.,Ltd.) 유세호 110111-81036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에이동 1605호(문정동, 문정에스케이브이원)
5	203967	24. 4. 18.	153오디오랩 주식회사 (153audiolab Co., Ltd.) 유경석 110111-8734637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1110호(마곡동, 퀸즈파크텐)
6	203968	24. 4. 24.	주식회사 케이티링스 김현섭 110111-86701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602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9차)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7	203969	24. 4. 24.	주식회사 다고테크 이희기 110111-371786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7 원효전자상가 6동 1층 24층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38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신고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5. 2 ~ 5. 16

2. 공고사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신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신고 업체

4. 행정처분 및 예정된 행정처분 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1차(경고) 사전통지
 - 대상 업체

상호(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기준 만료일	비고
㈜엘케이글로벌솔루션 (110111-7326584)	이인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94 (신정동, 명성빌딩) 6층 62호	2023.10.30	강남지역
㈜부영물류 (134911-0034825)	이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층) 315호	2023.10.11	
㈜비에스물류 (110111-6523991	이호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에스턴)1405호-427	2024.02.09	
㈜디엔아이코리아 (285011-0274386)	장남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46 (공항동, 대한항공화물청사) 17게이트	2024.01.02	
㈜엠튼 (110111-2127903)	육창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1629호(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	2023.11.24	강북지역
카고랜드(주) (110111-3865784)	문영학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16, 유티엘동교빌딩(동교동)	2023.11.16	
㈜세중지엘에스 (110111-6418233)	박지성 남충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8층 801-2, 3호	2023.11.16	

5.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3년)에 관한 사항 미신고

6. 처분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5. 23일(목) 18시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물류정책과
  - 담 당 자
    강북지역 : 이선아(02-2133-4094)
    강남지역 : 석은숙(02-2133-4096)

8. 유의사항
  가.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컴퓨터 통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서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41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축시공, 환경, 조경

3. 위촉기간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 심의내용
   o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o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o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모기간 및 제출처
   o 기 간 : 2024. 5. 2.(목) ~ 5. 16.(목) / 15일간
   o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o 제출방법 : 이메일(kth1003@seoul.go.kr)

※ 이메일 제출 시 송신 후 접수 확인 필수. 파일 용량 10메가바이트 이하 권장

7. 심사 및 통지
o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o 공개모집 지원서 및 위원회 활동 계획서 각 1부
※ 학력(학교, 전공학과, 졸업논문명 등), 주요 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서식: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서울소식- 공고-고시·공고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o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 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타 시·도(중앙 건축위원 포함) 및 타 시·군·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중복 위촉 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 중복위촉이 3개를 초과(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하는 경우 등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o 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위원 위촉에 금번 공개모집 지원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02-2133-7108, 7114)으로 연락바랍니다.

공 개 모 집 지 원 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응모분야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사 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직 장	(우)				
	자 택	(우)				
연락처	직 장					
	핸드폰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 제목			

자격증		자격증 번호	

주요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현재 타 지자체 건축위원회 위원, 서울시 소속 타 위원회 위원일 경우 반드시 기재요망

※ 학력, 자격증, 주요 경력 등 칸이 부족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나. 연구수행 실적 (2020년~현재)

과 제 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수행 기간	연구 년도	비고

다. 논문 발표실적 (2020년~현재)

발 표 논 문 명	발표 당시 소속기관	공동저자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수상 실적 (2020년~현재)

수상일자	수상내용	수여기관	비고

본인은 상기와 같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당해 응모가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모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위원회 활동 계획서

<table>
<tr><td>소 속</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응모분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타기관 위원회
위촉 현황
2020.1.1일 이후
(재)위촉 전체</td><td>위촉기간</td><td>기관명</td><td>위원회 명</td></tr>
<tr><td>00.00.00 ~ 00.00.00</td><td>00시·00부</td><td>000위원회</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정책제안 및
위원회 활동계획</td><td>건축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td><td colspan="2"></td></tr>
<tr><td>서울특별시
건축위원으로서
향후 활동계획</td><td colspan="2"></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 및 경력, 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2년(해촉시 까지)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2년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 정보의 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해촉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 ·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위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2. E-Mail 제출 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모지원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3. 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4. 공개모집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모분야"는 모집 분야 중 해당 모집분야명 기재

③ "직위(급)"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장, 이사, 사장, 회장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④ “사진” 은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 사진

⑤ "주소"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및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⑥ "연락처"는 직장, 핸드폰, 이메일 기재

⑦ "학력"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⑧ "자격증"은 당해 분야 취득자격을 정확히 기재(사본 첨부 제출)

⑨ "주요경력"은 당해분야 주요경력을 기재하며,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타지자체 포함) 당연직 · 위촉직 위원 경력 및 중앙부처 · 대학교 · 공공기관 등 경력 모두 인정

⑩ "연구수행 실적” 및 "논문 발표실적” 은 응모분야 관련 실적만 작성

⑪ “수상 실적” 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하며 국가 및 지자체 포상만 인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43호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반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납금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재지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같은 법 제19(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내용	반납 대상액	사유
오그린 (임*원)	불명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안내 (집행잔액 등 반납 및 환수)	19,977천원	소재지 불명으로 송달 불능

4.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5.(14일간)

5.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에서 반납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반납고지서 발급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시민협력과(☎02-2133-6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
   - 제출방법: 전자우편 gnuj0813@seoul.go.kr / 팩스 02-768-88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4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권*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9길 58, ***동 ****호(염창동)	일시: 2024-02-06 14:13 장소: 신수동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의무 소홀	처분일: 2024. 3. 28.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5. 31.
김*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95, *동 ***호(원종동)	일시: 2024-02-18 09:48 장소: 여의하류IC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3. 28.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5.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동 ***호(서교동)	일시: 2024-01-04 14:02 장소: 신수동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의무 소홀	처분일: 2024. 1. 29.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3. 31.
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8길 7, ***동 ****호(도원동)	일시: 2024-01-04 14:13 장소: 신수동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의무 소홀	처분일: 2024. 1. 29.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3. 31.

4. 공고기간: 2024. 5. 2.~2024. 5. 15.

5. 납부기한: 2024. 5.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51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신규등록 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박물관 신규등록 사항

등록번호	등록유형	명 칭	설립자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서울-사립12-2024-01호	제1종 전문박물관	오 디 움 (Audeum)	정 몽 진	정 재 림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8길 6	2024.5.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61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5.2. ~ 2024.5.16.(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도건종합건설(주) (임중빈)	건축 공사업 03-0648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 담보권 실행으로 보증가능금액 실효(2024.01.11)	영업정지	2024.5.17.(금) 14: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현제영	법 제83조 제3호
성안산업개발(주) (이근동)	건축 공사업 02-1391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 담보권 실행으로 보증가능금액 실효(2024.01.22)	영업정지	2024.5.17.(금) 15: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현제영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68호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8-79호(1998.3.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0호(2002.7.2.)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2014.7.24.)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5호(2023.7.27.)로 결정(변경) 고시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견청취를 하고자 열람 ·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공공주택과(☎2133-7074),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3410-7948),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79-6364)

다. 열람사유 :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라. 열람내용 :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 결정(변경)(안)

마.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잠장소에 비치)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고 시

◈ 서대문구고시 제2024-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6호(2021.5.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7호(2020.6.29.)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궁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596호(2024.4.11.)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103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궁동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7㎡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7㎡ (1필지)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5.6.28.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도첨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계	1필지	7	7							
연희동 산118-10 3	임야	7	7	1	김*호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 388-**	서울특별시 은*구	서울 은평구 은평로 ***	압류	
							국민** **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	압류	

◈ 구로구고시 제2024-69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 제2020-601호(2020.12.31.), 구로구고시 제2023-181호(2023.10.26.), 제2023-217호(2023.12.14.)로 결정(변경)된 고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정정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 로 구 청 장

Ⅰ. 결정(경미한 변경) 정정 취지

구로구고시 제2023-181호(2023.10.26.) 및 제2023-217호(2023.12.14.)로 고시된「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기재사항의 정정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변경) 조서

8.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정정)

□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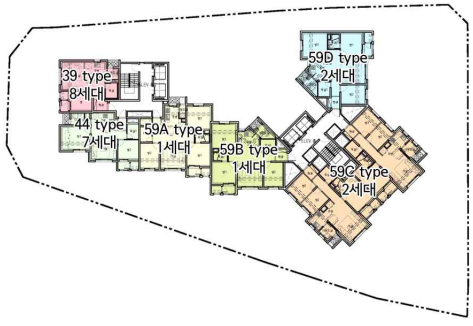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임대주택계획	• 市 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설치(서고시 제2019-313호 적용) • 평면 및 건물 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임대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 •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비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산정함 •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0.28.) 심의결과에 따라 노후도 완화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결정한 용적률(61.72%)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좌동 • 좌동 •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0.28.) 심의결과에 따라 노후도 완화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결정한 용적률(61.07%) 이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기재사항 정정 용적률: 61.72 % → 61.07 %

- 정정 사유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내용(정정)

구분	면 적(㎡) / 비 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역면적	2,637.00	-	2,637.00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기재사항 정정 연면적: 1,392.60㎡ → 1,367.96㎡ 용적률: 62.17 % → 61.07 %
대지면적	2,240.00	-	2,240.00	
지상층연면적	11,131.35	-	11,131.35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1,392.60	감)24.64	1,367.96	
용적률	496.94 %	-	496.94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2.17 %	감) 1.10	61.07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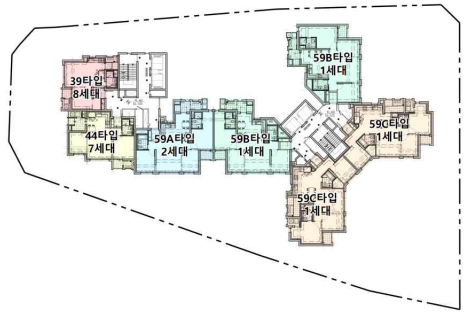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 6개 타입 21세대

구분	유형	세대수
임대주택	39	8
	44	7
	59A	1
	59B	1
	59C	2
	59D	2
합계		21

변경



[기준층 평면도]

• 5개 타입 21세대

구분	유형	세대수
임대주택	39	8
	44	7
	59A	2
	59B	2
	59C	2
합계		21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는 향후 건축계획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市 관련부서(공공주택과)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정 사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등 산정착오로 인한 기재사항 오기 정정

Ⅲ. 관계도면 : 생략 (이 외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3249)에 관련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4-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구로구 고시 제2023-216호(2023.1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구로구 공고 제2024-359호(2024. 2.22.)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완료한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22 ~ 12-18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다. 사업 규모 : 도로개설 폭 12m, 연장 7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2-29	도로	172	172	이○○	서울특별시 ○동 ○-○				
2	항동 13	대지	245	242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아파트 ○○○-○○○				
3	항동 222	구거	515	30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항동 231	도로	365	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상기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정정 예정임.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14	건물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아파트 ○○○-○○○				
		가건물	판넬	36	철물점						
		창고	철제	22	창고						
		펜스	철제	1식	펜스						
2	항동 222	펜스	철제	1식	펜스						
3	항동 235-32	펜스	철제	1식	펜스						
4	항동 235-37	펜스	철제	1식	펜스						

◈ 관악구고시 제2024-4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11)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210호(2019.07.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21-195호(2021.12.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4-578호(2024.03.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5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4) 면　적 : 8,950㎡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20. 02. 13.~2025. 02. 12.
  - 변경 : 2020. 02. 13.~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열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9필지		8,950	8,950							
	봉천동 293-1	전	102	102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봉천동 292-3	전	122	122							
	봉천동 282-1	전	66	66							
	봉천동 283-2	잡	175	175							
	봉천동 283-3	잡	248	248							
	봉천동 226-1	천	99	99							
	봉천동 261-0	전	354	354							
	봉천동 262-1	답	443	443							
	봉천동 254-0	전	1,091	1,091							
	봉천동 산43-3	임	145	145							
	봉천동 산43-4	임	307	307							
	봉천동산43-5	임	202	202							
	봉천동 산43-2	임	509	509							
	봉천동 산43-6	임	126	126							
	봉천동 248-2	대	1,041	1,041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봉천동 산58-0	임	581	581	**이씨***파***** **문중	단독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 ********				부지사용계약
	봉천동 산58-3	임	2,791	2,791							
	봉천동 산58-1	임	396	396							
	봉천동 283-4	대	152	152	대한불교 조계종 참나선원	단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부지사용계약
		건축물	(108.24)	(108.24)							

◈ 관악구공고 제2024-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봉천동 245번지 일대)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66호(2019.06.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21-189호(2021.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4-577호(2024.03.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24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4) 면　적 : 12,556㎡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06. 20.~2024. 06. 19.
  - 변경 : 2019. 06. 20.~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열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6필지		13,316	12,556							
1	봉천동 산40-2	임	9,476	9,476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천동 246-1	전	579	579							
3	봉천동 246-0	전	860	860							
4	봉천동 245-0	전	1,183	1,183							
5	봉천동 256-0	전	914	914							
6	봉천동 257-0	전	304	304							

◈ 관악구고시 제2024-4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봉천동 247-2번지 일대)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99호(2019.09.0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21-191호(2021.12.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4-579호(2024.03.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247-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4) 면　적 : 1,693㎡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09. 05.~2024. 09. 04.
  - 변경 : 2019. 09. 05.~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열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693	1,693							
1	봉천동 247-2	대	331	331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천동 247-4	전	1,137	1,137							
3	봉천동 247-3	전	225	225							

◈ 관악구고시 제2024-5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51호(2019. 5.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악구고시 제2021-174호(2021. 12. 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124-1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3)]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4) 면　적 : 5,539㎡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05. 09.~2024. 05. 08.
  - 변경 : 2019. 05. 09.~2025. 12. 31.

바. 사업편입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3)]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3필지		5,539	5,539							
1	신림동 산124-14	임야	145	145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신림동 산124-16	임야	245	245							
3	신림동 산124-27	임야	241	241							
4	신림동 산124-28	임야	347	347							
5	신림동 산124-30	임야	324	324							
6	신림동 산124-31	임야	238	238							
7	신림동 산124-32	임야	238	238							
8	신림동 산124-45	임야	238	238							
9	신림동 산124-46	임야	238	238							
10	신림동 산124-47	임야	417	417							
11	신림동 산124-49	임야	893	893							
12	신림동 산124-50	임야	238	238							
13	신림동 산124-60	임야	255	255							
14	신림동 산124-61	임야	221	221							
15	신림동 산124-62	임야	228	228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신림동 산124-63	임야	278	278							
17	신림동 산124-64	임야	96	96							
18	신림동 598-233	대지	129	129							
19	신림동 598-234	대지	99	99							
20	신림동 598-235	대지	93	93							
21	신림동 598-236	대지	119	119							
22	신림동 598-237	대지	126	126							
23	신림동 598-238	대지	93	93							

◈ 서초구고시 제2024-88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56호(2014.04.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1-405호(2021.0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일대의 청계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90호(2019.05.16.)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218호(2022.12.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81호(2023.12.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고 제2024-853호(2024.04.12.)로 열람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칭: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
  3)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1) 변 경 전: 25,000㎡
  2) 변 경 후: 7,976㎡
  3)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확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 경 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2) 변 경 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현황, 경계) 측량 시일 소요로 당초 사업기간 내 보상 절차 이행 불가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와 주소: 별첨 조서 참조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문의: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당초	변경	증감						
	계		211,522	25,000	7,976	감)17,024						
1	원지동 산4-13	임	211,522	25,000	7,976	감)17,0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순*	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조은*	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중*	1/10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 강남구고시 제2024-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3.24.)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33호(1999.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0호(2023.4.27.)로 결정(변경)된 도시철도 7호선 청담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 취지
   도시철도 7호선 청담정거장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강남구 청담동 74일대	345	17,091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1993.3.24.)	
변경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강남구 청담동 74일대	345	17,131		증)40.0㎡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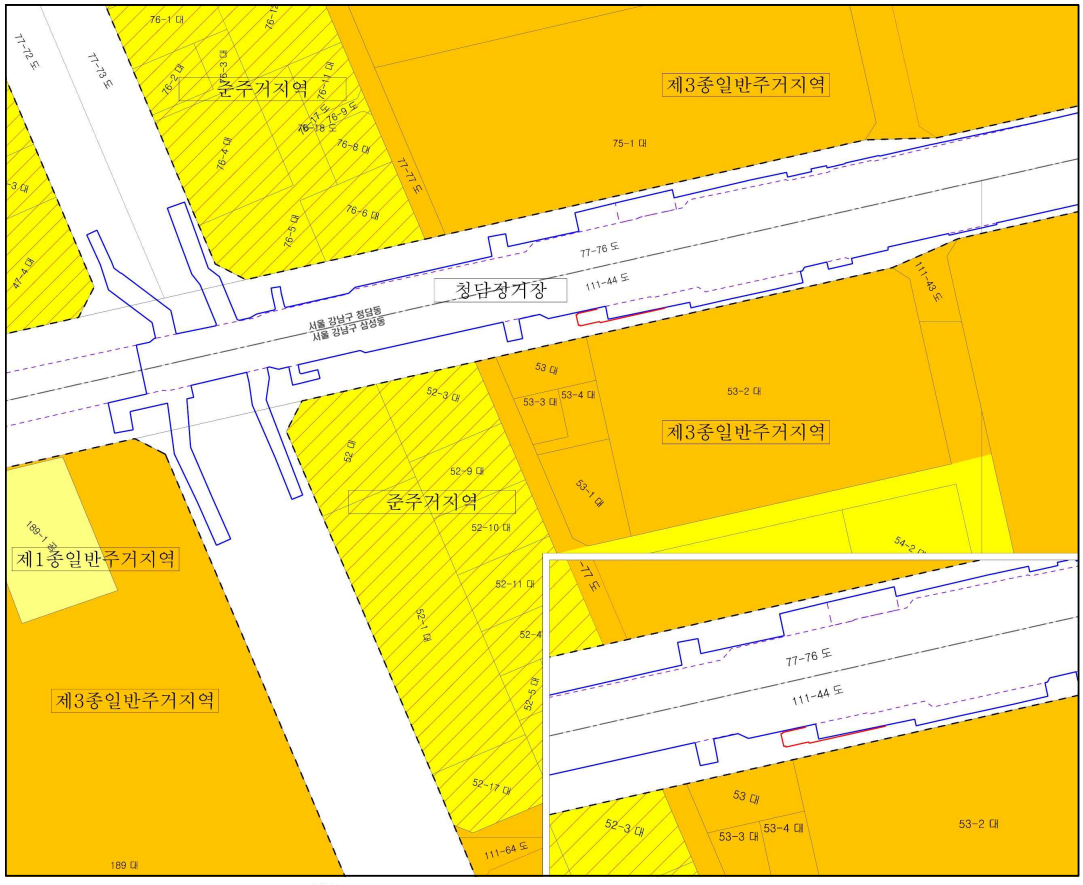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연장: 345m(변경없음) 면적: 17,091㎡→17,131㎡ (증 40.0㎡)	7호선 청담역 5번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4)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철도: 청담정거장) 결정도】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4-48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최초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4호(2023. 9.21.)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2호(2024.4.18.)로 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다동근린공원과 주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2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2) 명칭 :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5,576.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위임: 중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5년12월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조서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 2024. 5. 2.(목) ~ 5. 16.(목)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02-3396-585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위임: 중구청장)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3	공	529.5	529.5	529.5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2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3	공	98.3	98.3	98.3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5-1	도	94.6	94.6	94.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4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3	공	92.3	92.3	92.3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0	대	97.9	97.9	97.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6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6	공	488.9	488.9	488.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7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9	공	32.2	32.2	32.2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3-6	공	35.1	35.1	35.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9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93	공	388.9	388.9	388.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0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94	공	41	41	4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1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5	공	658.6	658.6	658.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2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4	공	297.1	297.1	253.1	44.0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3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4	공	145.6	145.6	145.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4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97-9	도	39.1	39.1	39.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4	공	59.2	59.2	59.2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6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6-2	공	70.4	70.4	70.4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7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72-3	도	1,268	55.4	20.4	35.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8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0	대	162.6	162.6	30.9	131.7	길*전	서울시 **구 *****					
19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5-6	대	317.5	317.5	317.5	-	대***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39					
20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7	대	92.6	92.6	20.7	71.9	김*호	경북 **군 **면 **길 **-**	1/6				
								김*현	서울시 **구 ****길, ****	1/6				
								김*	경북 **시 **길 **	1/6				
								김*정	서울시 **구 **로 ***, ***	1/6				
								손*자	충북 **군 **면 ****길 **	1/6				
								손*현	충북 **군 **면 **길 **-*	1/6				
21	사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9	대	62.8	62.8	62.8	-	주식회사*****(수탁자) ※ 신탁자: *****주식회사 (기부채납 예정)	서울시 **구 ****로 *** ※신탁자 주소 경기도 **시 **구 *******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8-1	대	465.4	465.4	147	318.4	****합명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영등포세무서장		근저당	
											종로세무서장		근저당	
											주식회사 키움예스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22	근저당	
23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2	대	4.3	4.3	4.3	-	국(기획재정부)						
24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5	대	20.8	20.8	7.2	13.6	국(기획재정부)						
25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8	대	40.7	40.7	40.7	-	국(기획재정부)						
26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7	대	3.3	3.3	3.3	-	국(기획재정부)						
27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9	대	4.3	4.3	4.3	-	국(기획재정부)						
28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6	대	2.6	2.6	2.6	-	국(기획재정부)						
29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2	도	340.7	93.3	-	93.3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0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6-1	도	321.4	321.4	-	321.4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1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6	도	334.5	328.5	-	328.5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	사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3-8	대	222	171	-	171	주식회사*****(수탁자) ※ 신탁자: *****주식회사 (기부채납 예정)	서울시 **구 ****로 *** ※신탁자 주소 경기도 **시 **구 *******					
33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5	도	131.9	131.9	-	131.9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4	-	서울특별 중구 다동 56	도	152.5	129.1	-	129.1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합계					5,576.2	3,786.4	1,789.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위임: 중구청장)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0	건물	철근콘크리트	1,089.81		길*전	서울시 **구 *****				
2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5-6	건물	목조	181.82		대***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39				
		건물	목조	33.06							
		건물	세멘벽돌	63.8							
3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7	건물	목조	85.18		김*호	경북 **군 **면 **길 **-*				
						김*현	서울시 **구 ****길, ****				
						김*	경북 **시 **길 **				
						김*정	서울시 **구 **로 ***, ***				
						손*자	충북 **군 **면 ****길 **				
						손*현	충북 **군 **면 **길 **-*				
4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8-1	건물	철근콘크리트	2,326.73		****합명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영등포세무서장		근저당	
								종로세무서장		근저당	
5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5	건물	판넬	34.6		소유자 미상					유일수퍼 (무허가)

영업권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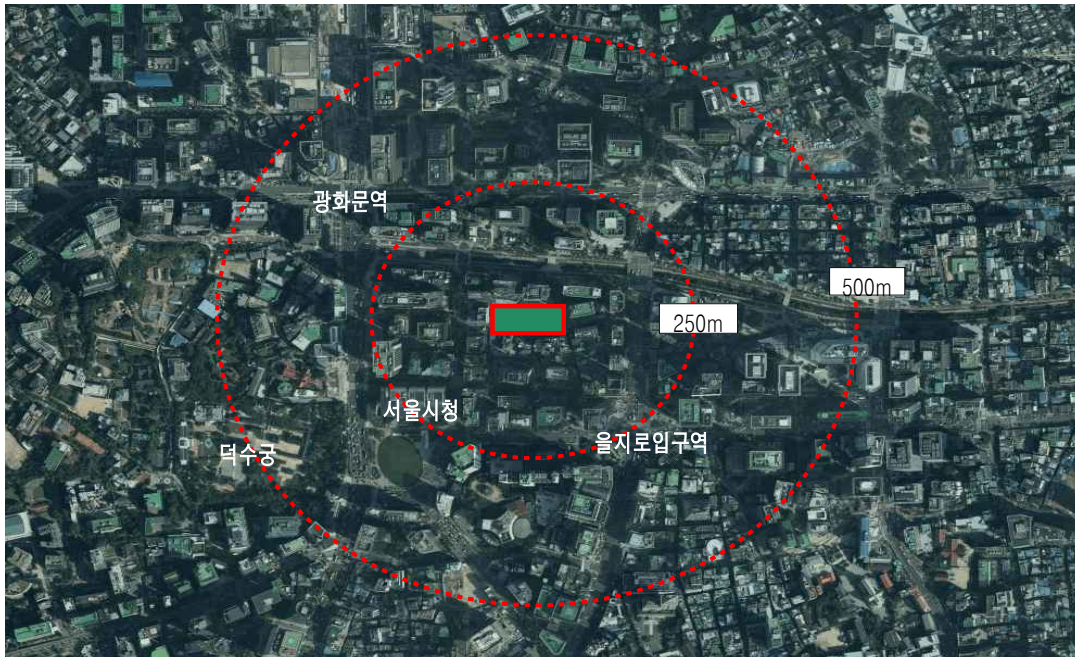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위임: 중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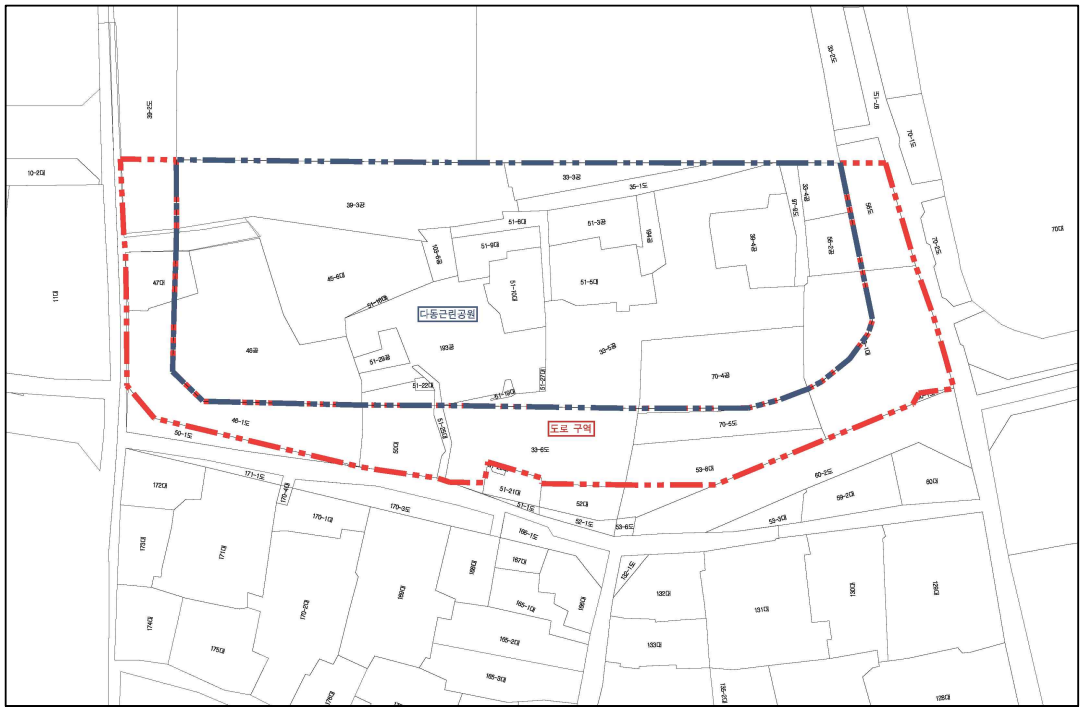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호	수량	영업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5-6	건물	손가명가 (1층)	1	음식업	손*길	좌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7	건물	동원감자탕 (1~2층)	1	음식업	신*숙	좌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0	건물 (한수빌딩)	킹카노래방 (지하)	1		김*숙	좌동				
			황부자 (1층)	1	음식업	정*호	좌동				
			나주곰탕 (2층)	1	음식업	권*옥	좌동				
			한진오피스 (3층)	1		박*현	좌동				
			㈜대한양곡 (3층)	1		소*영	좌동				
			법무사 박병문 사무소(3층)	1		박*문	좌동				
			㈜수남기업 (5층)	1	무역회사	김*주	좌동				
			나눔대부 (6층)	1		임*호	좌동				
			대림산업사 (7층)	1	건설업	강*태	좌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8-1	건물 (효광빌딩)	B★W 노래밤 (지하)	1		홍*범	좌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호	수량	영업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엘리스파이 (1층)	1		김*운	좌동				
			이자카야하루 (1층)	1	음식업	곽*운	좌동				
			막케집 서울시청점(1층)	1	음식업	신*희	좌동				
			BAR the moon (2층)	1		㈜**시그니처	좌동				
			향설주량 (3층)	1	음식업	이*원	좌동				
			벤츠노래주점 (4층)	1		이*훈	좌동				
			zen 요가 (5층)	1		이*혁	좌동				
			명동탑하우스 고시원(6~7층)	1	숙박업	정*덕	좌동				

□ 위치도



□ 사업구역도



◈ 도봉구공고 제2024-7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호(2022.9.29.)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23-32호(2023.3.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된『방학1동 707~715-12 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기간
방학1동 707~715-12 간 도로개설공사	방학동 726-65 ~ 방학동 707-20	B = 20m L = 85m	도봉구고시 제2023-32호 (2023.03.02.)	2023.03.02. ~ 2023.12.14.

라. 사업문의 :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5)

◈ 은평구공고 제2024-8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5-69호(1975.5.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호(2009.01.29.)로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 된 구산동 15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학교시설면적 및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서면작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열 람 기 간 : 2024. 5. 2.~ 2024. 5. 16.

나. 열 람 장 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5)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안)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구산동 152-3 일원	12,059	감)447.7	11,61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75-69호 (1975.5.14.)	

2)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이하	4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시설결정면적 변경 - 12,059㎡→11,611.3㎡ 감)447.7㎡	지적현황측량결과를 반영한 학교시설면적 변경
		건폐율 변경 - 30% → 40%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서울구산초등학교 신축사업을 위한 건폐율 상향

라.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마. 기타사항

- 열람 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결정(변경)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공고 제2024-8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역촌1주택 소공원1(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2007. 07. 2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2-69호(2022.04.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종 결정된 역촌1주택 소공원1(가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8-6 일대
나. 공원명칭: 역촌1주택 소공원1
다. 면　　적: 2,565.0㎡
라. 조성계획결정도 및 결정조서 : 붙임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촌1주택소공원1(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은평구 역촌동 228-6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565.0	372.3				9	
소계	372.3	372.3				9	
기반시설	236.5	236.5					
조경시설	26.6	26.6					
휴양시설	63.5	63.5				5	
운동시설	36.4	36.4				3	
편익시설	9.4	9.4				1	
녹지 및 기타	2,192.7	-					녹지율 85.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2,565.0	372.3					9	
기반시설	소계			236.5	236.5						
	산책로	가-1	부지내	143.8	143.8						
		가-2	부지내	63.1	63.1						
		가-3	부지내	29.6	29.6						
조경시설	소계			26.6	26.6						
	돌담	나	부지내	9.4	9.4						
	화계	다	부지내	17.2	17.2						
휴양시설	소계			63.5	63.5					5	
	진입쉼터	라	부지내	33.3	33.3					1	
	등의자	①	부지내	6.2	6.2					1	
	파고라	②	부지내	24.0	24.0					3	
운동시설	소계			36.4	36.4					3	
	허리돌리기 외	마	부지내	36.4	36.4					3	
편익시설	소계			9.4	9.4					1	
	엘리베이터	③	부지내	9.4	9.4					1	
녹지 및 기타	소계			2,192.7							
	녹지		부지내	2,192.7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8	110.4	236.5				
신설	소로	소계		110.4	236.5				
		1	1.8	66.4	143.8	산책로	진입광장	엘리베이터	
		2	1.8	27.7	63.1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3	1.8	16.3	29.6	진입로	엘리베이터	부지경계	

◈ 은평구공고 제2024-8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2007. 07. 2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2-69호(2022.04.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종 결정된 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94
나. 공원명칭: 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
다. 면　　적: 274.0㎡
라. 조성계획결정도 및 결정조서 : 붙임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은평구 역촌동 189-94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74.0	22.9				3	
소계	22.9	22.9				3	
기반시설	0.0	0.0					
조경시설	0.0	0.0					
휴양시설	22.9	22.9				3	
운동시설	0.0	0.0					
편익시설	0.0	0.0					
녹지 및 기타	251.1	-					녹지율 91.6%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274.0	22.9					3	
휴양 시설	소계			22.9	22.9					3	
	등의자	①	부지내	-	-					2	
	파고라	②	부지내	22.9	22.9					1	
녹지 및 기타	소계			251.1							
	녹지		부지내	251.1							

다. 도로조서

해당없음

◈ 양천구공고 제2024-811호

도시관리계획(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1475호(2003.01.07.)로 택지개발사업공사완료된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양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620-3517)
다.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761-1번지 일원	117,020.7	-	117,020.7	건설부고시 제1996-123호 (1996.04.24.)	-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갈음)
마.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별도서식 없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24-830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연번	공원명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1	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양천구 신월동 산85-11	임야	7,782㎡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4. 4. 29.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4. 4. 29. ~ 2027. 4. 28.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4-886호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2-2330호(2022.12.29.)로 열람공고 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4. 5. 3. ~ 5. 16.(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846)
다. 열람내용 :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	증) 2,718.2	2,718.2		-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4-92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동양미래대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6호(1976.08.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3호(1977.01.29.)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호(1977.02.22.)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7호(1991.07.0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0호(2002.07.0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0호(2011.12.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12-80호(2012.07.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3-157호(2013.12.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4-28호(2014.02.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2호(2014.09.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4-157호(2014.10.16.)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6-106호(2016.07.07.)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24-29호(2024.02.08.)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160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동양미래대학교)사업
   나. 명칭 : 동양미래대학교 1·3호관 용도변경

3. 사업의 규모 및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학교	대학교	대지면적(㎡)	36,338.9	36,338.9	-	변경 없음
		건축면적(㎡)	9,566.31	9,566.31	-	변경 없음
		건축연면적(㎡)	77,714.48	77,714.48	-	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건폐율(%)	26.33%	26.33%	-	변경 없음
		용적률(%)	135.71%	135.71%	-	변경 없음

나. 용도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1호관 (지상1층)	교육연구시설 (강의실)	17.90	제1종근생시설 (휴게음식점)	17.90	용도변경 (면적증감 없음)
3호관 (지상1층)	제1종근생시설 (휴게음식점)	21.23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21.23	용도변경 (면적증감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45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일 : 2024. 2. 8.
   나. 준공일 : 2024. 4. 23.

◈ 구로구공고 제2024-934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구로구 오류동 11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로구 공고 제2023-945호(2023. 5.1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신관3층) [문의 : ☎02-860-2955]

다. 관계도서 및 계획설명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라.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49,928.0	-	550,363.0	100.0	
주거지역	소 계	370,119.0	감) 28,713.8	341,405.2	6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89,381.0	감) 56,983.0	232,398.0	42.2	
	제2종일반주거지역	80,738.0	-	80,738.0	14.7	
	준주거지역	-	증) 28,269.2	28,269.2	5.1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29,148.8	29,148.8	5.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79,809.0	-	179,809.0	32.7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마.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바. 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4-91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6호(2023.6.22.)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독산동 953-9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3-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금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 : 지하3층/지상6층, 연면적 9,411.71㎡
  ○ 면 적 : 1,98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세무서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4차 업무시설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건축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독산동 953-9	대	1,983.6	1,983.6	국(국세청)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4차 업무시설동				

◈ 관악구공고 제2024-9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62호(2019.6.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4)]」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34-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4)]
다. 사업면적 및 내용
◯ 면적 : 9,837m²
◯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라. 사업시행자(시설관리청)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 : 2019. 6. 7. ~ 2024. 6. 6.(사업완료일: 2024. 5. 2.)
바.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합계	4필지		9,837						
1	신림동 산134-13	임	6,63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신림동 산134-1	임	1,302						
3	신림동 산134-2	임	598						
4	신림동 산134-3	임	1,299						

사.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02-879-6521

◈ 강남구공고 제2024-1187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개포동 산212-2)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2일
강 남 구 청 장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산212-2
나. 계약면적: 20,849㎡
다.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강남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산212-2	임야	20,849㎡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일 부터 2027년 5월 ○○일까지로 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 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 공간의 설치와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

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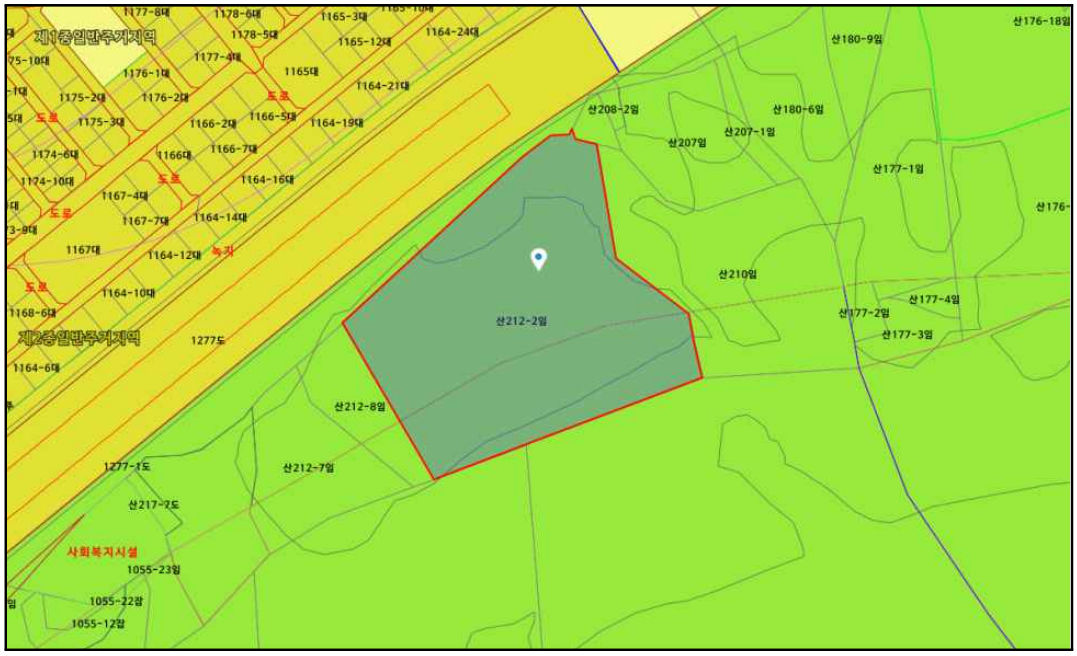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 강남구청장 (인)

위 치 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산212-2임
산212-8임
산212-7임
산208-2임
산207임
산207-1임
산180-6임
산180-9임
산176-18임
산177-1임
산210임
산177-2임
산177-4임
산177-3임
사회복지시설
도로
녹지

◈ 강남구공고 제2024-1188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일원동 산63-1)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2일
강 남 구 청 장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산63-1
나. 계약면적: 68,433㎡
다.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강남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산63-1	임야	68,433㎡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일 부터 2027년 5월 ○○일까지로 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 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 공간의 설치와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

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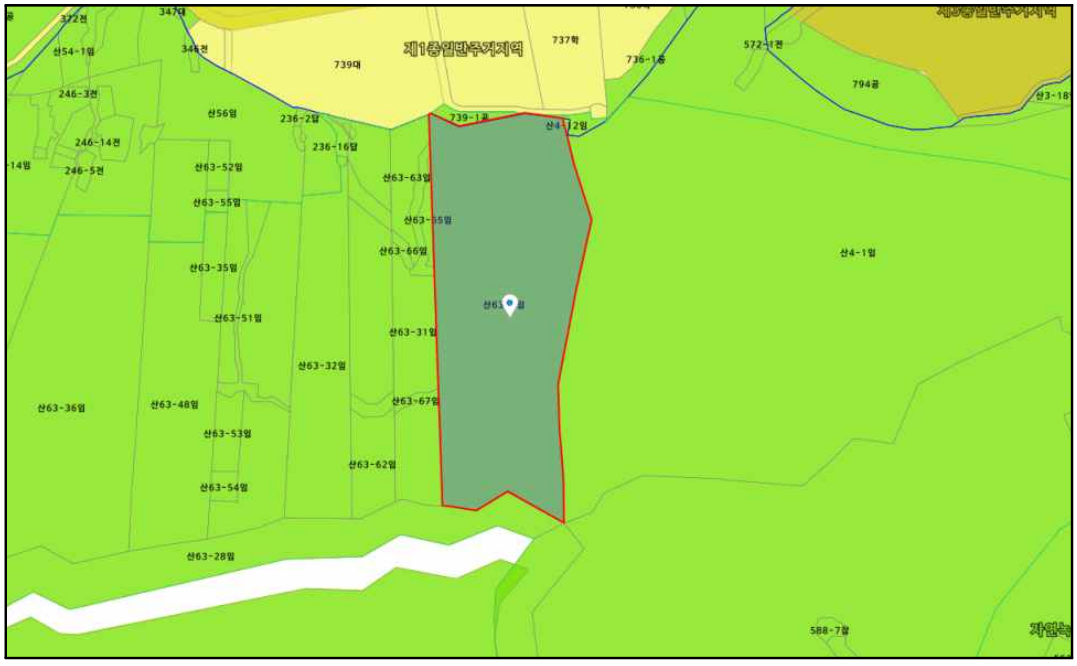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 강남구청장 (인)

위 치 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739대
737학
736-1종
572-1전
794공
739-1공
산4-1임
산63-63임
산63-55임
산63-66임
산63-35임
산63-51임
산63-31임
산63-32임
산63-67임
산63-36임
산63-48임
산63-53임
산63-62임
산63-54임
산63-28임
588-7잡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리버시티수상스키장 (대표:김백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53 (잠원한강공원)	동력선 8척 - 미도호, 리텐호, 리버시티1호, 2호, 3호, 6호, 8호, 9호 *무동력선 8대 - 벤드웨곤,바바바코트,수상스키,웨이크보드,팡팡,카약,페들,포일보드	수상레저사업	2024.4.25.~ 2024.10.15.	2024. 4.2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39척) 9,827㎡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5. 1. ~ '24. 5. 31.	'24. 4.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 윈드서핑 연맹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326 (자양동)	잠실대교~ 영동대교	구조선 3 윈드서핑 20 윙포일 8 카이트보딩 1 전동포일 6 펌핑포일 1 카약 20 패들보드 25	수상레저사업	2024.5.1.~ 2024.10.31.	2024. 4.2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여가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487-479 일대	부유식 공작물:1,144.6 수상계류장:935.4 육상계류장:4,957 연락교:17.7 부유식 방파제:371.7 경사로:476 간접점용(수면):7,696.4	서울수상 레포츠센터 및 관련시설 (유선사업, 수상레저사업, 마리나선박보관 계류업)	'24.3.16. ~ '29.3.15. (5년)	'24. 4.16.

기 타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24-2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금성방재기술(주) (801-88-00279)	제 서울(동대문)- 2024-0003호 (2024-04-24)	황선우 (1956. 01. 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30길65, 202호 (신설동, 세원빌딩)	02-2231-0119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42-1292로 연락 바랍니다.

◈ 은평소방서공고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주식회사 현명이앤에프	제 서울(은평)-2024-0001 호 (2024.4.24.)	김재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B동 911호	02) 6958-7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6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5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왕건설(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41, 102동 1712호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1-2번지(한강시민고원 이촌지구)
 - 면 적 : 6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하자보수 공수

5. 점용기간 : 2024.04.23. ~ 2024.05.0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2길 62
 - 면 적 : 232.2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변 휴식공간 조성
 - 내 역 : 앉음벽 벤치, 원형벤치, 캐노피, 테이블, 입구가벽 등

5. 점용기간 : 2024.04.25. ~ 2029.04.24.

6. 공사기간 : 2024.04.25~ 2024.06.1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원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54-4일원
 - 면 적 : 영구 1,153㎡ 일시 84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조성
 - 내 역 : 하늘카페, 경사로 및 계단, 하늘쉼터, 하늘초화원, 물멍쉼터, 휴게광장

5. 점용기간 : 영구 2024.04.26. ~ 2029.04.25.
 일시 2024.04.26. ~ 2024.12.31.

6. 공사기간 : 2024.04.26. ~ 2024.12.31. ※우기철(5.15 ~ 10.15) 공사금지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